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0000-000384-10

정부 3.0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제1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11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4
1-1-③.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8
1-1-④. 신성장기반자금	20
1-1-⑤. 재도약지원자금	24
1-1-⑥. 긴급경영안정자금	29
1-2. 중소기업 기업진단 사업	33
1-3.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35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37
1-5.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40
1-6.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42
1-7. 우수신제품발굴지원(중기제품거래활성화 - HIT500)	44
1-8. 글로벌협력지원	47
1-9. 남북협력지원	49
1-10.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51
1-11.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55
1-1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60
1-13. 연수사업	63
1-1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66

제2장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69
2-2. 사업조정제도	71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75
2-4.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78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80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82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84
2-8.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86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88
2-10. 해외동포(H-2) 고용지원	91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93
2-12.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96
2-13.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 운영	101
2-14.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지원	104
2-15. 중소기업 손해공제제도(파란우산공제)	106

제3장 신용보증기금

3-1 신용보증	112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115
3-3 보증연계투자	117
3-4 유동화회사보증	119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23
3-6 매출채권보험	125
3-7 Job Cloud	129
3-8 창업지원제도	130

제4장 기술보증기금

4-1 2016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33
4-2 기술보증	134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37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40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143
4-6 전자상거래보증	146
4-7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대보증	148
4-8 R&D 보증	151

4-9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54
4-10 지식재산(IP) 보증	157
4-11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160
4-12 문화산업완성보증	163
4-13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67
4-14 기술평가	171
4-15 벤처확인평가	174
4-16 이노비즈 인증평가	178
4-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83
4-18 녹색인증평가	186
4-19 보증연계투자	189
4-20 투자옵션부 보증	191
4-21 경영개선지원제도	194
4-22 재기지원보증제도	196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199
5-2.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202
5-3.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205
5-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208
5-5. 협동조합 특례보증	211
5-6. 나들가게 특례보증	213
5-7.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215
5-8. 햇살론 신용보증	218

제6장 기업은행

6-1. 201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228
6-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230
6-3. IP사업화자금대출	231



6-4. IBK창조기업대출	233
6-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235
6-6. 기술형창업기업대출	237
6-7. IBK수출준비자금대출	239
6-8.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240
6-9.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242
6-10. IBK문화콘텐츠대출	243
6-11.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245
6-12. IBK시설투자대출	246
6-13. 토지분양협약대출	248

제7장 한국산업은행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250
--------------------------	-----

제8장 한국수출입은행

8-1. 2016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275
8-2.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276
8-3. 수출 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277
8-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79
8-5. 기술금융 프로그램	282
8-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284
8-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86
8-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288
8-9.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290
8-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92
8-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94
8-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96
8-13. 해외투자금융	298
8-14. 수입금융(수입자금)	301

8-15. 이행성보증	303
8-16. 무역금융	305
8-17. 해외온렌딩	307

제9장 한국무역보험공사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312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14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16
9-4 단기수출보험	317
9-5 중소기업Plus+보험	321
9-6 환변동보험	322
9-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325
9-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326
9-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328

제1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 수출 애로 상담	330
10-2. 이동 KOTRA	331
10-3. 해외시장조사	332
10-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334
10-5. 수출상담회	335
10-6. 무역사절단	336
10-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337
10-8. 한국우수상품전	338
1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339
10-10. 온라인 마케팅(buyKOREA)	340
10-1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341
10-12. 지사화사업	342
10-13. 월드챔프	345



10-14.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347
10-15.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349
10-16. IT수출상담지원센터	350
10-17.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352
10-18. 해외IT지원센터	353
10-19.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Service Mundus]	354
10-20. 경제 한류 해외진출 지원	355
10-21.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육성(Medi-Star Initiative)	356
10-22.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357
10-23. 방산물자 교역지원	368
10-24. 글로벌 조달 선도기업 육성(P300)	360
10-25.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Global Partnering)	361
10-26. 무역·투자정보포털(globalwindow)	362
10-2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364
10-28.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366
10-29.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367
10-30.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369
10-31. 열린무역관	371
10-32. 수출인큐베이터	372
10-33.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KAPP)	374
10-34.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376
10-35. 해외투자진출 상담	378
10-3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380
10-37.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털(OIS)	382
10-38.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383
10-39. 국내복귀기업 지원	385
10-40. 글로벌 M&A 지원	386
10-41. KOTRA 글로벌 CSR 사업	387
10-42. 교육·연수	389

제11장 한국무역협회

11-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391
11-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392
11-3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393
11-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94
11-5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396
11-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398
11-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400
11-8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402
11-9 K+(K plus) 인증 제도	404
11-10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406
11-11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408
11-12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412
11-13 무역기금 융자	414
11-14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416

제12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2-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419
12-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421
12-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423
12-4. 거래 공정화	428

제13장 대한상공회의소

13-1. 산업혁신운동	431
13-2. 코참경영상담센터	434
13-3. 제조물책임보험(PL) 중소기업 지원	436

제1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11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4
1-1-③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8
1-1-④ 신성장기반자금	20
1-1-⑤ 재도약지원자금	24
1-1-⑥ 긴급경영안정자금	29
1-2 중소기업 기업진단 사업	33
1-3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35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37
1-5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40
1-6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42
1-7 우수신제품발굴지원(중기제품거래활성화 - HIT500)	44
1-8 글로벌협력지원	47
1-9 남북협력지원	49
1-10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51
1-11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55
1-1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60
1-13 연수사업	63
1-1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66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용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지원 규모

기업별 45억원까지(비수도권은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 공지

- *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기업도 새로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 자금 지원 후 1년 이내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금리우대 적용

용자 방식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로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 ①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www.sbc.or.kr) 자금신청
 -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점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용자상환금 조정형,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수출금융)

<사업별 용자신청서 제출>

-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재창업지원 중 신복위 재창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온라인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를 신청·접수
 -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반영비중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③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 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결정

④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개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 실적 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포함), 재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접수 시기

- 2016. 1. 4 ~ 자금 소진시까지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목동)	02) 6678-4127	경북(구미시)	054) 476-9340
서울동남부(서초구)	02) 2156-2200	경북동부(포항시)	054) 223-2046
서울북부(여의도)	02) 769-6436	경북남부(경산시)	053) 212-3300
인천(연수구)	032) 450-0500	강원(춘천시)	033) 259-7600
인천서부(서구)	032) 450-0560	강원영동(강릉시)	033) 655-8870
경기(수원시)	031) 259-7900	광주(광주시)	062) 600-3000
경기동부(성남시)	031) 788-7300	전남(무안군)	061) 280-8000
경기서부(시흥시)	031) 496-1000	전남동부(순천시)	061) 724-1045
경기북부(고양시)	031) 920-6700	부산(사상구)	051) 630-7400
대전(대전시)	042) 866-0114	부산동부(해운대구)	051) 712-9670
충남(천안시)	041) 621-3687	울산(울산시)	052) 703-1100
충북(청주시)	043) 230-6800	경남(창원시)	055) 212-1350
충북북부(충주시)	043) 841-3600	경남동부(김해시)	055) 310-6600
전북(전주시)	063) 210-9900	경남서부(진주시)	055) 756-3060
전북서부(군산시)	063) 460-9800	제주(제주시)	064) 751-2070
대구(대구시)	053) 601-5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세종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정책자금 공통 용어설명

→ 용어설명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용자 규모

1조 4,500억원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11,913개사 중 8,16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8억원

지원 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일반창업기업지원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소요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임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3년 이내 1회에 한정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금리)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용자 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 접수시기 : 2016.1.4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 의 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1,500억원

○ 이익공유형 대출

▷ 2015년 신청기업 467개사 중 38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8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2015년 신청기업 54개사 중 3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4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2015년 신청 프로젝트 15개 중 6개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3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 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 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 (이익공유형 대출)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35%를 한도로 함 (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구 분	내용	비고
고 정 이 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2%p를 차감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 익 연 동 이 자	영업이익 × 3.3% (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 이자 면제)	이익연동이자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회차를 부과

- ▶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대출금리 4%로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PB)를 중진공이 인수
 -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 대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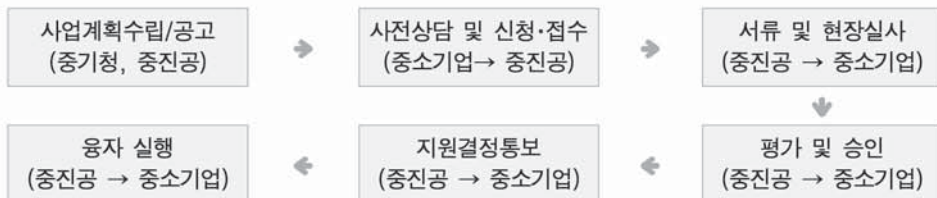
- ▶ 이익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성장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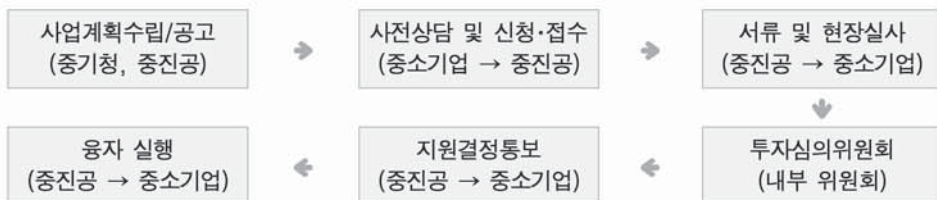
- ▶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4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프로젝트 당 10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0% 이내)
-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처리 절차

○ 이익공유형 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 및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 055-751-9583~5

궁금해요! 중기맨



- Q** 투융자복합금융은 임의상환이 가능한가요?
- A** 임의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임의상환을 허용할 경우 기업성장 시점에 임의상환으로 “성장가치의 공유”가 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이익공유형 대출의 이익연동이자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 A**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기 때문에 원금상환 종료 다음년도에 마지막 이익연동 이자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14년 대출업체의 경우 '19년 재무제표에 의해 납부금액이 결정되어 '20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성장공유형 대출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표면금리(1%, 단리)는 대출기간 중 이자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금리이며, 만기보장금리(4%, 복리)는 중진공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되는 이자(상환 할증금, 기 수령한 1%표면금리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1-1-③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우수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3,500억원

- 2015년 신청기업 2,008개사 중 1,67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 등)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④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용자 규모

11,500억원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4,678개사 중 3,96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8억원

지원 대상

신성장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글로벌 진출기업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화 진출기업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중소기업

* 기초소재형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① 업력 4년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 단, 최근 3년의 시작연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성장유망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 사업장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 신성장유망(한중FTA취약업종)은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 제외

○ 운전자금

-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산업경쟁력강화 자금은 제외)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 접수시기 : 2016.1.4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 (동시 업로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1-⑤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용자 규모

2,550억원

* 규모산출 : 1,020개 업체 × 250백만원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 (사업전환자금)

- ①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사업전환의 대상일 것
-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①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기업이 아닐 것 ② 무역조정지원기업 부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만 경과기업이 아닐 것 ③ 휴·폐업중인 기업이 아닐 것

- (재창업자금)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제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재(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 단,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 ③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 운전자금

-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지원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 : 직접대출

신청·접수

-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⑥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수출품 생산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용자 규모

1,550억원

* 2015년 11월말 신청기업 2,894개사 중 2,61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용자 범위

구 분	내 용
긴급경영 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월 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월전분기와 전전분기 ▪ (신청시점)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신청제한)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를 2회 이상 지원기업은 용자 제외
수출금융 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용자 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2.4%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 수출실적 향상 : 수출실적(50억이상) 2년 이상 보유기업 중 자금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이 최근 12개월 실적의 60% 이상이고, 최근 24개월 실적의 30% 이상인 경우
 -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 접수시기 : 2016.1.4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2

중소기업 기업진단 사업

| 진단→처방→치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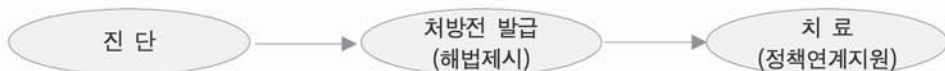
지원 규모 3,800건

* '15년 지원현황 : 3,881건 지원(11.30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신용정보관리 규약상 연체·부도 등으로 신용거래정보에 등록된 기업

지원 내용

- 경영+기술전문가
- 진단평가시스템

- 진단보고서/추천서
- 개선방안 및 실천계획

- 기업맞춤형 정책연계

○ 진단 및 처방

- ▷ 업종전문가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기업현장 방문, 외부 경영환경과 기업 내부능력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치료를 위한 사업연계 추천서를 발급

○ 정책연계지원을 통한 치료

- ▷ 사업연계 추천서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연수, 수출마케팅, 컨설팅 등 각종 정책을 해당 기업에 맞추어 연계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기업진단 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서 양식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각종 서식에 게재**처리 절차**

구 분	내 용
신청	· 기업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 애로 분야 파악
진단평가	· 업체방문/실태조사 · 정책자금 지원 필요시 기업평가등급 산출
처방	·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프레젠테이션) · 사업연계 추천서 발급(중진공 내부사업) · 타기관 사업은 사업정보 제공 ·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치료	· 연계지원 실시 ①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 소요금액 사정 후 대출실시 ② 자금이의 사업 - 사업별 신청, 심사 - 사업연계지원 ③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안내
사후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 · 지속적인 성장 관리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처 : 055-751-9514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1-3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해외전시회(18회), 무역사절단(132회), 수출상담회(5회), 지역 특화사업(15회) 등

*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 대상

각 지자체 관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및 편도 항공료 등 지원
무역사절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 •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 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 지역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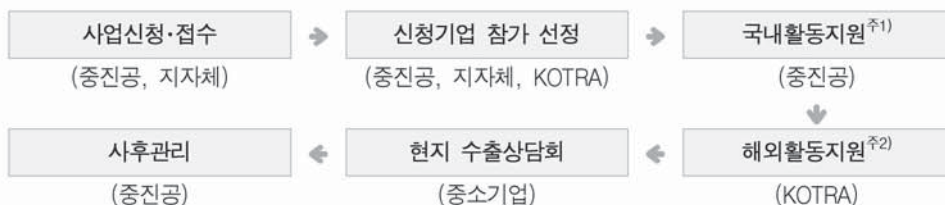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기타 수출 관련 증빙자료

처리 절차



주1) 카탈로그 수집·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주2)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4, 9718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사업 신청 및 일정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해외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되며, 무역사절단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해외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됩니다.

용어설명

사후관리 해외마케팅지원사업(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한 중소 기업을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진공이 수행하는 타사업(정책자금, 컨설팅, 연수 등)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외마케팅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1-4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세계 12개국 20개 지역 276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지원 대상

제조업(전업률 30%)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 제출처 :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수출
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심사·평가내용

- 경영평가(20%), 제품의 시장성(30%),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35%), 수출
인큐베이터 지원효과(15%)
- *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 기업(Inno-Biz, 벤처기업 등) 등은 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수출사랑방은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PC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Q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 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 용어설명

수출사랑방 중소기업자가 수출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내에 단기간 출장하는 경우, 세계 12개국 20개소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동 사무공간을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1-5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마케팅비용 및 노하우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마케팅, 해외 구매오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도와 드립니다.

지원 규모

2,100개사(전체 예산 30.07억원)

* '15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3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60개사, 글로벌 홍보마케팅 1,231개사, 온라인수출관 807개사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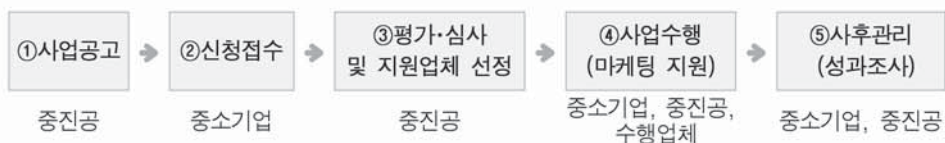
-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받은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글로벌 홍보마케팅	• 영문 e-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제품 해외홍보 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 등 후속관리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택일)
검색엔진마케팅	• 지원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글, 야후 등 해외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 최적화 및 홍보 지원
온라인수출관(7개권역)	• 운영권역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 현지어 기반의 상품페이지, 거래제의를 제작 등 해외 구매오퍼 발굴 지원

신청·접수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제출 서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처리 절차****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www.gobizkorea.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A 기업부담금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22만원, 검색엔진마케팅 100만원이며,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온라인수출판 지원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용어설명

검색엔진마케팅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이트 분석, 키워드 선정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1-6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 해외바이어에 대한 맞춤형 국내업체 알선 및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받아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사업으로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문가가 알선 이후에도 해외바이어와 알선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 성사율을 높이고 있는 바이어 맞춤 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2,200건 내외(전체 예산 8.35억원)

* '15년 지원현황 : 해외바이어알선지원 2,034건, 방한바이어 지원 132건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바이어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알선(BMS) 및 방한바이어 지원(VAP)

분 야	내 용	신 청
바이어알선 지원 (BMS)	•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및 검수 • 최적의 중소기업 발굴 및 매칭	해외바이어
방한바이어 지원 (VAP)	• 업체 동방방문 및 미팅 스케줄 조정, 미팅지원 • PT 대행 및 통역지원, 무역상담 등 정보제공	국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제출 서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

신청 접수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 바이어 알선 의뢰 접수 ▷ 바이어 의뢰 신청 건 평가(무역 전문가) - 바이어유효성여부 파악(이메일, 유선확인, 신용조회 실시)
발굴 매칭	국내업체 발굴 및 알선(BMS)	▷ 무역전문가 및 지역본(지)부 활용, 최적의 중소기업 발굴 ▷ 중소기업에겐 해외바이어를, 해외바이어에겐 최적의 중소기업을 알선 소개
부가 지원	방한 바이어 지원 (VAP)	▷ 방한 바이어 대상, 국내업체 동반 방문, 미팅지원 및 통역 등 현장 밀착 지원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팀 : 02-3667-7997

궁금해요! 중기맨



- Q**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는 것에 대한 기업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A** 방한바이어 지원(VAP)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 Q**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은 후 그 이후 발생하게 되는 바이어와의 거래진행 사항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A** 방한바이어 지원(VAP)사업은 바이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에서부터 방한 이후 수출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 Q** 지원자격이 있나요?
- A**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국내에 초청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통역이나 무역상담지원만 필요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해외바이어 알선(BMS : Business Matching Service) 해외 바이어의 인콰이어리를 받아 최적의 국내업체 발굴하여 알선

방한바이어 지원(VAP : Visitor Assistance Program) 해외바이어가 중소기업 업체방문을 위하여 방한하는 경우 업체동반방문, 통역 등을 지원하여 사후관리 지원

1-7

우수신제품발굴지원(중기제품거래활성화 - HIT500)

| 창업초기 아이디어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홍보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홍보에서 국내·외 판로지원까지 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0개 제품 내외(전체 예산 3.29억원)

* '15년 지원현황 : 선정지원 제품수 319개 제품 마케팅 홍보 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 <소비재 시제품 이상을 보유(생산)한 기업>

▷ 지원자격 : 3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신제품 출시(2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온라인 홍보 전시장, 소비자평가단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 지원(국내정책매장 아임쇼핑, 민간대형 유통사 등) HIT500 웹사이트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Tool 제공

구 분 (지원비율)	내용	정부지원한도
Step1 온라인 홍보전시장	• 온라인 홍보 전시장 구성-HIT500사이트 내 제품홍보페이지 제작 및 등록	무상 지원
Step2 온라인 입소문 마케팅지원	• 소비자(사이트 회원) 제품평가 및 온라인 홍보 • 홍보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이트 회원 대상) • 무료제품 체험단 운영 (소비자 직접체험) • SNS 연계 홍보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이벤트 등)	선정제품 모두 지원 선정제품 모두 지원

구 분 (지원비율)	내용	정부지원한도
Step3 제품 판로지원	• 판로 확보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지원 * 목동 행복한백화점 4층매장 아임쇼핑입점 *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기획관 입점 • 유통사 MD 마케팅 ·판로 코칭 (유통사 선정 제품) 연계	참여제품중 전문가평가단 선정 우수 제품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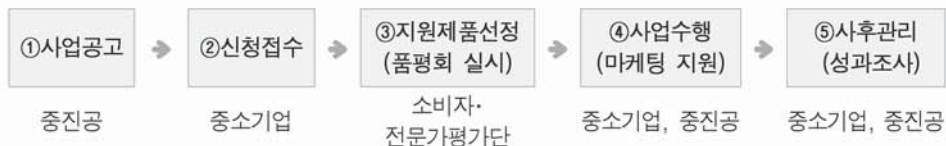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1차(2016,2월) 2차(5월) 3차(8월)

제출 서류

온라인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 신청양식은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 신청게시판에 게재된 온라인 사업신청 양식 참조

처리 절차**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55-751-9753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HIT500 사이트(www.hit500.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HIT500 신청방법과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중기제품HIT500 (www.hit500.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HIT500 하위메뉴 중 HIT500 신청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유통사MD) 온라인평가 및 제품 실물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단이 쉽게 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시 제품 이미지, 설명, 장점 등을 자세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Q HIT500 선정 후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HIT500은 단순 자원사업이 아니라 참여업체의 활동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는 쌍방향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HIT500사이트에 제품홍보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사이트 회원들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품체험단, 아임쇼핑, 각종 타 사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신청(중기제품홍보지원, 마케팅 판로 코칭, Gobizkorea 상품 등록) 등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더 큰 마케팅·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1-8

글로벌협력지원

|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기업간 산업협력 지원

해외진출지원, 기업간 산업협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국제협력지원	• 국내·외 정부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에 합작투자 및 기술 협력 등 산업협력 지원 - 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협력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지원(진출일정, 법인설립, 법률·세무·회계 등) - 현지 진출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및 연수 지원
기업간 산업협력	• 투자희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및 방한 지원, 투자 무역환경 세미나 개최 등 • 중진공 해외센터(청도), 코리아데스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견 직원을 통해 기업간 비즈니스 지원, 진출희망국에 대한 상담지원 * 중진공 상주 산업기술협력관 : 스페인 산업기술센터(CDTI, Jordi Espulga Bach),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ITCCK, Roberto Martorana)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 비즈니스 상담회,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APEC 회원국으로의 진출 및 글로벌화 기반 구축 도모 - 비즈니스 상담회 : 년 1회 개최, 수출유망 중소기업 10여개사 대상(행사 사업비, 통역, 홍보자료 제작 등 지원) - 혁신 컨설팅 : 신흥국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sbc.or.kr)의 공지 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기술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처로 문의

지원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33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홈페이지 참조)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진공 해외센터(청도), 코리아데스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개별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별상담은 산업기술협력관 담당자(055-751-9735)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즈니스 매칭,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 APEC 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 지원을 위해 중진공 글로벌 사업처 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로서, APEC 역내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해외업체와의 상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음

1-9

남북협력지원

| 북한 진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 지원

북한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현지 기업의 컨설팅, 주재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 컨설팅 : 5개사, 40백만원
- 교육 및 워크숍 : 20명(주재원 대상), 27백만원
-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 : 각 1회, 6백만원

지원 대상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

- '15.12월 말 현재, 124개사
- '10.5.24 조치로 인하여 신규 대북 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현재 북한에 기 진출한 개성공단 입주 가동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남북 관계 호전시 지원 대상 확대 예상

지원 내용

- 개성 공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생산성향상 및 디자인·마케팅 컨설팅 수행(5개사), 기업당 8~12일
- 경영 관리 분야의 전문 강사를 현지 파견하여 주재원 교육 실시(총 16회, 무료)
- 개성공단의 현안공유, 발전과제 토론 등 개성 법인장 워크숍 개최(연 1회)
- 개성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개성공단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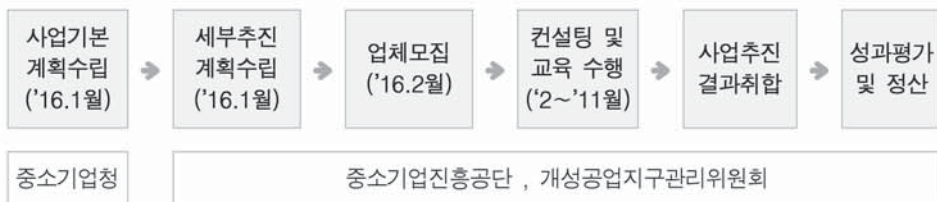
'16. 1 ~ 사업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남측 소재) 혹은 협력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개성현지 소재)에 연락(방문 혹은 전화)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기업현황자료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남북협력팀 : 055-751-9742

1-10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국내 전문가 지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진입 및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1,000개사(전체 예산 115억원)

▷ 경영·기술(900개, 110억원), 원스톱창업지원(100개, 5억원)

* 지원기업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15년 지원현황(선정기준) : 진단연계형(503개), 수요자선택형(365개), 원스톱창업지원(224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 업력 제한 없음	• 경영 전 분야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 환경경영, 新사업·상품기획 등) • 기술 전 분야 (생산기술, R&D사업화, 공장혁신, 원가·품질 개선, 제품기능 및 컨셉설정, 설계, 엔지니어링 해석 등)
원스톱 창업지원	• 제조업 영위 기업 중 - 예비 창업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재창업자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중진공 정책자금)	• 창업공장 설립(변경) 승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 사업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
-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종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과제 및 업력에 따라 전체 컨설팅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구 분		정부지원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기술	업력 7년 미만	65%	최대 20백만원
	업력 7년 이상	30 ~ 50%	최대 30백만원
원스톱 창업지원		65%	최대 5백만원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적기지원 및 주관기관 일원화에 따른 선정 절차 일원화 및 신청 접수기간 변경
 - ▷ 진단연계형과 수요자선택형 과제를 경영·기술과제로 통합 운영
 - ▷ 신청 접수기간도 수시(진단연계형) 및 반기접수(수요자선택형)에서 매월접수로 변경

기존('15)		변경('16년)	
과제명	선정방식	과제	선정방식
진단연계형 (수시접수)	신청→진단(처방)→적합성 평가 →선정	경영·기술 (매월접수)	신청→사전진단평가→ 수행계획평가→선정
수요자선택형 (반기접수)	신청→대면평가→현장평가 → 선정		
원스톱 창업지원 (수시접수)	신청 → 온라인 선정평가		좌 등

신청·접수

'16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접수

-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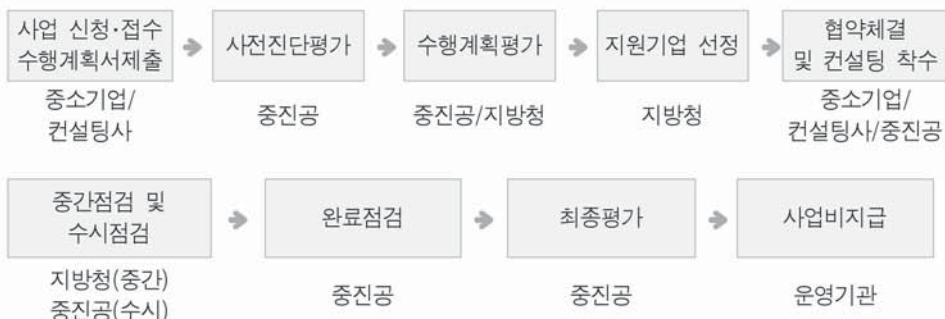
- 신청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타당성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 ▷ 사전진단평가 : 컨설팅 신청기업에 대해 컨설팅 목적 및 타당성, 수행방안, 컨설팅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 ▷ 수행계획평가 :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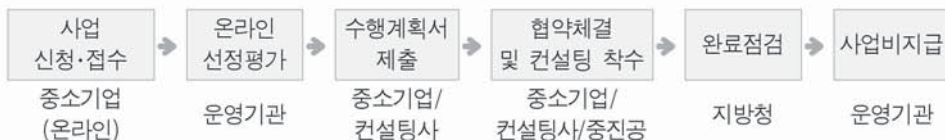
- 컨설팅사업 참여신청서, 수행계획서(컨설팅사와 공동작성)
- 제출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 경영·기술(신청에서 착수까지 약 1달 소요)



- 원스톱창업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4, 8909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3, 9846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 www.smbacon.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컨설팅 기간은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Q 현재 '15년 수요자선택형 과제를 수행중인데, '16년도 경영·기술 과제에 추가 신청가능한가요?

A '15년 과제 진행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5년 사업 완료후 신청 가능합니다.

Q 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의 컨설팅 길라잡이 코너를 통해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1-11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 해당 산업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체 예산 33.25억원 (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전기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해양레저장비 전 분야

지원 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주관기관

-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3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정보공개 → 중소기업법위해설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부보조금 (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 기간 : 자전거 분야 2년 이내, 해양레저 분야 3년 이내
- ▷ 지원 한도
 -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 해양레저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 (과제당 총 8억원 이내)
- ▷ 지원 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보조금 지원 비율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 간)	총사업비의 3/4 이내
단독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 ▷ 정액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징수기간 : 5년 이내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 제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5층 창업기술처
-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과제명, 접수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심사·평가 주요내용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평가 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 및 디자인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및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사업화 연계 계획의 명확성(사업화 컨설팅 추진 계획 포함)

-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 미달에 의한 “지원제외”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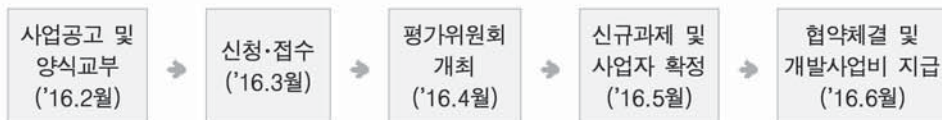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주관기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비영리기관 제외)
- 기업(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비영리기관 제외)
- 공장등록증 사본, 감사보고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납세 증명서는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처리 절차



*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4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leisure.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영위 기업도 신청·접수 가능한가요?

A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해야 함).

Q 현재 관련분야에서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 신청·접수 가능한가요?

A 개발이 완료된 것만 아니라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Q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우대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신기술·신제품·신뢰성인증·우수디자인상품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이 우대조건에 해당합니다.

Q 신청·접수 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A 전산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전산 등록기간에 전산 접수한 후 신청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해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지원

R&D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기획 및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개사(전체 예산 30.7억원)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300개
- 사업화기획 지원 : 90개
- 제품화 지원 : 45개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 및 기업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5년 지원현황 : 100개 기업(기술사업화 진단 100개, 사업화 기획 32개, 제품화 지원 20개)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특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사업화(양산, 매출발생)가 완료된 기업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기업은 제외)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와 제품 전환 시 시장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 로드맵과 세부 연계지원 계획을 수립
- 제품화 지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시제품제작, 분석,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용역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구 분	지 원 내 용	정부지원한도
제품화 지원	▪ (평가) 시제품의 성능평가, 품질평가, 신뢰성평가 ▪ (인증) 시제품의 인증 (국내, 해외), 공인인증기관 성적서 발급 ▪ (컨설팅) 공정개선, 양산적용, 품질개선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자인 개선·보완 ▪ (시제품제작) 시제품 제작, 모형제작 및 시금형 제작 ▪ (마케팅) 상품디자인, CI/BI개발, 영문 디렉토리 ▪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자료 제작 ▪ (장비이용) 외부장비 활용비용	5,000만원

신청·접수

'16. 1. 11 ~ 1. 22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techbiz.sbc.or.kr>)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일체 우편제출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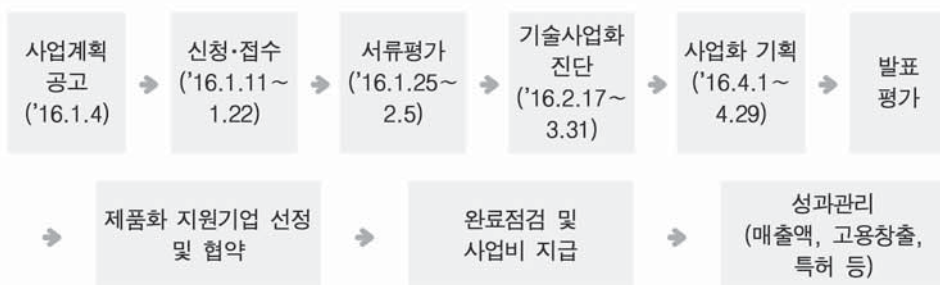
- (서류평가) 기술의 우위성, 차별성, 완성도, 기술의 시장 경쟁력, 구현 용이성, 성장성, 사업수행 역량, 재무역량 등

*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3, 9852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techbiz.sbc.or.kr>)

1-13 연수사업

| 중소기업 CEO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CEO 및 경영·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실무 적응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 기법, 신기술 습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연간 5만명(직무역량향상연수·온라인·정책연수인원), 400개사 (맞춤연수 지원업체수)

* '15년 지원현황 : 54,711명, 맞춤연수 452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 내용

- 8,4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400여개의 다양한 직무역량향상연수과정 운영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운영(맞춤연수)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수)
 - ▷ 정책자금, R&D, 인력, 수출마케팅 등 중기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연수, 중국주재원 역량강화 연수 등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 실시(현장맞춤형연수)
- 수요자들의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터넷·모바일연수과정 제공(원격연수)

신청·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별도 심사, 평가 절차 없음)

- * 직무능력향상연수, 온라인연수 : 과정 개설 전 신청 필요
- * 과정별로 신청 기업의 연수비 부담 필요

제출 서류

연수신청서(훈련위탁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기업확인서 : 원천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연수 과정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Off line	직 무 역 량 향 상 연 수	◦ 최고경영자분야		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 창의인재양성분야		창의력향상(융합),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기혁신	
		◦ 생산품질분야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관리, 품질관리, 국제인증	
		기 술 연 수	◦ 생산기술분야		기계, CAD, 유공압, 메카트로닉스, 플라스틱
			◦ 뿌리기술분야		주조·단조·열처리·도금·금형·용접
			◦ 스마트융합분야		전기전자, IT, PLC/제어
	맞 춤 연 수	◦ 문제해결형		개별기업의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국제연수			
On line	원격 연수	◦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 오프라인 연수와 결합한 혼합형(Blended) 연수	
		◦ 모바일연수			

연 수 비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 실시

- * 신규연수과정은 2015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원격연수를 제외한 **NEW**표시 과정)
-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고용보험 환급 가능
- * 신청기관 : 연수비 환급신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 * 신청시기 : 교육종료 후 14일 이후
- * 신청서류 : 훈련비용지원신청서(소정양식), 수료증 사본,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계산서 사본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 *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연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보험 환급신청 후 수령

연수비 감면제도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	30%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기타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문 의 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http://sbti.sbc.or.kr>
- 중소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http://giti.sbc.or.kr>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http://gsti.sbc.or.kr>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http://jhti.sbc.or.kr>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http://global.sbc.or.kr>

궁금해요! 증기맨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카드로 결제시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용어설명

모바일러닝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용자를 위한 '중소기업연수원 모바일러닝(<http://mlearn.sbc.or.kr>)' 앱(App)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연수생들이 편리하게 학습 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제공

1-1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규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

가입 요건

구분	내용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가입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 기업 ·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학력, 자격, 경력 등 제한 없음)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공제부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
공제금리	· 연 복리이자(연 단위 변동금리) · 홈페이지에 공제금리 게시

가입 제한 기업

- ✓ 부동산,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사업 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핵심인력 납입금 + 기업납입금 + 만기이자) 형태로 지급

○ 가입자 혜택

- ▷ 중소기업 : 납입금 비용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 ▷ 핵심인력 : 5년 만기제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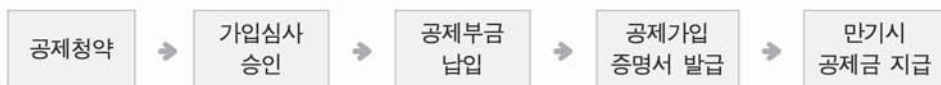
신청·접수

- 방문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약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 ▷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가입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단 : 02-6678-4266~7
- 내일채움공제 : www.sbcplan.or.kr,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제2장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69
2-2. 사업조정제도	71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75
2-4. 기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78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80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82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84
2-8.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86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88
2-10. 해외동포(H-2) 고용지원	91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93
2-12.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96
2-13.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 운영	101
2-14.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지원	104
2-15. 중소기업 손해공제제도(파란우산공제)	106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중소기업의 자구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이 '14.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지원센터」를 설치('13.5.29)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지원 내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연중)
 - ▷ 중소기업회계기준 인식도조사 및 의견수렴, 회계제도 개선 건의(정부, 국회)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관련 상담 (연중)
 - ▷ 적용대상, 회계처리 실무 등
 - ▷ 상담방법 : 홈페이지(<http://smac.kbiz.or.kr>) 또는 전화
- 중소기업회계기준 활용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온라인) (연중)
 - ▷ 수강방법 : 홈페이지(<http://smac.kbiz.or.kr>)
- 중소기업회계기준 기초 및 직무교육(오프라인) (연중)
 -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mac.kbiz.or.kr>) 또는 전화

구 분	중소기업회계기준 기초교육	중소기업회계기준 직무교육
교육시기/시간	연중/7시간	연중/14시간(2일)
교육장소	전국(주요 광역시)	전국(주요 광역시)
교육인원	60명(회당)	55명(회당)
교 육 비	무료	무료

신청·접수

연중 수시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 02) 2124-311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2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업종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

- * 다만, 방위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제외

신청 요건

○ 형식적 요건

- ▷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실질적 요건

-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신청가능

신청 서류

○ 일반 업종

-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 SSM업종

-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SSM진출에 따라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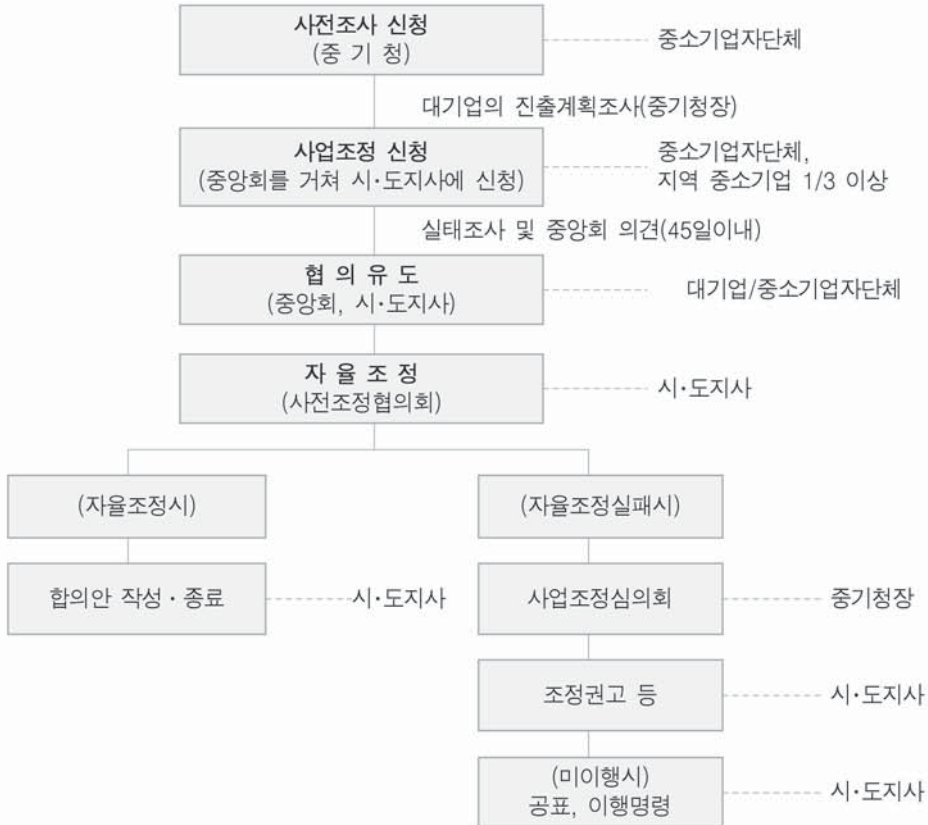
신청 절차

○ 일반업종



○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조정팀 : 042-481-3970
- 중소기업중앙회 : 유통업) 유통서비스산업부 : 02-2124-3172
제조업) 성장지원부 : 02-2124-313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A 상생법 개정('14.2.7)으로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49%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A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제한, 취급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생법 개정('14.2.7)으로 권고 미이행 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생법 개정('14.2.7)으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0.5억원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과태료로 강화되어 제도의 필요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용어설명

일시정지 권고란?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 도모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발생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모든 기업

* '15년 지원현황 : 30건 처리 (조정성립 16건 / 성립율 67%)

지원 대상

제조·수리·용역부문의 위탁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일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하도급법 미적용 대상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제조·수리) / 10억원(용역) 미만인 사건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건
- ✓ 공정위 직접신고 대상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조 5,000억원(제조·수리) / 1,500억원(용역) 이상인 사건

* 하도급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지원 내용

하도급거래시 발생한 분쟁의 자율조정 유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물 변제, 기술·인력 탈취 행위 등

신청·접수

- 중앙회에 직접 신고(우편 접수)
-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접수 후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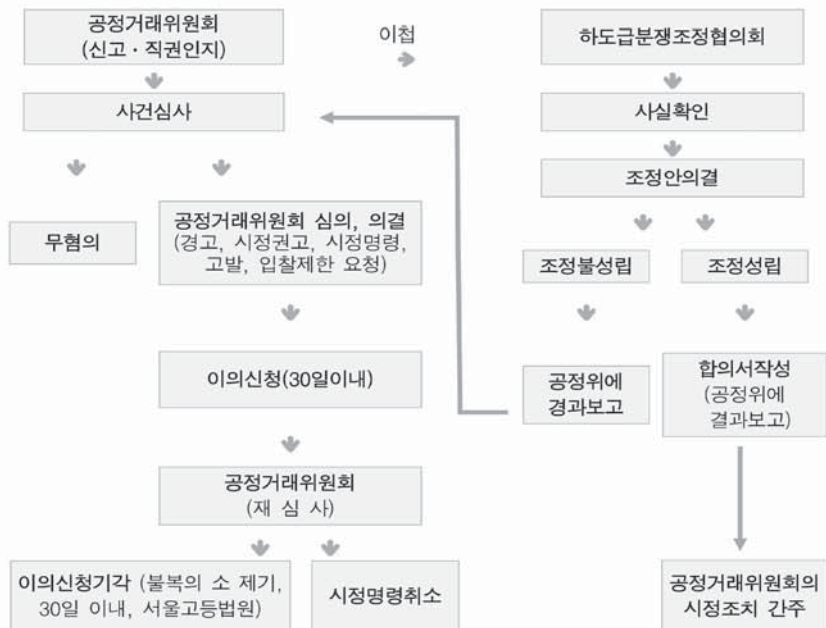
제출 서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하도급 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 신청양식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하도급분쟁 신고 → 분쟁 조정신청 안내(양식) 내려받기

처리 절차

하도급법위반 사건처리 절차도



* 분쟁조정은 협의회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당사자 동의 있으면 30일 연장 가능)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33

궁금해요! 중기맨



Q 조정성립 시 요력은? 또는 조정불성립 시 향후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A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위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공정위에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Q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 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악질적·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외에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2-4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세대간 아름다운 바통터치 지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고유기술, 전문인력, 경영노하우 등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가업승계·명문 장수기업 관련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연중)
 -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제도개선 연구·건의(정부, 국회), 정책이슈 발굴 포럼 개최
- 명문 장수기업 포상(연1회)
 - ▷ 업력 30년 이상 기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중소기업 발굴·포상
-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연1회)
 - ▷ 중소기업 1·2세대 간 소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공유하고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비전 공유
- 명문 장수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중)
 - ▷ 가업승계 전국 설명회 : 제도설명, 기업 의견수렴,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개최
 - ▷ 가업승계 차세대 CEO 스쿨 : 경영후계자 교육

구 분	입문과정	심화과정
교육횟수(기간)	연4회 / 2박 3일	연1회 / 15주
교육인원	30명(회당)	30명(회당)

▷ 정보제공 : 명문 장수기업 사례집, 안내서, 핸드북 등 발간

○ 컨설팅 및 상담 지원(연중)

- ▷ 컨설팅(경영, 조세 등) 및 제도 상담
- ▷ 상담방법 :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전화

○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경영후계자 네트워크 운영(연중)

- ▷ 경영후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경영 도모
- ▷ 가입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전화
- * 회원 250여명, 10개 지역분회 운영

신청·접수연중 수시(개별 사업별로 신청 필요) 온라인 www.successbiz.or.kr**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6~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이내 지원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원 대상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이후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판정 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 국내 기업 간의 특허권 분쟁, 외국계 기업인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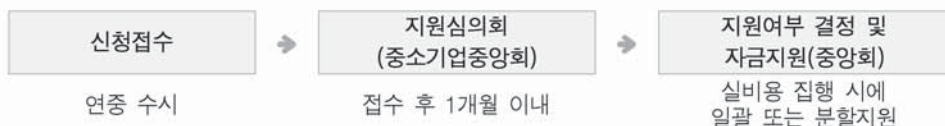
연중 수시

신청 서류

- 신청공문
- 조사신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조사신청서(또는 조사개시 결정서 또는 최종판정의결서) 사본
-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 약정서(소정양식)
-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서(소정양식)
- 무역구제 지원신청 현황(소정양식)
- 계좌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4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61~67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www.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중심의 단체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200개사 내외

* '15년 지원현황 : 해외전시회 162회, 수출컨소시엄 38회 등 총 180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 및 수출유관기관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100%
 - *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100% 이내
 - * 2단계 : 현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70% 이내
 - *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70%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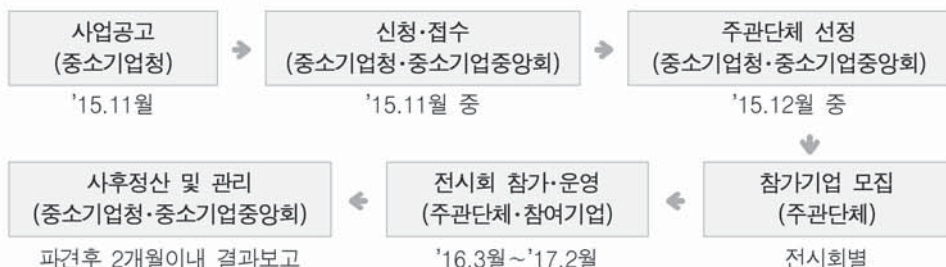
*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등 주관 단체별 요구 자료

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견적(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직전년도 기준 증빙자료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글로벌마켓지원팀 : 02-2124-3181~3
- 중소기업 해외전시 포탈 (www.sme-expo.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한국관 단체 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가능한가요?

A

한국관 단체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목 적	제 도 의 종 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규모별 경쟁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16~18년 적용)

-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16~18년 적용)
 -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04개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제품 127개 지정
- 소기업 우선구매 공동사업 추천제도 확대 시행
 -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품목 확대(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6개 → 전체) 및 공동사업 범위에 '단체표준 인증' 추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8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사업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청소년 진로체험, 신입사무관 현장체험,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년층의 올바른 진로 선택,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

사업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사업 내용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교육

- ▷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학생, 공무원 대상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교육 실시
- ▷ 중소기업 역사관 운영 및 중소기업 관련 기획전시 개최
- ▷ 자유학기제 기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공모전

-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 동영상, 포스터, 아이디어 제안서 공모
-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방송 프로그램 기획 공모전 : PD 및 방송작가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서 공모
- ▷ 초·중·고 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안 경진 대회

○ 중소기업 이해 교재개발

- ▷ 중학생 자유학기제 교과서 '미니컴퍼니 경영' 개발
- ▷ 초·중·고 교사 보조용, 예비교사 교양과목,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교육청 연수원 등 중소기업에 바로 알리기 위한 교재 개발

○ 연구용역

- ▷ 인식개선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 인식개선사업 성과제고 및 교과서 관련 연구
- ▷ 교원양성대학 교양강좌개설 운영 및 교재개발 연구
- ▷ 자유학기제용 선택프로그램 행복한 중기씨 교재개발

○ 홍보 사업

- ▷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 ▷ 방송프로그램 제작 : 1대100, 지금은 라디오시대, 스카우트, TV동화 행복한세상, 기업열전 K1, 황금의 펜타곤, 기부 생방송 등
- ▷ 지상파 PD 대상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팸투어
-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탁상용 캘린더 제작
- ▷ 5급 공채 신입사무관(입법/행정) 중소기업 현장체험
- ▷ 청소년 중소기업 진로체험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1, 3369
- ‘행복한 중기씨’ 네이버 블로그(<http://smallgiantk.blog.me/>)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①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②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③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및 상해수습 지원 등

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체

고용 기간 4년 10개월 (3년+1년10개월)

*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 가능

도입 국가 아시아 15개국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중국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150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명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고용인원 +1명 추가 및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가능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율이 심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 방문취업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고용 시 허용인원만큼 추가 가능

도입 쿼터 2016년도 쿼터 44,200명+ α (제조업)

구 분	배정인원	비고
일반인력쿼터	33,200명+ α	1,4,7,10월 신청
재입국취업자	11,000명	수시접수
합 계	44,200명+ α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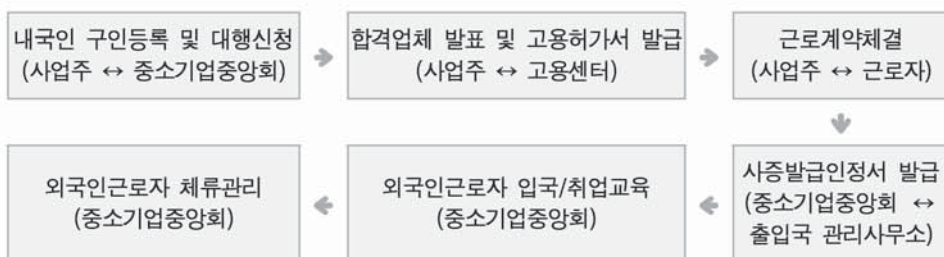
신청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배정 기준 일정 요건에 따라 업체에 점수를 부여(가감)하고, 업체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 내국인 구인실적 등 4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부여(총점 100점)
- 출국만기보험 연체 등 3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감점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1~4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0

해외동포(H-2) 고용지원

| 해외동포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동포(H-2) 고용과 관련한 각종 행정 신고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
- * 해외동포 : 방문취업지자(H-2)로 입국한 중국, 구소련 출신의 외국국적 동포

지원 내용 고용 신청 관련 행정신고

- 내국인 구인노력 대행
-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신고, 고용변동 신고
-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계약기간 연장(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등

도입 쿼터 30만 3천명(전 업종)

고용 기간 4년 10개월(3년+1년10개월)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7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명 이하	150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하
		301인 이상	40명 이하

○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	해외동포 고용인원
5인 이하	2명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명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명 이하	21인 이상	10명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명 이하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업무대행계약서 등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1~4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 ▷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지급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 (2015.12.31까지 가입자) 납입부금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 까지 사업주의 종합소득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 (2016.1.1이후 가입자) 납입부금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사업주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300만원× 6.6%= 198,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300만원×16.5%= 49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26.4%= 792,000원
88백만원 ~ 3억원 이하	38.5	300만원×38.5%= 1,155,000원
3억원 초과	41.8	300만원×41.8%= 1,254,000원

* 노란우산공제 월납부금 250,000원 가정, 세율은 주민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 수급권의 보호
 -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안전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내 대출가능
 -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업종분류에 따른 다른 소기업 범위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제조업(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및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 (경과규정)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일(2016.1.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소기업·소상공인) 영위하는 사업체가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공제가입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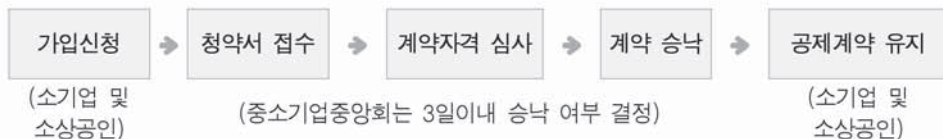
가입 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 부 금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 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가입 절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가입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의 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공제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2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수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및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대출 3,500억원, 가입 업체 수 14,000개

대 출 종 류	대 출 금 액
부도어음대출(제1호공제금대출)	40억원
어음 및 수표대출(제2호공제금대출)	476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공제금대출)	2,525억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제4호공제금대출)	5억원
공동구판매사업자금대출	200억원

* '15년 지원현황 : 3,274억원, 가입업체수 13,241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담배·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상조업, 대부업, 임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 출 종 류	대 출 사 유	지원 한도
부도어음대출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3~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대 출 종 류	대 출 사 유	지원 한도
어음 및 수표대출	•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3~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단기운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예방과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필요한 때 * 신용보증기금 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상	부금잔액의 최고 20배 이내 (일석e조보험 금액의 100%)
공동구매판매사업 자금대출	•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 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조합자기자본의 10배 이내

○ 지원조건

분야	부도어음대출	어음 및 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공동구매판매사업 자금대출
대출 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 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3.5~9.3%	신용등급별로 연3.5%~9.7%	연4.65%	연5.0% (실세금리)
대출 기간	3년	180일 이내	1년	180일 이내	1년 이내
담보 등	부금잔액 내 대출 : 연 3.5% 담보 대출 : 연 4.8% 신용보증서 대출 : 연 4.55~5.25%			매출채권보험 청구권의 근질권 설정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보증인입보)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2.0% 감면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 부금종류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 부금이자 등

-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 └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신청·접수

-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방문,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이용 가능)

신청 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및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6~9)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입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종료일이 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미납할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어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부도어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할인이 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할인 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년이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후 재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재대출 금액은 신용평가 후 결정됩니다.

Q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대출채권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A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세금계산서, 영세율계산서만 가능하며 면세계산서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대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 대출의 대상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외상매출채권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결제기일 180일 이내)

* 상거래 기업 중 공제기업 가입자의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등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채권은 제외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1~2%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매출채권보험이란?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www.kodit.co.kr)

2-13

중소기업보증공제제도 운영

|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보증서를 그 동안 보증 시장을 독과점 해왔던 민영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발급·지원하여 드립니다.

가입 대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 * 공공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를 의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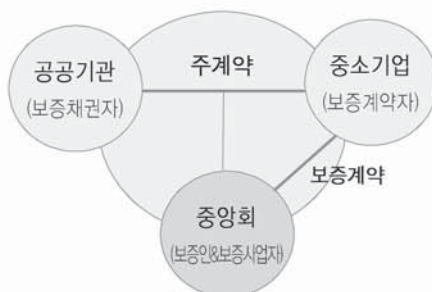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보증서’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 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 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금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금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이행의무와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 공제 구상도 >

**이용 방법**

중소기업중앙회(13개 지역본부 및 5개 지부), 보증업무 위탁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

신청 서류

조달계약서(주계약서), 납품지시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청약) 신청서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처리 절차

방문 또는 전화 문의	1899-0098
상담 및 보증한도 안내	전화상담·홈페이지
보증약정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약정 심사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약정 체결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청약	중앙회 본부/지역본부/대리조합/홈페이지
청약심사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료 납부	가상계좌자동이체
증권 발급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전자보증

문의처

- 중소기업보증공제 대표전화 : 1899-0098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보증공제팀) : 02-2124-4342, 4345
-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양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4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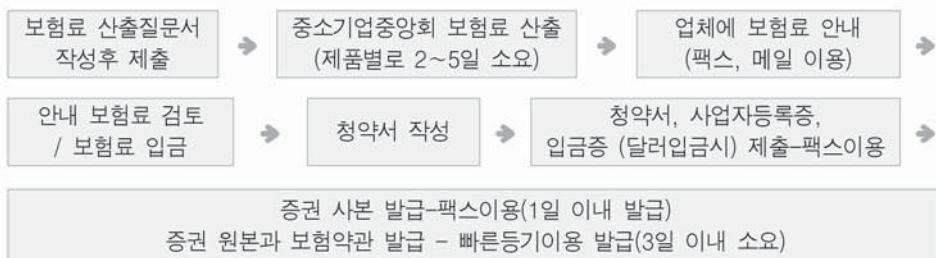
| 제조물책임보험 단체가입으로 보험료 경감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PL)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단체보험 가입시 개별 가입시 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 경감을 지원합니다.

PL 단체보험

- 사업개요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운영하여 기존 손해보험사 가입시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중소기업의 보험료 비용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PL대응력을 제고
- 가입대상 : 완제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 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과 관련된 생산물을 취급하는 자
- 보험료 고려사항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손해율 등에 따라 결정
- 특징 : 기존 손해보험사 대비 20~35% 저렴, 인수 거부 및 제한없음
 - * 장기가입자 및 각종 인증마크,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보험료 추가 할인

가입 절차



PL교육(자문)지원

- 지원내용 : 강사(자문) 무료지원
 - * 강사는 내외부 PL 관련 전문가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 * PL교육의 경우 50인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의 합동교육도 가능)
- 교육(자문)내용
 - ▷ PL법, 최근 PL동향 등 PL에 관한 사항
 -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 교육(자문)장소 : 신청 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 교육(자문)시간 : 2~4시간 범위 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 신청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Fax. 0502-397-0200, 02-761-4432
(홈페이지 www.plkorea.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교육(자문) 절차

희망업체 신청·접수
(업체 → 중앙회)



강사 지정
(중앙회)



시기 협의·실시
(강사 ↔ 업체)



결과보고
(강사, 업체 → 중앙회)

- 신청시기 : 수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02-2124-4352~5(대표 : 1666-9988 5번)
- 홈페이지 : www.plkorea.com 이메일 : pl@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5

중소기업 손해공제제도(파란우산공제)

| 기업 경영상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수제한을 최소화하여 공제(보험) 가입의 문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시설 소유·임차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 내용

→ 용어설명

화재공제 : 공장 및 일반 물건의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

근로자재해공제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상액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을 보상

재산종합공제 : 재물손해, 기계손해, 기업휴지(조업중단) 및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

영업배상책임공제 : 영업 수행상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재물손상으로 인한 손해 보상

○ 화재공제

- * 공제목적물(건물, 공장 등)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

구 분		보 상 내 용
화재	직접 손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및 그을음 또는 연기 손해 보상
	소방 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생긴 수침손해나 파괴손해 보상
	피난 손해	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임시 보관 중인 곳에서 5일 이내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목적에 대한 잔존물제거비용 보상
손해방지 비용		사고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

○ 근로자재해공제

- * 사업주(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구 분	산재보험(강제보험)	근로자재해(임의가입)
가입주관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사 / 공제조합
담보내용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내용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산재초과분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송비용 / 1인당, 1사고당으로 결정

○ 재산종합공제

- * 공제대상자의 재물손해(Ⅰ), 기계장치손해(Ⅱ), 조업중단손해(Ⅲ) 및 배상책임(Ⅳ)을 보상하며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각종 위험 담보
- ▷ 4가지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음으로써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업무간소화 및 관리 편의
- ▷ All Risk 담보형식이므로 담보 누락을 최소화

부 문	담 보 내 용
제1부문 (재산종합 위험)	공제대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임차, 리스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 -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등 각종위험(일부 면책위험 제외)을 보상

부 문	담 보 내 용
제2부문 (기계위험)	공제대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임차, 리스하는 기계장치가 아래 원인으로 인한 파손사고 손해를 보상 - 기계적 요인: 재질·설계·건설·조립상의 결함, 조절불량, 안전장치 고장 - 전기적 요인: 전압 과부족, 절연체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 기타: 기술부족, 종업원 부주의, 추락, 충격, 이물질 유입
제3부문 (기업휴지 위험)	제1,2부문의 사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자의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休止)됨에 따른 손실액 - 기업휴지기간 동안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 상실액 및 손해액 경감을 위한 특별비용을 보상 $* \text{총이익} = (\text{매출액} + \text{기말재고액}) - (\text{기초재고액} + \text{변동비})$
제4부문 (배상책임 위험)	공제대상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 일반배상책임(GL): 고지된 시설,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 및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책임(PL: Product Liability)

○ 영업배상책임공제

- * 담보지역(증권기재)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특별약관 기재)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공제대상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구 분	보 상 내 용	가 입 대 상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가입한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영업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업주가 가입하며 주로 음식점, 도·소매점, 사무실, 목욕탕, 숙박시설 등
도급업자 배상책임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제반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 시공자 및 도급업자 중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누구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완성되느냐에 따라 결정
주차장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전용주차장, 부속주차장, 빌딩 내 주차장

구 분	보 상 내 용	가 입 대 상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소유주의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	공제대상자가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기소유자 및 중기임차자 (업체 또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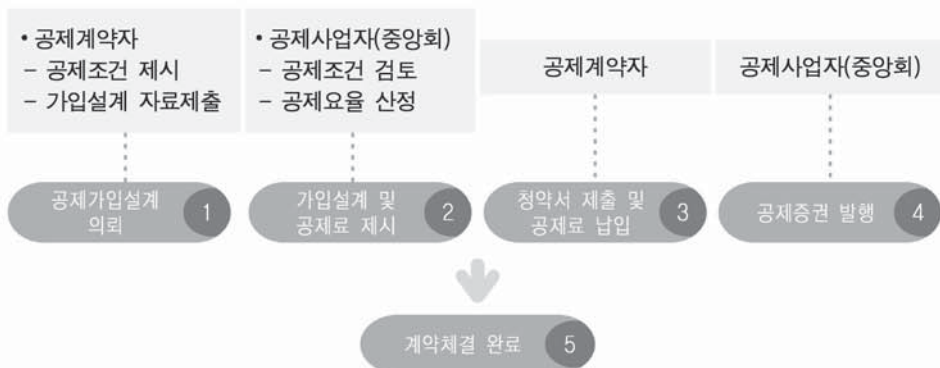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설문서 접수(메일 또는 팩스)
- 신청기간 : 수시
- 처리기간 : 7일 이내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재공제 : 건축물대장(필요시)
- 영업배상책임공제 : 각 업종별 정보자료*
 -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장 객실수, 면적, 좌석수 등
 - * 도급업자 : 도급계약서, 손익계산서 등
 - * 주차장 : 주차시설 정보, 면적 등
- 재산종합공제
 - ▷ 재산위험, 기계위험 부문 : 건물가액 평가자료(건축물대장 등), 유형·고정자산명세
 - ▷ 기업유지 부문 : 매출액 자료, 재고자산 리스트, 변동비 자료
- 근로자재해공제 : 임금증명서류
 - ▷ 연간계약-재무재표, 구간계약-(하)도급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전국대표 콜센터 1666-9988 (교환4번)
- 손해공제 홈페이지 www.ins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02-2124-4351~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3장 신용보증기금

3-1 신용보증	112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115
3-3 보증연계투자	117
3-4 유동화회사보증	119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23
3-6 매출채권보험	125
3-7 Job Cloud	129
3-8 창업지원제도	130

3-1

신용보증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0.5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차기 1년간 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리내용
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신보 직접 수집(일부자료는 기업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중점지원 주요 보증제도?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보증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부가서비스 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 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M&A 보증	· 합병, 영업양수 등 M&A를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 상시종업원(정규직)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 훈련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Q 보증료?

- A** 보증신청기업은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와 조사수수료를 납부
- * 보증료 :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
 - * 보증료율 :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의 범위에서 운용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경영혁신기업 발굴

서비스업, 전통제조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혁신기업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경영혁신기업 발굴 및 인증기업에 대하여 연간 보증 8.8조원 지원

* '15년 2,454개 기업 인증 및 보증 8조 8천억원 지원(11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전 업종)

지원 내용 금융지원

- ▷ 보증료를 및 신용보험료를 우대
-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시 인증 수수료 지원 등
-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신청·접수 메인비즈 홈페이지(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53-430-4353
-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홈페이지 : www.mainbiz.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향상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

3-3

보증연계투자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350억원 이내(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15년 지원현황 : 30개 기업, 250억원

지원 대상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이내(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외)로 운용하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K5 이상	30억원
K6~K8, SB1~SB2	15억원
K9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SB3 이하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3년
 - ▷ 단, 최대 허용기간은 법인 설립 후 10년 경과를 기점으로 7년까지 가능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및 각 해당 영업점에 문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투자상담	기보증이용기업 또는 신규기업 중 투자대상기업 발굴	영업점
↓		
투자조사	현장조사 및 표준신용조사서 작성후 담당부서로 추천	영업점
↓		
투자심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심사 진행	본점(자본시장부)
↓		
투자결정	투자심의위원회 또는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	본점(자본시장부)
↓		
투자집행	투자승인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집행	본점(자본시장부)
↓		
사후관리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Value-up 서비스 제공	본점(자본시장부)
↓		
투자금 회수 (EXIT)	IPO, 상환·매수청구, M&A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본점(자본시장부)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4

유동화회사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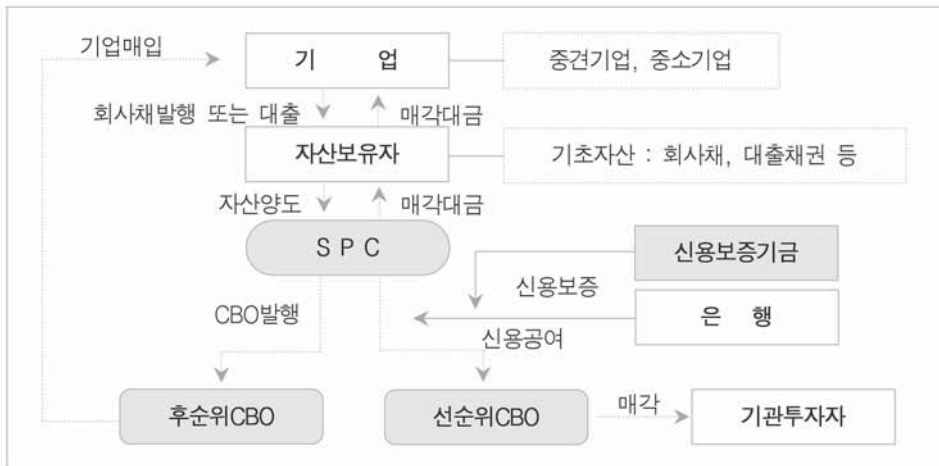
|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재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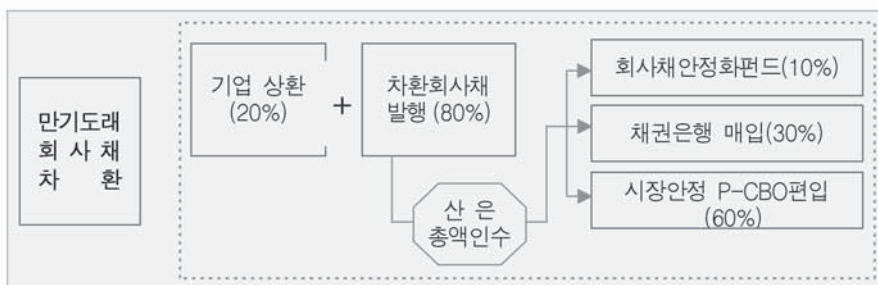
<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 지원을 통한 회사채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도입된 보증제도
- * '13.7.8일 금융위원회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발표
- ▷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의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지원

<차환지원 구조>



- ▷ 차환발행기업 회사채와 건설사 및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편입하여 Pool을 구성 후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
- ▷ 제도 시행 후, '15년 11월말 현재까지 3,731개 기업에 6.6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규모

'15년 중 11월말 현재까지 1,977개 기업에 3.3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 보증금지, 보증제한, 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 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9”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 기촉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 차환에 기초자산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지원 한도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억원)

구 분	K4이상 (BBB이상)	K5 (BBB-)	K6 (BB+)	K7 (BB)	K8 (BB-)	K9 (B+)	K10 -
중소기업	150	120	100	70	50	40	30
중견기업	250	200	150	100	70	50	-

(주1) 신·기보의 일반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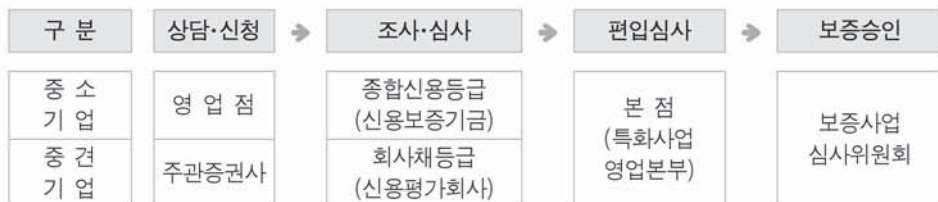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 업종 (도소매, 건설업 등)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 회사채등급 BB(K7) 이하인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 총차입금(본건 포함)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와 기보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포함

처리 절차



제출 서류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발행 금리

신용등급별로 3.09%(K1등급, A등급) ~ 4.69%(K9등급, B+등급) 수준

- ▷ 상기 금리수준은 2015.11.2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후순위채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은 신보 영업점, 중견기업은 거래증권사를 통해 편입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최저신용등급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결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체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 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공급계획 2,5조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 제외)
 -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
- 대상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49가지 시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지원 한도 같은 사업당 최고 4,000억원 보증

- ▷ 토지선보상을 위한 보증은 3,000억원을 한도로 별도 운용

지원 내용 보증지원 누계 : 186개 사업, 총 18조 4,25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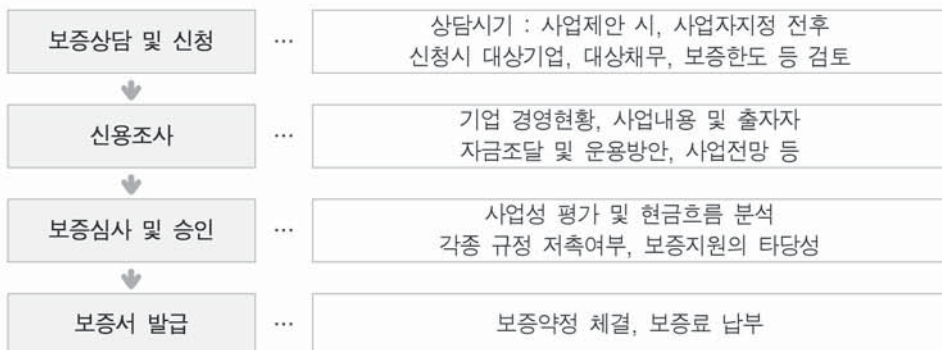
- ▷ 도로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 30개 사업 8조 9,967억원
- ▷ 철도 : 신분당선 등 6개 사업 1조 8,602억원
- ▷ 항만 : 부산신항만 등 15개 사업 1조 8,121억원
- ▷ 터널 : 용마터널 등 8개 사업 8,549억원
- ▷ 환경 : 순천에코그린 등 24개 사업 8,704억원
- ▷ 문화 : 국립해양박물관 등 14개 사업 4,196억원
- ▷ 학교 : 서울신도초교 등 41개 사업 1조 5,525억원

제출 서류

자 료 명	비 고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주주명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제경영자 포함
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금융거래확인서	본건기관,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⑧ 재무제표(최근 2기분)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기업 포함
⑨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실행협약, 실시계획서 등
⑩ 금융약정 관련 서류 사본	대출약정서 등
⑪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보증료 중소기업 우대부분 적용 확인용

* (주)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보에서 직접 수집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 053-430-447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6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때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17조원으로 운용

가입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중소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수 부적합업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보험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3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 험 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하나보험	5일	개별 구매처에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가입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소기업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증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A**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용(보험가입비용)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3-7

Job Cloud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자원을 위한 잡매칭 서비스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우수 중소기업 분류 : 좋은 일자리, 신보 스타, Main-biz, 유망창업기업
- 대학(희망사다리 장학생 포함), 특성화고 인력이 연계되도록 온라인 채용사이트 운영,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중기청 선정 Main-biz기업을 포함하여 신보 선정 좋은 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

지원 내용

- Job Cloud 채용 정보 등록 시 '워크넷'(고용노동부 채용사이트) 자동 연계
- Job Cloud를 통해 인력 채용 시 고용창출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보증료 할인
- 채용 박람회 참가 시 부스 사용료, 참가비 등 전액 무료

사이트 주소

www.kodit.co.kr 접속 후 '잡클라우드 바로가기' 클릭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53-430-449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8

창업지원제도

| 희망창업아카데미(창업교육부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창업과정, 창업초기과정, 재도전 창업과정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 창업교육수강 후 창업보증, 창업컨설팅(무료) 등을 연계지원
- 단, 창업보증은 신보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창업 아이템을 갖추고 창업 준비(운영)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가

-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 및 지식창업(예정)자 우대

지원 내용

창업자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 제공(3일 21시간 내외)

- ▷ 예비창업과정 : 기업가정신, 아이템구체화, 사업계획서작성 및 실무, 창업지원제도 활용 등
- ▷ 창업초기과정 : 사업내용 및 환경분석, 비즈니스모델수립 방안, O2O마케팅 수행계획 등
- ▷ 재도전창업과정 : 창업실패 및 성과공유, 사업타당성분석 및 추진방안, 판로개척 등
- ▷ 창업전문과정 : 노무, 법률, 세무, 회계, 투자, 특허 등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작성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 신보홈페이지(www.kodit.co.kr) → 주요업무 → 창업 및 경영지원 등 → 창업지원업무 → 희망창업아카데미신청(수강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 교육 시작 3주 전부터 선착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 경영능력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53-430-4498
- www.kodit.co.kr 접속 후 '창업지원업무-희망창업아카데미' 클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4장 기술보증기금

4-1 2016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33
4-2 기술보증	134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37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40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143
4-6 전자상거래보증	146
4-7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대보증	148
4-8 R&D 보증	151
4-9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54
4-10 지식재산(IP) 보증	157
4-11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160
4-12 문화산업완성보증	163
4-13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67
4-14 기술평가	171
4-15 벤처확인평가	174
4-16 이노비즈 인증평가	178
4-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83
4-18 녹색인증평가	186
4-19 보증연계투자	189
4-20 투자유선부 보증	191
4-21 경영개선지원제도	194
4-22 재기지원보증제도	196

4-1

2016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16년도 총보증 규모는 20.4조원으로, 신규보증 5조원을 포함하여 총 19.5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 20.4조원

* '15년 10월말 현재 보증잔액 : 20.4조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공급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0월)		
보증잔액	209,000	204,026	204,000	△5,000
기술보증	200,000	195,250	197,000	△3,000
유동화회사보증	9,000	8,776	7,000	△2,000
보증공급	196,800	174,354	194,500	△2,300
기술보증	195,000	173,185	192,000	△3,000
신규보증	55,000	46,319	50,000	△5,000
유동화회사보증	1,800	1,169	2,500	700

○ 중점분야 보증공급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0월)		
기술창업 활성화	81,000	86,087	81,000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56,000	60,115	57,000	1,000
일자리창출	41,000	44,885	42,000	1,000

○ 창조경제지원보증 신규공급

(단위 : 억원)

예비창업 사전보증	R&D보증	지식재산보증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신성장산업 시설자금보증	합계
1,200	13,000	2,300	6,000	5,000	27,500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72

4-2

기술보증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6년 기술보증 잔액 19.7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7조원 별도)

* '15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19.5조원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 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기금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금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
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1,200억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 : 1,245억원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예비창업자
-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예비창업자 등

지원 내용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창업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5%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기초로 아이디어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 결정
↓		
창업멘토링	영업점 평가담당자	→ 창업자금 지원이 결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 등창업정보 제공
↓		
창업	예비창업자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창업기업의 업종, 기술사업계획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지원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8조 1,000억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 : 8조 6,087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우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조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철티저창업, 기술 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5%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히 30백만원 등
청년창업특례보증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고정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 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지식문화창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채널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중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영계 창업	(첨단산업)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사물인터넷(IoT) 관련기술·제품을 사업화하는 기업 (유관기관 사업선정자)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 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 규모

일자리창출기업보증 4.2조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44,885억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 4,449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일자리 창출기업 보증지원	▶ 과거 1년과 비교시 10% 이상 또는 20인 이상 고용증가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지원) 지원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 창출효과와 관련이 깊은 업력, 업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일자리창출평가표 평가 결과 3개 이상 항목 충족 기업
고용창출 특별운전 자금한도	▶ 최근 6개월 이내,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우대보증 지정 • 보증료 0.2%~0.4% 감면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신규고용 1인당 3~5천만원씩 최대 3억원(10인) 까지 지원	• 고정보증료를 적용 (1.0%)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의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시간선택제 인력	30백만원 이내

4-6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보증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7,000억원

* '15년 10월 현재 지원현황 : 6,550억원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 보증

-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대출, B2B일반자금대출
-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구 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50억원(담보보증 70억원)	30억원
보증료	기준보증료율에서 0.2% 할인	0.5% ~ 3.0%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는 '기술보증'과 동일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전자상거래보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불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보증제도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에 각각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구매기업	판매기업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리한 물품거래	판매기업 채권관리 업무경감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어음발행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담보확대에 따른 매출증가

4-7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대보증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협약 관련 추천기업을 위한 보증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협약관련 추천기업과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아이디어 보유 기업의 조속한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보증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00억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380억원 (156개 기업)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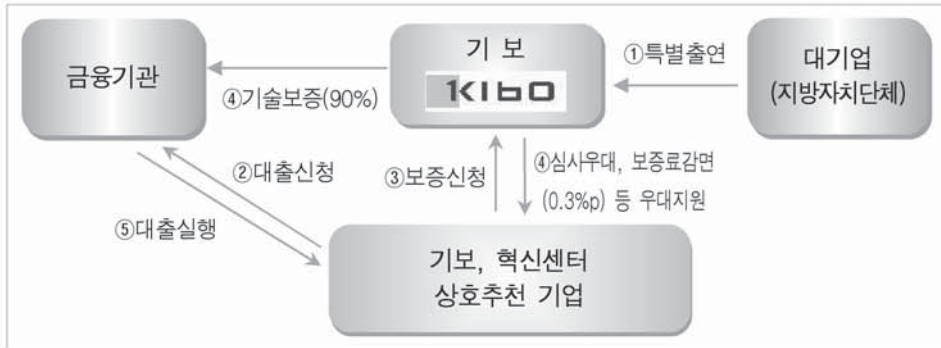
- 혁신센터 입주기업
- 혁신센터 관련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 창조경제타운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주체
- 위 세 가지 항목 관련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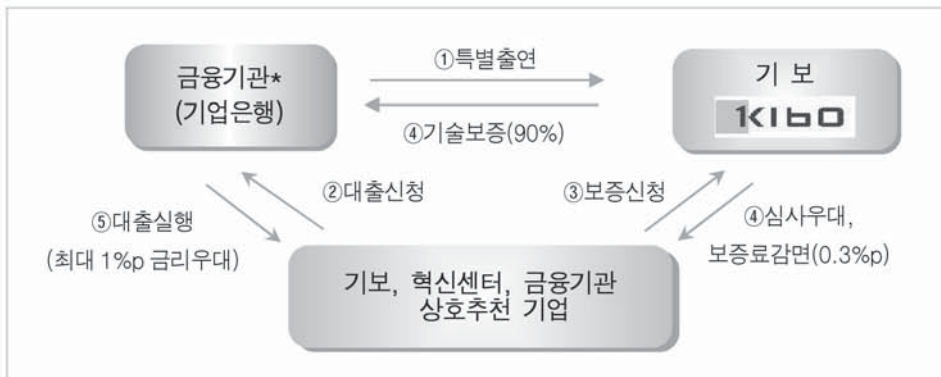
- 혁신센터 입주기업
 - 혁신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으로 혁신센터의 추천서 또는 기보 직원이 임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한 기업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우대보증 지원
- 대기업 특별출연 협약보증
 - 대기업이 기보에 일정금액을 특별출연하고, 출연금액의 10~12배수 범위에 서 혁신센터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지원



* 해당 혁신센터 : 강원, 경기, 광주, 충북 혁신센터(경남, 부산, 인천은 협약예정)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금융기관이 기보에 일정금액을 특별출연하고, 출연금액의 10배수 범위에서 혁신센터가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 지원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 협약 체결

○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기업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는 ‘기술보증’과 동일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기타 연계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기술·경영 컨설팅 우선 지원: 우대보증 대상 기업은 우선적 컨설팅 기회 부여

- (예비)창업기업: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금융·비금융지원
-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주체: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지원
- 기타기업: 기술경영컨설팅, 건강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용어설명

창조경제타운 : 온라인 공간(www.creative.or.kr)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눔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4-8

R&D 보증

| 중소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개발 및 사업화연계 R&D 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5,000억원

* '15. 10월 현재 지원현황 : 30,156억원

지원 대상 R&D 개발·사업화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 준비,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단계	• (대상과제)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종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 (창업자금) 개업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법인설립비용 등 - (기술개발자금) 인건비 등 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건설·운전비 등
사업화준비단계	• (대상과제) 신청기술이 개발완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과제 • 대상자금 -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자금

- ▷ 최근 5년 이내 정부 등 R&D과제를 성공한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단계	- 대상과제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R&D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R&D과제성공판정표'에 의해 성공판정 받은 과제 또는 최근 5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대상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 공행 정 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보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4-9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 '15. 10월 현재 지원현황 : 699건, 1,229억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KTRS 또는 KTRS-SM에 따라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 지원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장개척자금)
 -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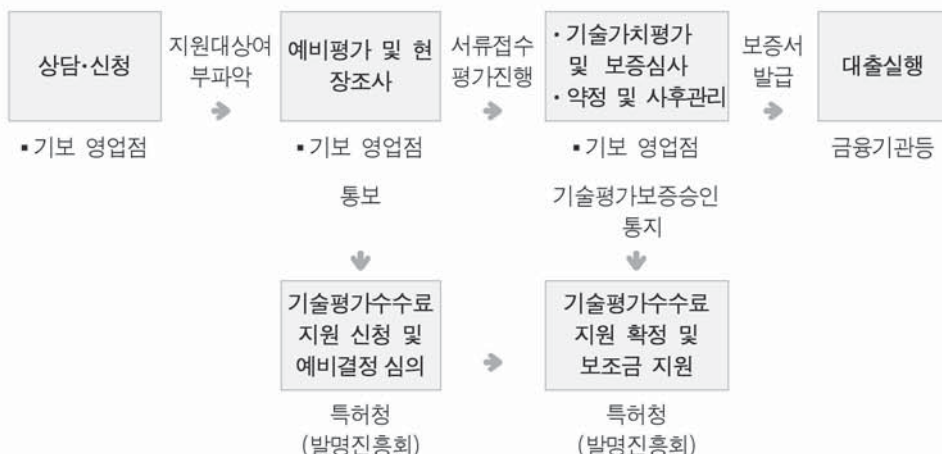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등록된 특허권만 보증 대상이며, 이는 보증취급과 동시에 반드시 담보(근질권)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10

지식재산(IP) 보증

|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와 보증을 연계하여 IP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 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000억원

* '15.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1,701건, 3,285억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및 인수자금 보증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 금융기관(기업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5백만원)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 우수 지식재산(IP) 사업화 기업의 경우 'BBB' 이상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신상표권 등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 그 밖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한 미등록 지식재산(IP)		

4-11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융합(완료)기술의 개발·사업화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 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0억원

* '15.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2,128건, 8,983억원

지원 대상

기술·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융합 진행·완료 여부에 따라 '기술융합개발보증'과 '기술융합사업보증'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기술융합개발보증

- ▷ (대상기업) 기술융합 진행(기술도입·연구개발)중인 기업
- ▷ 기술도입, 연구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술도입자금, 연구개발자금, 시제품 제작자금 등을 지식재산(IP)인수보증, 기업인수보증, R&D보증(개발, 사업화준비단계)을 활용

○ 기술융합사업보증

- ▷ (대상기업) 기술융합 완료 후, 사업화·양산중인 기업
- ▷ 융합이 완료된 융합제품의 양산을 위한 자금을 R&D보증(사업화단계), 지식재산(IP) 평가보증 등으로 지원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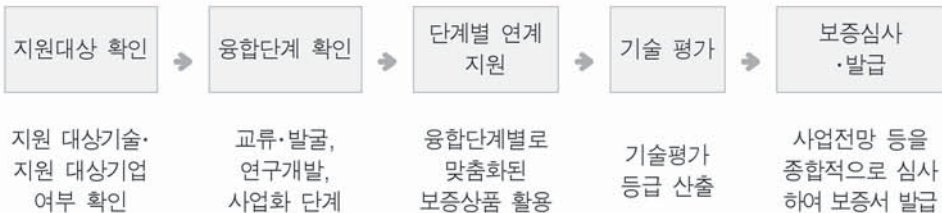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융합의 진행 및 완료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판단기준이 있나요?

A 보증 상담·신청시 융합 연관성을 검토하여 융합 진행중인 기업은 '기술융합인정표' 충족여부로, 융합제품 양산중인 기업은 '융합판별표' 충족 여부로 판단

용어설명

융합 :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용화를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기술, 사업 또는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기술, 신사업 또는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

4-12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상품(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700억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504억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유의사항 등

- 신청요건상 자기자금 조달 및 콘텐츠 판매계약 요건 충족에 유의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 프로젝트당 30억원 이내(고부가콘텐츠, 한류콘텐츠는 50억원 이내)
 - * 고부가콘텐츠 :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보증금액 결정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 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고부가서비스관련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선판매계약서 사본 1부(선판매계약서가 있을 경우)
- 총제작비 예산서(자체 양식)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자체양식)
-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9)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061-900-6065)

궁금해요! 중기맨



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문화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 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방송물납품계약서 등

4-13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968억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고부가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작코자 하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영위 중소기업
- 대상자금
 -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 같은 기업당 최고 70억원 이내(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총제작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제1금융권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콘텐츠제작기획서 (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보증진행 절차 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고객 준비서류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 보증심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 보증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4-14

기술평가

|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 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평가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평가신청 제한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중에 있는 경우 등

평가 종류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기술신용등급 산출을 위한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처리 절차****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
본 평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
기술자문/ 평가심의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
평가결과 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기술가치평가 :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

4-15

벤처확인평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벤처 요건
기술평가 보증기업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신청 제한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평가료 및 수수료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게임블링 및 베틱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4-16

이노비즈 인증평가

| 「중기청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 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 제한기업

-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2)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및 수수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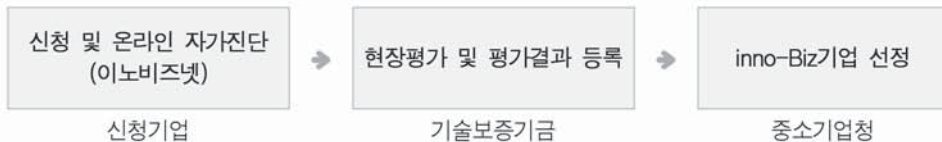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51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별표 2]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점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게임블링 및 베팅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4-1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 중개자로서 기술보유자, 기술수요자 간 기술거래 알선 및 협상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이 개방한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 테크브릿지(URL : tb.kibo.or.kr)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전국 모든 영업점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을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융합센터)
 -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이 보유한 맞춤형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융합센터)
 -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기술융합센터)
 -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융합센터 및 각 영업점 (1544-1120)

→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IP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4-18

녹색인증평가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관련 평가기관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제품 확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 대상을 구분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제품확인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86개 중점분야) 유명기술	녹색산업설비 및 기반 시설의 설치·공사, 녹색 기술 및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109개 사업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제품확인
1. 녹색기술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기술(제품)설명서 5. 신청기술 소유권 또는 실시권 증빙자료	1. 녹색사업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신청사업설명서	1. 녹색전문기업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매출·중대역서 및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1. 녹색기술제품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신청기술(제품)설명서 5. 녹색기술제품의 생산 증빙자료 6. 품질경영 및 제품성능 확인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

* 신청양식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발급을 전담하고 인증평가업무는 기보 등 지정된 평가기관에서 담당
 - ▷ 전담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녹색인증(전문기업 확인포함) 신청을 일괄접수 후 소관부처 지정 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 녹색인증에 대한 심의·의결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증평가 수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19

보증연계투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투자 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신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400억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298억원

지원 대상

보증 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R&D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 배제
-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이어야 충족
- ▷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지원 내용

-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투자팀) 및 각 영업점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 투자팀 : 02-3215-5960~8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1544-1120

4-20

투자옵션부보증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을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Seed Money를 우선 제공한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금의 선택으로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입니다.

지원 규모 200억원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83억원

지원 대상 설립후 5년 이내 법인기업으로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 보증비율 : 전액보증(100%)으로 운용
- 보증료 : 0.5% 고정료를 적용
 - * 단, 옵션행사기한(5년) 도과 후에는 일반 보증료를 적용
- 옵션행사가격 결정 : 추정매출액에 의한 예상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행사가격을 결정
- 옵션행사시기 및 방법 : 보증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간 옵션행사 가능
- 투자전환시 발행되는 신주 : 전환상환우선주

신청·접수

'16.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 1544-1120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 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 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투자옵션계약 체결)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투자옵션계약 체결 및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투자옵션 행사여부 심사 및 신주발행	영업점/투자팀	보증지원 기업중 투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진행후, 승인된 기업에 대해 보증해지 및 신주발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 투자팀 : 02-3215-5960~8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4-21

경영개선지원제도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중 기보의 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신규보증지원, 보증 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술·경영컨설팅,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건

* '15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168건

지원 대상 기술보증기금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관찰대상기업” 및 “중점 관리기업”, 중소기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부진기업”, 보증사고관리 규정에 의한 “사고유보기업” 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사고발생기업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을 받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 내용

- 신규보증지원, 보증 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술·경영 컨설팅,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신규보증지원	• 신규보증은 일반 신규보증지원절차에 의하여 지원
보증재조정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료 등을 조정하여 경영개선 유도
기업지도	• 경영합리화 유도, 생산성 향상 또는 기술개발 지원
M&A 또는 기술거래중개	•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성장한계 극복,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분 야	내 용
기술·경영컨설팅	•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및 생존력 강화 도모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기타경영·기술지원	•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의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신청·접수

'16. 1. 4 ~ 12. 30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보증관할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경영정상화계획서

- 신청양식은 보증관할 영업점 문의, 신규보증 신청 시에는 보증신청서류 별도 접수

처리 절차**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영개선지원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경영개선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설명

진단컨설팅 : 경험이 풍부한 기술보증기금 컨설턴트가 실시하는 컨설팅 업무로, 경영애로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진단

4-22

재기지원보증제도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성실실패자의 재도전·재창업 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90개 업체

* '15년 11월 현재 지원현황 : 121개 업체, 155억원

지원 대상

실패한 기업이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으로 구분하여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

구 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주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시행시기	'12. 4월	'10. 11월
채무자분류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단독채무자
대상기업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운영하는 개인 기업, 법인기업	1) 실패한 기업 2) 재도전기업주*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신복위 원금감면(75%) + 신규자금	희생지원보증 + 신규자금

* 실패한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과점주주이사, 무한책임사원

신청·접수

'16. 1. 4 ~ 12. 30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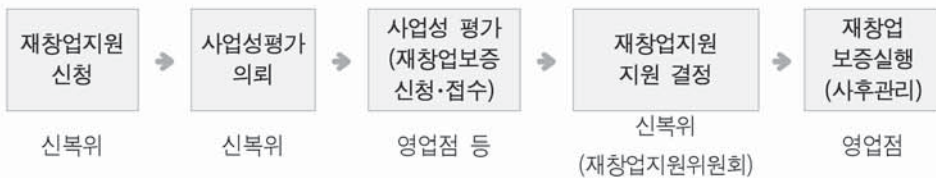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신용회복위원회
-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관할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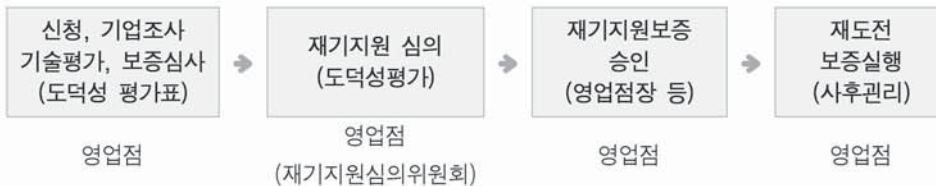
보증신청서류, 사업재기계획서, 도덕성평가표 등(상세내용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 재창업재기지원보증(신용회복위원회)



-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기술보증기금)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회생관리센터(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199
5-2.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202
5-3.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205
5-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208
5-5. 협동조합 특례보증	211
5-6. 나들가게 특례보증	213
5-7.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215
5-8. 햇살론 신용보증	218

5-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20.3조원으로 운용(햇살론 근로자보증 3.6조원 포함)

(단위 : 건/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1월
보증공급	건 수	256,434	275,845	350,944	375,150	422,585
	금 액	60,801	63,581	77,859	85,057	100,457
보증잔액	건 수	835,802	829,578	837,659	756,842	830,608
	금 액	136,088	135,148	142,719	144,501	164,1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특례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16.1.1 ~ '16.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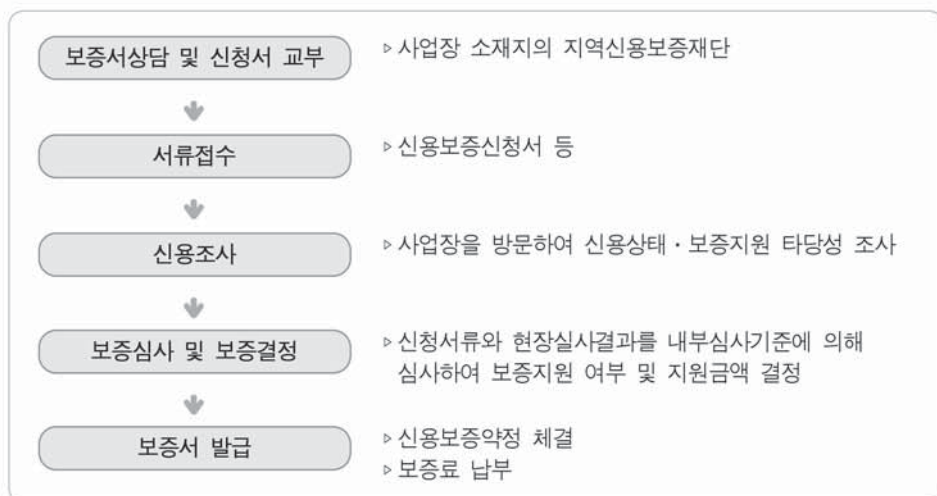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2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 창업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신용보증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0억원

- * '15년 11월말 기준 : 16건 / 6억원 지원
- * 대출실행 금융회사 :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지원 대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요건

- ✓ 대표자가 아래의 창업교육기관 교육을 수료한 기업
 -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진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선도대학 과정 중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정, 창업맞춤형 사업화 과정
- ✓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상 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업력 7년 초과 및 신용평가시스템상 “CCC” 등급 미만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제조업 2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6.1.1 ~ '16.3.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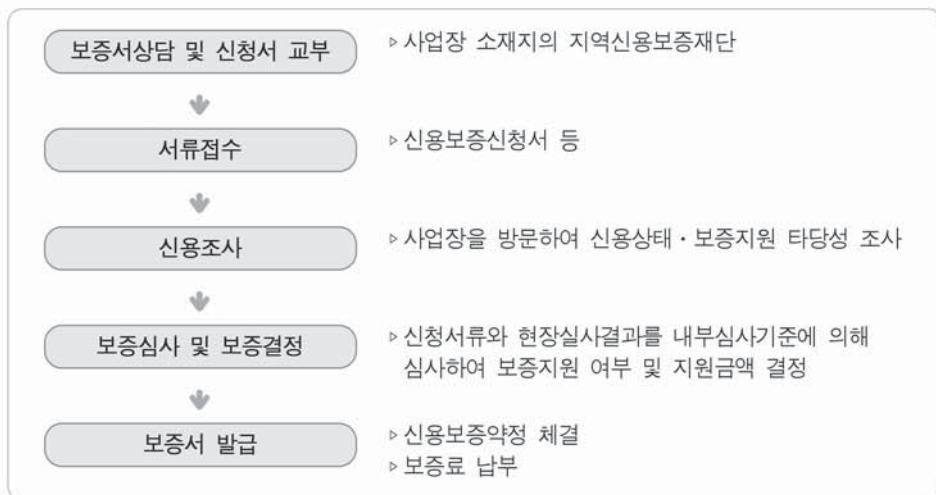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3

시니어창업 특례보증

| 중장년층 창업 지원 신용보증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창업을 촉진·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00억원

- * '15년 11월말 : 1,340건/369억원 지원
- * 대출실행 금융회사 : 기업은행

지원 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업력 3년 초과 및 대표자가 연령 만 40세 미만의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6.1.1 ~ '16.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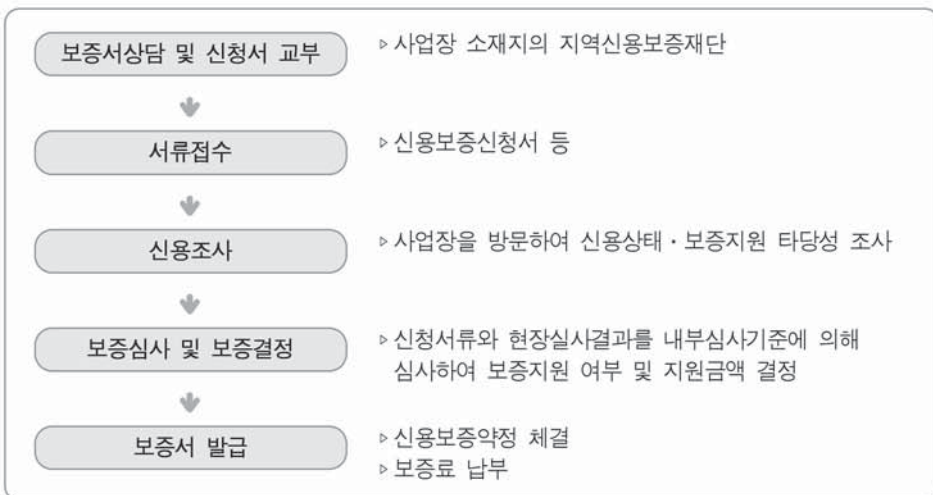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한명은 만 40세 이상에 해당되나, 다른 대표이사는 만 40세 미만인 경우 본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 A** 만 40세 이상인 공동대표자가 실제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른 대표이사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도 시니어창업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5-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신용보증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6년 9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 '15년 11월말 : 59건/27억원 지원
- * 대출실행 금융회사 : 기업은행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 ✓ 비영리법인·조합·단체,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
-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
- ✓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
- ✓ (상법상 회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6.1.1 ~ '16.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금융기관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사회적가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심사 평가시 사회적가치 충실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무엇인가요?

A 사회적가치 충실도는 해당 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확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구분됩니다.

* 계량지표 항목 : 취약계층 고용율, 최근 1년간 근로자 평균급여 등

* 비계량지표 항목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역량, 이익의 사회적 목적 이용 정도 등

5-5

협동조합 특례보증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신용보증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6년 9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15년 11월말 : 109건/23억원 지원

지원 대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6.1.1 ~ '16.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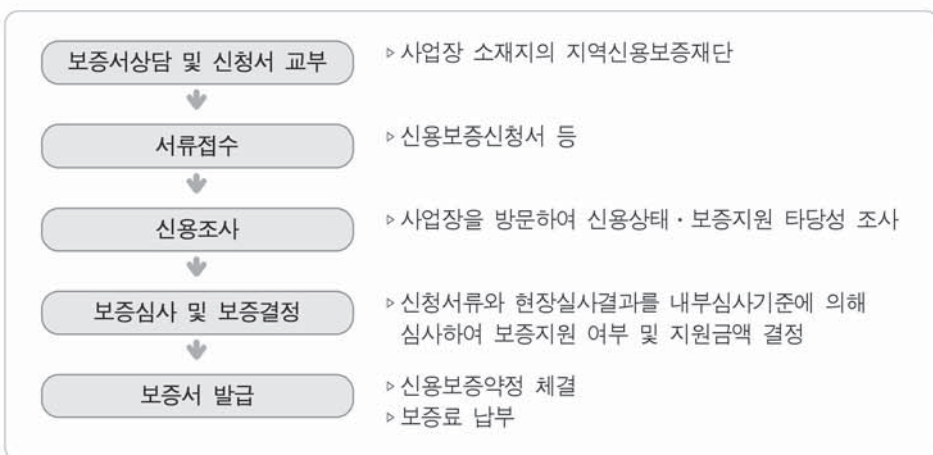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6

나들가게 특례보증

| 나들가게 지원 신용보증

SSM 진출 확대로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들가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00억원

* '15년 11월말 : 3,020건/964억원 지원

지원 대상 신용등급에 불문하고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스마트샵)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나들가게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6.1.1 ~ '16.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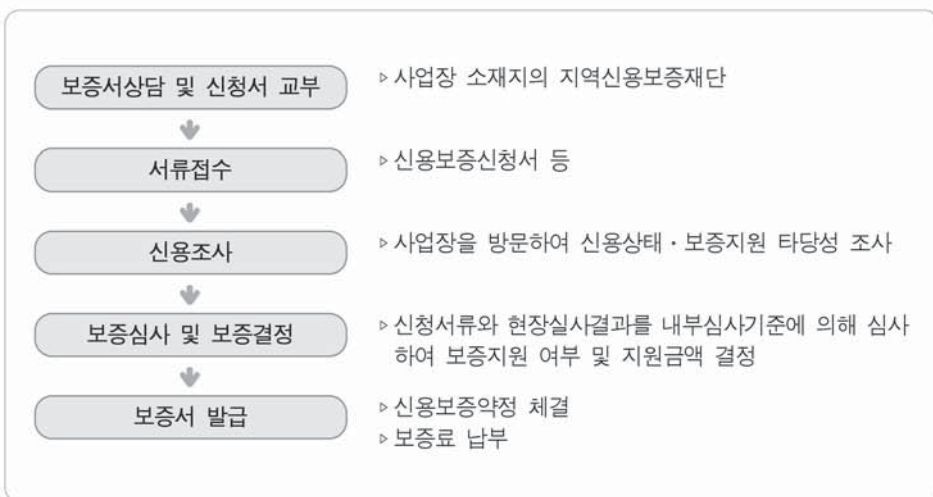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텍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7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성실실패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억원

* '15년 11월말 : 6건/1억원 지원

지원 대상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 재도전 기업주로서,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지원 결정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16.1.1 ~ '16.12.31

- 사업장 소재지 지역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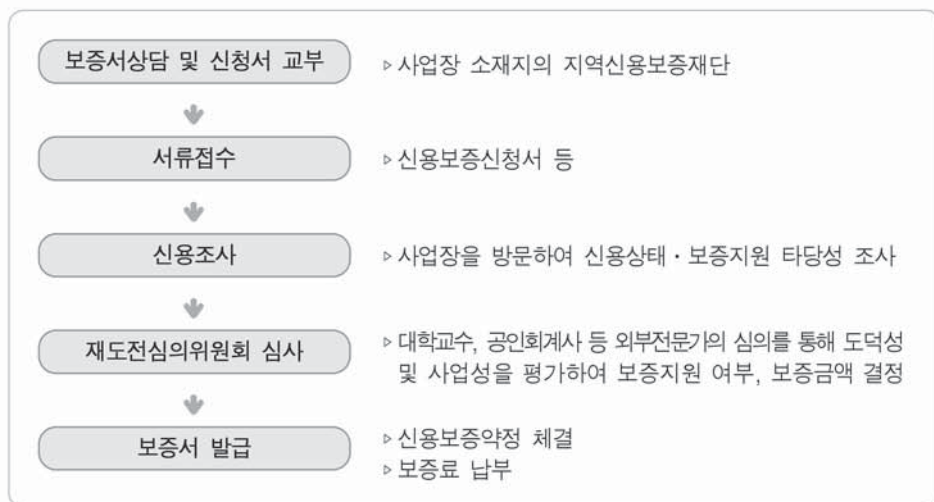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재기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A 성실실패자 재도전 심의 평가는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기업의 사업성(제품경쟁력, 영업전략의 확보 및 미래성장성 등), 도덕성(채무상환 노력, 체납사실, 법규위반 등), 경영의지 및 경영능력(대표자의 경영의지, 경영능력 및 자금조달·운용계획), 실현가능성(사업재기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5-8

햇살론 신용보증

|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 채무보증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에게 담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영세기업 및 근로자가 서민금융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0조원 ('10.7월부터 소진시까지)

* '15년 11월말 기준 7조 6,184억원 지원(누계)

(단위 : 건/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11월			'10.7월~15.11월(누계)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합 계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근로자)
보증 공급	건수	210,330	32,274	178,056	224,718	31,628	193,090	934,596	199,179	735,417
	금액	17,517	3,131	14,386	18,443	3,063	15,380	76,184	18,816	57,368
보증 잔액	건수	467,952	103,913	364,039	536,004	94,864	441,140	536,004	94,864	441,140
	금액	30,339	8,304	22,035	32,771	6,772	25,999	32,771	6,772	25,999

지원 대상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포함) 및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 분		햇살론					
		사업자		근로자			
지원목표		10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기관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사고관리 (채권보전조치) 일체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3개월 이상 근로종인 근로소득자				
	공통요건	▷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저소득자(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상환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12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긴급생계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백만원	1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소득금액 확인서류 ▪ 사업사실 확인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재직 및 근로소득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거래내역서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가입시)		

심사·평가내용

- 금융기관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사실 확인서류, 임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서류,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히 이행),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처리 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개 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 입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보증심사 대출	개 인 (비사업자) →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보증심사 및 한도사정 후 대출실행 * 부정대출예방시스템에서 사전 조회	서민금융사 (위탁보증)
	저신용무등록 사업자 → - 접수서류 후 지역신보에 송부 *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보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정의는?

A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라 함은 소득기간 1년(12개월)에 대한 소득금액*을 말하며,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소득금액”이라 함은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을 말합니다.

Q 신용등급은 어느 신용정보회사를 기준으로 적용 하는지?

A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조회는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취급금융기관이 대출상당시 이용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중 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합니다.

〈참고〉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강원 www.gwsinbo.or.kr	본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033-260-0001 (033-251-1356)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745-3295 (033-745-3297)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033-644-1378 (033-644-1351)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 033-638-9780 (033-638-9783)
	동해지점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50 033-534-1411 (033-534-1441)
	태백지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37 033-554-0630 (033-554-0633)
	철원센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71 033-452-8400 (033-452-8900)
	홍천센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9-1 033-433-2600 (033-433-2602)
경기 www.gcgf.or.kr	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577-5900 (031-259-7777)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031-888-5454 (031-888-5466)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8번길 7 031-826-9092 (031-826-9086)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031-709-7733 (031-703-9944)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032-328-7130 (032-328-7409)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031-968-7744 (031-968-0020)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031-482-8401 (031-482-8412)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031-653-8555 (031-653-8556)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031-387-3525 (031-387-3678)
	남양주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031-559-8160 (031-559-8166)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031-635-2514 (031-635-8796)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031-366-8070 (031-366-8070)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031-285-8681 (031-285-8610)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031-434-8797 (031-434-8798)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51 031-997-1278 (031-997-1283)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경기 www.gcgf.or.kr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031-543-1737 (031-543-1739)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 031-942-7521 (031-942-7568)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031-767-7100 (031-767-4100)
	양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2 031-850-3800 (031-844-7956)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031-613-8777 (031-613-8144)
	군포출장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5-2 031-391-7728 (031-319-1230)
	가평출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76-1 031-581-7703 (070-7614-2317)
	연천출장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5-12 031-832-7708 (070-7614-2318)
	의왕출장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 031-421-7739 (070-7614-2312)
	광명출장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84 02-2060-7768 (070-7614-2313)
	안성출장소	경기도 안성시 동본동 40 031-672-7243 (070-7614-2314)
	여주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2 031-883-7754 (070-7614-2315)
	동두천출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3동 593-2 031-858-7728 (070-7614-2316)
	하남출장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2 031-791-7780 (070-7614-2319)
경남 www.gnsinbo.or.kr	본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055-212-1250 (055-212-1276)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055-212-1250 (055-212-1275)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055-743-5333 (055-743-5888)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38 055-364-2181 (055-364-2185)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055-246-1788 (055-246-7260)
	거제지점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055-534-5800 (055-634-5805)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가락로 105 055-338-2390 (055-338-2396)
	사천지점	경남 사천시 수남길 8 055-835-7480 (055-835-7484)
	통영지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055-902-8300 (055-902-8306)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경북 www.gbsinbo.co.kr	본점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054-474-7100 (054-474-7104)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054-283-2730 (054-283-2704)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원효로 15	063-811-0790 (053-811-0793)
	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남문로 20	054-854-3300 (054-854-334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중앙로 32	054-777-0140 (054-777-0139)
	영주지점	경북 영주시 번영로 149	054-631-8300 (054-631-8302)
	김천지점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054-433-1300 (054-434-1310)
	영천지점	경북 영천시 시장로 45	054-336-6800 (054-336-6900)
	문경지점	경북 문경시 중앙로 141	054-556-7400 (054-556-7404)
	상주지점	경북 상주시 상산로 260	054-531-3500 (054-531-3504)
광주 www.kjsinbo.co.kr	본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062-950-0011 (062-950-0063)
	동구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0	062-236-0045 (062-236-2366)
	서구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14	062-362-0091 (062-363-0094)
	북구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41	062-576-0091 (062-576-3535)
	남구지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3	062-654-8055 (062-654-8059)
대구 www.ttg.co.kr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053-560-6300 (053-554-9905)
	죽전지점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053-560-6300 (053-554-9905)
	유통단지지점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 90	053-601-5255 (053-601-5176)
	범어동지점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053-744-6500 (053-744-9077)
	월배지점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09	053-639-4343 (053-639-4146)
	동촌지점	대구시 동구 안심로 405	053-982-7500 (053-982-7515)
대전 www.sinbo.or.kr	본점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042-380-3800 (042-380-3898)
	동부지점	대전시 동구 계족로 516	042-380-3805 (042-345-0088)
	서부지점	대전시 서구 도산로 87	042-380-3806 (042-368-3860)
	북부지점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042-380-3808 (042-368-3880)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부산 www.busansinbo.or.kr	본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051-860-6600 (051-816-4551)
	서부산지점	부산시 사하구 낙동강로 1424 051-860-6730 (051-831-1180)
	동부산지점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07 051-860-6750 (051-755-6030)
	북부산지점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23 051-860-6700 (051-316-6788)
	중부산지점	부산시 중구 구덕로 87-1 051-860-6800 (051-242-6878)
	남부산지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4 051-860-6780 (051-611-8944)
	부산진지점	부산시 동구 범일로 92 051-860-6880 (051-714-2780)
서울 www.seoulshinbo.co.kr	본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577-6119 (02-3278-8114)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577-6119 (02-3278-8136)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1577-6119 (02-3278-8136)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2로22길 37 1577-6119 (02-3278-8140)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1577-6119 (02-3278-8172)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1577-6119 (02-3278-8146)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577-6119 (02-3278-8134)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1577-6119 (02-3278-8168)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1577-6119 (02-3278-8174)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216 1577-6119 (02-3278-8170)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1577-6119 (02-3278-8144)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1577-6119 (02-3278-8140)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1577-6119 (02-3278-8148)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1577-6119 (02-3278-8164)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 1577-6119 (02-3278-8176)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1577-6119 (02-3278-8138)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1577-6119 (02-3278-8191)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1577-6119 (02-3278-8188)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울산 www.ulsanshinbo.co.kr	본점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052-289-2300 (053-289-8970)
	남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052-283-0101 (052-266-7994)
	동울산지점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052-281-8100 (052-281-8105)
	서울산지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052-281-8101 (052-285-8105)
인천 www.icsinbo.or.kr	본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1577-3790 (032-260-1570)
	부평지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032-508-1954 (032-508-1960)
	남부지점	인천시 남구 경인로 341	032-889-3611 (032-889-3615)
	서인천지점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032-569-0321 (032-569-0325)
	계양지점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71	032-542-3911 (032-542-3918)
	남동지점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260-1500 (032-260-1571)
	중부지점	인천시 동구 송림로 98	032-766-8090 (032-766-8094)
전남 www.jnsinbo.or.kr	본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061-729-0600 (061-729-0608)
	목포지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5-0745 (061-285-0747)
	담양지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66	061-729-0550 (061-729-0559)
	보성지점	전남 보성군 보정읍 현충로 91	061-729-0570 (061-729-0579)
	나주지점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061-729-0540 (061-374-0746)
	여수지점	전남 여수시 광무동 좌수영로 55	061-807-3601 (061-807-3613)
	해남지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99	061-802-2300 (061-802-2305)
	영광지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	061-729-0590 (061-729-0599)
	광양지점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061-794-3860 (061-794-3865)
	완도지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24-1	061-555-8800 (061-555-8805)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북 www.jbcredit.co.kr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063-230-3333 (062-230-3377)
	군산지점	전북 군산시 조촌안3길 20	063-452-0341 (063-452-0355)
	정읍지점	전북 정읍시 중앙1길 76	063-533-6411 (063-533-6416)
	남원지점	전북 남원시 광한북로 63	063-633-7612 (063-633-7618)
제주 www.jejusinbo.co.kr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064-758-5740 (064-758-5748)
	서귀포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064-733-8133 (064-733-8136)
충남 www.cnsinbo.co.kr	본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41-9830)
	공주지점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5	041-858-4701 (041-858-4704)
	서산지점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	041-668-8871 (041-668-8879)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622-9831 (041-622-9830)
	보령지점	충남 보령시 공촌동 터미널길 29	041-933-9831 (041-933-9879)
	논산지점	충남 논산시 중앙로 422	041-733-7161 (041-733-7165)
충북 www.cbsinbo.or.kr	본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043-249-5700 (043-237-0362)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00	043-249-5760 (043-856-9064)
	남부지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043-249-5780 (043-733-9714)
	제천지점	충북 제천시 풍양로 92	043-249-5790 (043-651-910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3층,14층,15층 (우)35220

전 화 : (042) 480-4201 ~ 2 / 팩 스 : (042) 480-4007, 4008

홈페이지 : www.koreg.or.kr

햇살론안내 : www.sunshineloan.or.kr

대표전화 : 1588-7365



제6장 기업은행

6-1. 201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228
6-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230
6-3. IP사업화자금대출	231
6-4. IBK창조기업대출	233
6-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235
6-6. 기술형창업기업대출	237
6-7. IBK수출준비자금대출	239
6-8.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240
6-9.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242
6-10. IBK문화콘텐츠대출	243
6-11.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245
6-12. IBK시설투자대출	246
6-13. 토지분양협약대출	248

6-1

2015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 상품

구 분	주요 대출상품	상품 개요	비 고
우 수 기 술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기보의 기술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우수 IP보유기업에 자금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창조기업대출	· R&D과제 성공수행 기업 및 성장·기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또는 일반기술평가등급(기업은행 자체평가)에 따라 금리 상한선을 차등 운용하여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기술형창업기업 대출	· 한국은행으로부터 배정된 각 은행별 사전한도 범위 내에서 기술형창업기업에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자금지원	
수 출 입 지 원	IBK수출준비 자금대출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는 없으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 및 당행의 추천을 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자금지원	
	수출기업육성 자금대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한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구 분	주요 대출상품	대출 용도	비 고
문화콘텐츠	IBK문화콘텐츠대출	·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시설투자	IBK시설투자대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토지분양협약대출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고, 총 분양금액 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기업에 자금지원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6-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1) 기술보증기금의「기술사업평가등급」BB등급 이상
- (2) 기술보증기금의「IP 가치평가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1억원 이상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포함)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동일인당 최고 100억원 이내

대출 기간 5년 이내 (수시로대출의 경우 1년 이내)

담보 조건 보증특약이 부여된 90%이상 부분신용보증서

우대 사항 기술평가료 지원 : 기업 당, 기술평가료 500만원(기보), 150만원 (신보) 은행 지원(부가세포함)

문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6-3

IP사업화자금대출

|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1,000억원

지원 대상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력 수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기업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력 수준) 기업은행 자체 기술평가「우수」이상 판정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한도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로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 조건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6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 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650만원) 지원
- 최대 연 1.5%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6-4

IBK창조기업대출

|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성장잠재력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자금관리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6,000억원

지원 대상

- ◆ IBK창조기업 : 기업은행의 'IBK창조기업' 선정기업
- ◆ 성공기업 : 전문평가기관*이 추천한 R&D성공기업 또는 보증기관의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 ◆ 일반기업 : 기업은행에서 정한 '기술력 인정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합회

** 신보의 가치평가등급 FV1~2등급(FV1~9등급 中) 혹은 기보의 기술인증등급 BBB이상 또는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기술신용정보 BBB(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BB+, NICE평가정보의 경우 B+)이상인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한도

구 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창조기업	동일인당 15억원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기업	동일인당 10억원	동일인당 30억원
일반기업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우대 사항

구 분	IBK창조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금리감면	최대 연 1.5%p 이내	최대 연 0.5%p 이내	
소요운전자금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되거나 금차 기술사업화로 매출신장 예상 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소요시설자금	100% 범위 내 운용	90% 범위 내 운용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6-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우수기술 보유창업기업에 무보증·무담보로 대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소요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합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동일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대상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은행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으로 다음 기술등급 및 기술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	기술등급	기술신용등급
한국기업데이터	T7(보통)이상	B-이상
기술보증기금	T6(보통)이상	B 이상
NICE평가정보	T6(보통)이상	B-이상
기업은행	보통 이상	

■ 창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일

- ① 법인기업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②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7년 이상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기업
- ✓ 휴·폐업 또는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운전자금

담보 조건 해당사항 없음 (무보증·무담보 조건)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6-6

기술형창업기업대출

| 우수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을 별도의 특화상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보유기업
- ▶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
- ▶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서 보유기업
- ▶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 ▶ 신제품(NEP)인증서 보유기업, 이노비즈(Inno-biz)기업
- ▶ 연구개발특구소재기업 또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지식재산 보증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
- ✓ 휴·폐업 또는 연체·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운전자금

대출 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용 (일시상환방식)

- 기한연장 시 창업 후 7년 이내 및 인증서·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기한연장 가능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한국은행 기술형창업기업¹⁾의 범위

	확인서·등록증	확인서 등 발급기관	근거 법률 등
<공통부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특허증	특허청	특허법
	실용신안증	특허청	실용신안법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신기술인증서	정부 부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²⁾
	신제품인증서	정부 부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평가인증서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평가인증기관	기술평가인증기관과 금융기관의 협약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정부 부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R&D기반 창업기업	R&D 성공기술 확인서	정부 부처	각종 정부 고시 등
	연구개발특구 소재 증빙서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인가 증빙서류	정부 부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술력 평가 등이 심사항목으로 포함된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관 규정 등
	기술신용평가서	기술신용평가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연구개발 우수기업	연구개발비 ³⁾ 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다만, 서비스업 ⁴⁾ 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0.5%를 초과하는 기업) ⁵⁾		
<추가부문>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정			

* 주1) 공통요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주2) 전력기술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 주3)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전년 대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제자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 주4)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 G~N, P~S 업종

* 주5) 기업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6-7

IBK수출준비자금대출

|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는 없으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 및 당행의 추천을 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가 없으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발급받은 중소·중견기업

- * 1. 추천기업 : 최근 1년 이내 기보 추천서를 받은 기업
- * 2. 평가서보유기업 : 최근 1년 이내 기보 기술평가서(B등급 이상)를 받은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3년 이내 (2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 기보 기술평가서(B등급 이상) 보유기업 : 최대 5억원 · 기보 추천기업(기술평가서 B등급 미만 포함) : 최대 2억원
채권보전	보험공사의 90% 이상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6-8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수출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 ◆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이상인 기업
- ◆ '수출강소기업'으로 본부에서 선정한 기업
- ◆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및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 ◆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기업6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 관세청으로부터 'AEO공인'을 획득한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 또는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대출 한도

○ 운전자금

수출실적	대출한도
1백만불 이상 ~ 3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5% ×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
3백만불 이상 ~ 5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0% ×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또는 7억원 중 큰 금액
5백만불 이상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시설자금 : 소요 시설자금 범위 내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6-9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기업), 연체종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주의 거래처 및 관리거래처)은 여신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6-10

IBK문화콘텐츠대출

|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 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보증한도 소진 시 또는 대위변제로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다만, 협약 후 3년 이내에는 적용제외)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0%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3년간 0.2%p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윤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0.2%p 우대

3. IBK문화콘텐츠 담보부대출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부동산 및 기타담보 (신용보증서 제외)를 제공한 기업

지원 분야 윤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윤전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대출 한도 여신가능액×110% 이내. 다만,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취급 가능 (최대 130%)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11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 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갭(gap) 해소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1년 (기간연장시 최대 8년 이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담보 조건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 방법

일시상환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상환

문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12

IBK시설투자대출

|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 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 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6-13

토지분양협약대출

|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 토지의 피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 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 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개인기업(예비창업자)

대출 한도

별도 한도제한 없음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 가계 : 가계일반자금대출 (예비창업자에 한함)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단, 외화대출 : 8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 가계 : 5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신용등급 BBB+이상 : 90%)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 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 사항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을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제 **7** 장
한국산업은행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기업금융, 국제·투자금융 및 컨설팅서비스 지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회사채 주선 및 인수,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 기업금융 지원

- ▷ 기업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신축, 매입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자금
- ▷ 원재료 구입 등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 ▷ 재정·기금 및 보증
- ▷ 수출입금융(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 국제·투자금융 지원

-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국제금융 주선
-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M&A 업무,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PE업무
- ▷ 파생금융상품,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등

○ 컨설팅서비스 지원

- ▷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경영진단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등

대출 조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최장 10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운영자금 : 3년 이내(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단,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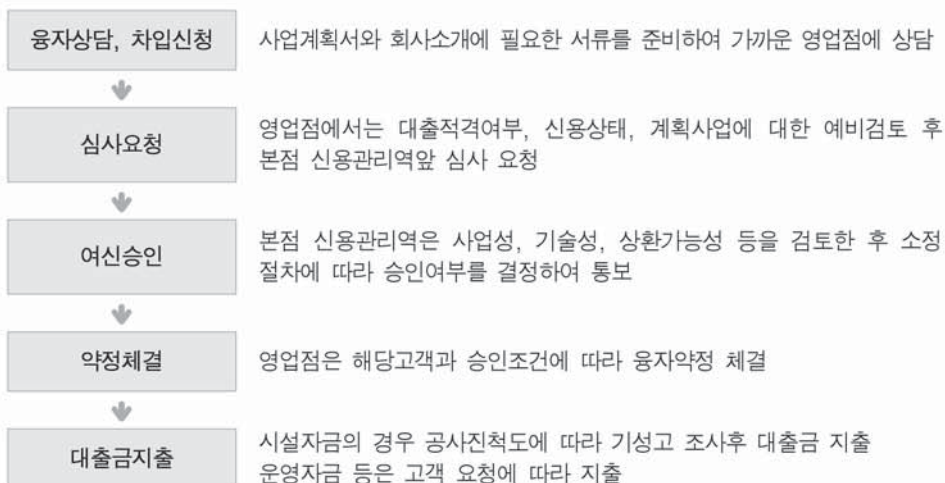
✓ 대출금리

- * 수시 고시되는 자금별, 통화별,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금리 결정
- *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통화

- * 원화, 외화(US\$, ¥, EUR) 중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 * 중소기업 대출은 고객 희망에 따른 통화전환 가능(일정 수수료 부담)

여신 거래 절차



문의처

- 기업금융 지원 : 각 영업점
- 국제·투자금융 지원
 -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발행시장실
 - ▷ 국제금융 주선 : 발행시장실
 -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 발행시장실
 - ▷ M&A 업무 : M&A실
 - ▷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 벤처금융실
 - ▷ Private Equity 업무 : 사모펀드1실
 - ▷ 파생금융상품 : 금융공학실
 -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 금융공학실
- 컨설팅서비스 지원 : 컨설팅실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참고]

한국산업은행 주요 상품안내

I. 기업금융상품

1. 시설자금 상품

□ 일반시설자금

용도	▶ 일반시설 투자 • 영업용 토지 및 건물 구입자금 •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 기존시설의 개보수 자금 • 타금융기관 상환용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 특수용도 시설자금 • 해외 직접투자자금 • 공장(사업장) 인수자금(경락자금 포함) •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인수자금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형식 및 기간	▶ 일반대출 : 최장 10년 이내 ▶ 사모사채인수 : 최장 5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스프레드)	▶ 기준금리 • 원화 : CD 또는 산금채유통수익률 • U\$, ¥, Euro : LIBOR

2. 운영자금 상품

□ 일반운영자금

대출대상	▶ 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기간	▶ 3년 이내(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 • 단,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한도	▶ 1회전 소요자금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타금융기관 운영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 단, B°이상 기업은 (추정매출액-감가상각비)의 50% 적용가능

□ 단기운영자금

구 분	약정기간 (개별대출기간)	대출대상
당좌대월	회전 : 2년 이내 일시 : 90일 이내	▷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당좌예금 거래기업
어음할인	2년 이내 (대기업 180일, 중소기업 1년이내)	▷ 실제 상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약속어음 또는 인수필 환어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 중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고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판매기업(협력기업)
통장식외화 한도대출	1년 또는 2년	▷ 수출입거래 등 외화실수요가 있는 신용등급 B ⁺ 이상인 기업
미래채권 담보대출	2년이내 (180일이내)	▷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물품납품 이전에 생 산자금을 지원
다모아 플러스대출	2년 이내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KDBdream 기업 Account (연결 계좌)에 수시 인출·상환이 가능한 원화 한도대출을 연계
단기한도대출	2년 이내 (1,2,3,4,5,6개월)	▷ 단기간(6개월 내에서 월 단위)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터넷을 통한 신규 및 연장 가능)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구 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래채권담보대출
차 주	협력기업	좌동
지원자금	납품자금	생산자금
용자시기	납품완료시	발주시
용자금액	매출채권 범위내	발주금액의 80%이내
담 보	확정매출채권	신보서(장래 매출채권)

3. 특별자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방법	금리우대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6개 전략분야 해당 기업 - 성장동력확충, 서비스산업지원, 경쟁력 강화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산업 지원, 해외직접투자지원	시설자금 대출	원화△0.3%P, 외화△0.15%P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미래선도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투자	시설 원화△0.6%P, 외화△0.3%P, 운영△0.3%P
중소기업 우대운영자금	신용등급 BB-이상, 고용창출, 녹색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	원화△0.3%P, 외화△0.25%P
중견기업 우대운영자금	신용등급 BB-이상 중견기업	운영자금 대출	원화△0.2%P, 외화△0.15%P
리더스론	신용등급 BB+이상 중견·중소기업	대출	시설△0.5%P, 운영△0.3%P
동반성장대출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대출	대기업 예치금 이자 수익분을 감안하여 금리감면(대기업별 협약사항에 따름)
공장부지분양 대금특별대출	공공기관 등이 분양하는 산업·물류단지의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기업	시설자금 대출	원가수준 금리적용

4. 정책성 특별자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방법	비고
기술평가 (TCB)기반 기술금융 프로그램	- 기술력 우수한 벤처·중소기업 - TCB(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1~T4' ('양호'이상) 보유기업	대출 및 투자	신용지원
설비 투자 펀드	2차 -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소요자금 안전 -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및 안전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1.0%P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 계열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 - SOC사업 등 대형투자프로젝트 - 신성장 유망분야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전통 주력산업	주식·주식관련채 인수 원칙 (단, 투융자 복합 금융 및 회사채, 대출 지원 가능)	건별·업체별 지원한도 제한 없음

5. 재정·기금 상품

기 금 명	차 입 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 원 부 문
재 정 자 금	기획재정부	10~20 (5)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복합화물터미널건설,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10 (1~5)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경영안전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12 (2~5)	관광숙박시설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1M~10 1~10	시설재수입, 수입재구매, 해외수주지원 해외기업M&A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5(2)	응용기술개발지원(일반,기술담보)
정보통신기반조성자금	중소기업은행	5(2)	IT설비투자, 초고속공중망구축 등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단체	3~8 (1~3)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경영안전지원 등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은행	8(3)	자본재개발, 첨단기술제품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한국에너지공단	3~15 (1~5)	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석유사업기금	한국석유공사	15(5)	도시가스배관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3)	오염방지시설설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산업재해예방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3)	산업재해 예방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10 (2~3)	재활용산업,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 유통판매지원
가스안전관리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4~8 (1~3)	도시가스시설개선, 가스유통구조 개선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10(5)	직원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	천연가스공급시설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	8~35 (3~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기 금 명	차 입 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 원 부 문
축산발전기금	농협중앙회축산 발전기금사무국	1~10 (1~5)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방위산업육성기금	방위사업청	3~7(2)	방산시설의 도입, 설치 비축용원자재의 확보 등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1)	장애인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폐광지역대체 산업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10(5)	시설 및 운영
환경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7 (2~3)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8(3)	특정물질(대체물질)의 제조시설자금

6. 보증 상품

채무보증	▶ 채무보증 ▪ 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KDB가 그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사채보증 ▪ 고객이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차관지급보증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KDB가 외국대주(또는 그 지정인) 앞 대외외화표시 지급보증
지급보증	▶ 지급보증 ▪ 원화 관련 지급보증 ▶ 기타외화지급보증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화표시 지급보증 등 채무보증 및 신용장개설을 제외한 모든 외화지급보증
해외건설 보증 (이행성보증)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 입찰보증(Bid Bond)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보증료율 (대여료율)	▶ 기본보증료율 + 영업마진(고객신용도, 보증상품 등에 따라 차등적용)

7. 수출입금융 상품

수입 신용장 개설	▷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물품 결제를 진행하는 고객 수요에 따라 수입신용장 발행 ▪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개설 ▪ 특수신용장 개설 · 미국내 농축수산물 수출제도를 활용한 분할지급신용장(최장18개월이내) (GSM-102 프로그램) : 미국 생산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미국농무성 (USDA) 연계은행이 결제대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무신용장 수입금융	▷ 사후송금 결제방식으로 수출상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및 B/L사본, 수입 신고필증 등을 제시한 후 1년 이내 외화 수입대금 결제용 자금대출 ▪ 승인가능통화 : US\$, ¥, € ▪ 대출기간 : 최장 1년(360일기준) 이내로 함(만기 원리금일시상환)
수출 환어음 매입	▷ 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 조건 등)에 따라 선적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매입(추심) ▪ 수출(내국신용장 포함)환어음 매입(추심) ▷ 수출신용장 관련 서비스 ▪ 수출신용장 통지, 양도, 확인
무역금융	▷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D/P, D/A조건 등)에 의해 물품, 용역 등을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 앞 선적전 무역금융(내국신용장 제도, 무역어음 대출) 지원
위안화 무역금융	▷ 청산은행 등을 통한 중국과의 무역거래자금(일부 자본거래 포함) 송금 및 수출입 거래자금 지원
KDB 장점	▷ KDB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선호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임 ▪ 양질의 Credit Line과 Global Network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기한부신용장 개설 지원 ▷ 저리의 무역금융 자금 확보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합한 대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거래 우수고객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및 금리 우대 ▪ Nego 및 결제대전의 F/X Deal 연계 또는 환율우대 서비스 제공 ▪ 수출입 통합한도 운용을 통해 수입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출 거래 및 수출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입거래 가능 ▪ 당일 접수된 신용장개설 신청건은 당일중 대외 전문발송

[문의 : 무역금융실]

II. 국제·투자금융상품

1.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기업의 신인도 제고
 - 신용평가회사의 공인된 평가등급이 필요한 공모회사채 발행은 발행자채로 금융 시장에서 고객위상이 올라가게 됨.

- 거액의 장기자금을 시장금리로 조달
 -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발행은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
 - 자금의 용도와 만기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등의 자금용도와 만기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최적의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발행이 가능
 - 시장여건을 감안, 다양한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행구조의 선택이 가능함
- 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발행절차	비고	담당	시기
대표주관계약	대표주관사선정, 인수단 구성 협의	고객/당행	D-21
Due Diligence	기업실사 진행	당행	D-18~13
이사회 결의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통보	고객	D-8 이전
최초 인수계약서 체결 및 사채모집위탁계약 체결	주관사-발행사간 계약	고객/인수단	D-8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금융감독원 신고	고객	D-8
수요예측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	당행	D-5~4
정정신고서 제출 및 최종인수 계약 체결 (수요예측 결과 반영)	변경 내용 반영	고객/당행	D-4
청약, 납입	채권 발행 및 대금 납입	인수단	D-day

2. 해외공모외화채권 주선 및 인수

- 해외공모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장기자금 조달 용이
 - 해외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형태로 발행(국내채권 : 만기 3년)
- 투자자 Base의 확대
 - 한정된 국내채권 투자자들에 비해 국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자금 조달 가능
- 대규모 자금 조달이 원활
 -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발행의 기재금액은 대부분 1억불 이상

○ 국내 신용등급 향상에 긍정적 영향

- 국제채권발행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 향상, 자금력 확충, 차입원 다각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효과 유발 가능

□ 해외공모외화채권 발행 절차

단계	절차	수행작업	업무파트
1단계	신용등급 획득	회사재무 추정자료 작성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자료수집 및 Presentation 작성	
		신용평가사와 면담	
		경영진 면담	
		신용평가사 자체 분석	
		추가자료, 보완설명 등 사후 작업	
		발행사 신용등급 부여	
2단계	실사 및 주요 계약서 작성	주간사와 협의하여 법률고문, 회계법인, Agent 등 선정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정밀실사를 위한 예비 질의서 회사 앞 발송	
		정밀실사 및 기재취지서 작성 개시	
		증권거래소 등록 작업 개시	
		계약서 작성	
		필요 인허가 취득	
3단계	마케팅 및 로드쇼	예비 기재취지서(Red) 인쇄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해외점포(Sales), 조사부(Research)
		리서치 자료 배포	
		로드쇼용 Presentation 등 자료 작성	
		로드쇼 기획 및 일정수립, 투자자 면담 주선	
		로드쇼 진행 중 투자자 면담 (대면 또는 컨퍼런스 콜), Luncheon presentation 등 실시	
		발행계획 공식 발표	
		잠정 기재취지서 (Red Herring) 배포	
4단계	발행가격 결정, 채권 배분 및 결제	예상 금리 Guidance 설정	발행시장실(DCM), 해외점포(Sales), 자금운용실 (Trading Desk)
		주문접수	
		발행자와 가격조건 협의	
		투자자 앞 채권 배분(Allocation)	
		지표채권 수익률 결정 및 발행 가격 결정	
		서명식	
		채권 결제(Billing & Delivery)	
		최종 기재취지서 (Offering Circular) 배포	

[문의 : 발행시장실]

□ 해외직접투자 절차



3. ABS 발행 및 신용공여

개 요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고객)가 보유자산(유동화자산)을 모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후 SPC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는 것임 ▶ 유동화 대상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 및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SPC앞 양도할 수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일반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임
특징 및 효과	▶ 유·무형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상품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 패턴을 다양하게 구성 가능함
발행 조건	▶ ABS발행 만기구조, 금리 및 신용공여약정 기간, 금리 등의 조건은 발행구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동화계획 등록전 고객과 협의 결정

□ ABS 발행 절차

단계	절차	수행작업	시기
1단계	고객의 보유자산 분석/ 타당성 조사	고 객 / 당 행	1개월 정도 소요
2단계	ABS발행구조 설계 (당행,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당행,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 SPC 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 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 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3단계	신용공여 및 수탁업무 계약	당 행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 상환 재원을 보장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수탁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C업무 대행	
4단계	금감원 앞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당 행	
5단계	금감원 앞 자산양도등록 및 발행신고서 제출	당 행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당행)	D-day
6단계	ABS 발행		D+6
7단계	사후관리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문의 : 발행시장실]

4. M&A 업무

M&A 주요업무	▶ M&A 관련 자문 서비스 ▪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작사업 등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M&A 관련 금융주선 서비스 ▪ M&A의 목적과 형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금융주선 서비스 제공
M&A 특 징	▶ 기업의 성장전략 및 구조조정전략으로 활용 ▪ 인수자의 신규시장 진입시간 단축 ▪ 피인수기업의 인력, 기술, Know-How를 단시간 내에 습득 ▪ 한계기업의 퇴출전략 등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기업가치의 평가, 협상전략의 수립, 법률문제의 검토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용역 병행 필요
M&A 절 차	▶ M&A 의뢰 : 절차 및 수수료 협의, 자문계약 체결 ▶ M&A전략의 수립 ▪ 기업의 목표 및 전략의 규명 ▪ 업계 현황분석 및 M&A 타당성 검토 ▪ M&A 전략수립, 세부 실행계획 작성 ▶ 목표기업의 선정 및 접촉과 교섭 ▪ 대상기업 가치 평가, 가능성 타진 ▶ 기본의향서 교환 : 거래조건, 가격결정방법 등 ▶ 정밀실사 ▶ 협상 및 계약체결 ▶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 ▪ 거래대금 수수 및 정부 인허가 등 법적절차 완료 ▪ Post M&A 업무수행 등 사후관리
관련법규	▶ 상법 (주로 회사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관련)

[문의 : M&A실]

5.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투자대상	▶ 신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에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기업 ▶ M&A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 기업 ▶ 프로젝트 형태의 단위 사업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투자방식	▶ 주식투자 • 보통주/우선주 등 ▶ 주식관련채권 • CB, BW, EB 등 ▶ 프로젝트투자 • 특정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기타 • 투자계약증권 형태 • 투자대상별로 최적화된 별도의 구조화 투자상품 제공
투자조건	▶ 투자대상별 개별 합의

[문의 : 벤처금융실]

6. Private Equity 업무

개요	▶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
PEF 특징	▶ Private •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능력이 충분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비공개) 자금 모집 ▶ Equity •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회피 가능, 다양한 펀드 구조 설계가능 ▶ Fund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주로 비상장 기업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가 이루어짐 • 간접투자, 고도의 전문가에 의한 투자로써 성과보수체계 채택 등을 통해 운용자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해소
PEF 업무 Flow	▶ 펀드설립 ▶ 투자대상 발굴 (다양한 Network를 통한 Deal Sourcing, 예비검토 및 투자여부 잠정 결정) ▶ 투자승인 및 실행 (실사(회계, 법률 등), Valuation, Deal Structuring, 투자승인, 계약체결, 실행) ▶ 기업가치 제고 (경영진 선임(최소 1명의 이사), 투자계약서에 의한 사후관리, 기업 가치 제고 컨설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실행) ▶ 투자회수 (M&A, IPO, Secondary Sale, Tag Along, Put Option 등) ▶ 펀드청산 (회수금 분배 및 법인 청산절차 진행)

[문의 : 사모펀드1실]

7. 대고객 외환거래

거래 동기	▶ 수출입 결제자금의 매매 ▶ 해외송금 및 수취자금의 매매 ▶ 해외 직·간접 금융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상환 관련 외환매매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외환의 매매 등
거래 방식	【 현물환거래 Spot Transaction 】 외환매매거래일(deal date)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일 당일 또는 거래일 익영업일 결제거래로 스왑마진(자금비용)을 반영하여 거래 가능 【 선물환거래 Forward Transaction 】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Value Spot)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외환매매 거래 ▶ 거래의 정산 또는 조건 변경 ▪ 선물환 거래를 한 고객은 결제일에 인수도(delivery) 정산하거나, 반대거래를 통해 차액 정산할 수 있음 ▪ 선물환거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그 시점에서 정산 수수하여야 함 【 외환스왑거래 FX Swap Transaction 】 특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만기일에 원래 통화로 재교환하는 외환매매거래(두 통화간 일시적 과부족을 외환 스왑거래를 통해 해소)
이용 안내	▶ 거래시간 ▪ 원/달러, 원화대 기타 통화간 거래 : 09:00 ~ 15:00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24시간 거래 가능 ▶ 거래절차 ▪ 기본거래계약 체결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 선물환거래와 외환스왑거래는 거래실행전 한도승인 절차 필요 ▪ 외환매매거래 실행 : 전화요청 및 거래환율 결정 ▪ 외환거래확인 : 확인서(Confirmation Slip) 교부 및 확인 ▪ 결제일에 거래대금 수수
기타 서비스	▶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환율 적용

[문의 : 금융공학실]

8.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개요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실시간 시장환율 기준으로 시장가 또는 지정가 방식으로 현물환 거래를 하는 시스템 : 거래수수료의 대폭인하로 소액의 외환거래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거래 가능																
이용안내	▶ 거래시간 : 09:00 ~ 14:30 (외환거래시장 영업일) ▶ 거래통화 • 원화대 외화간 거래 : USD/KRW, JPY/KRW, EUR/KRW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USD/JPY, EUR/USD ▶ 거래금액 • USD기준 1,000불이상 100만불 이하 ▶ 거래수수료 (1 U\$당) <table border="1" data-bbox="345 729 805 1124"> <thead> <tr> <th>거래금액 (U\$)</th><th>수수료</th></tr> </thead> <tbody> <tr> <td>1천~1만</td><td>2.1원</td></tr> <tr> <td>1만~5만</td><td>1.8원</td></tr> <tr> <td>5만~10만</td><td>1.4원</td></tr> <tr> <td>10만~20만</td><td>1.1원</td></tr> <tr> <td>20만~30만</td><td>0.7원</td></tr> <tr> <td>30만~50만</td><td>0.5원</td></tr> <tr> <td>50만~100만</td><td>0.4원</td></tr> </tbody> </table> ▶ 거래절차 •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 이용 신청 • 거래한도 부여 • 이용약정 체결 (전자서명)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실행 • 현금인출시 인출 수수료 1% 추가 * 거래 금액 및 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거래금액 (U\$)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거래금액 (U\$)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문의 : 금융공학실]

9. 파생금융상품

주요고객	▶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 수출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헤지 • 원자재, 원유 등 상품가격의 변동리스크 헤지 ▶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 외화 차입시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 원화 차입시 금리리스크 헤지 및 금리절감 ▶ 기관투자자(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 구조화 채권 및 예금을 통한 Yield Pick-Up (금리, 환율, 지수 및 상품연동 채권 및 예금) • 보유종인 외화자산의 금리 및 환리스크 헤지 • 보유종인 주식의 주가변동 리스크 헤지
기본상품	▶ 통화파생상품 • 장기선물환 (Long-Term Forward) • 통화스왑 (Cross Currency Interest Rate Swap) • 통화옵션(Vanilla Option, Exotic Option) ▶ 금리파생상품 •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IRS) • 금리옵션(Cap/Floor, Swaption) ▶ 개별주식(주가지수)파생상품 • 개별주식(주가지수)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Equity Linked Swap ▶ 상품(Commodity)파생상품 • 상품(원유, 금속 등)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Commodity Linked Swap
구조화상품	▶ 선물환보다 유리한 조건의 환리스크 헤지상품 • Range Forward, Enhanced Forward 등 Zero Cost 상품 ▶ Yield Pick-Up을 위한 투자상품 • 구조화 산금채, 예금 판매 (Callable, CMS 등) • 구조화채권 발행기관 및 투자자 대상 헤지상품 판매 ▶ 주식을 활용한 Equity Finance 제공 • 보유 주식매각, EB/CB/BW 발행을 통한 Financing • 주식관련채의 주식과 채권부분 strip 및 매매 ▶ 상품(Commodity)가격 리스크의 헤지상품 • 환율, 금리 등과 연계한 헤지상품

[문의 : 금융공학실]

Ⅲ. 컨설팅 서비스

1. 성장지원 컨설팅

내 용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재무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 역	▷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기업 운영방안 및 기업발전 전략(조직, 인사, 프로세스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수립 ▷ 사업 및 재무상태 진단
사 례	▷ D사 인수금융 관련 재무전략 수립 ▷ A사 대출 및 주식인수 관련 컨설팅 ▷ G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 D건설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B공사 자금조달 전략 컨설팅 ▷ P사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D사 구매절차 및 내부감사시스템 개선 컨설팅 외 다수

2. 사업타당성 검토

내 용	▷ 신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 역	▷ 신규 사업 및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시장분석 및 시장진입전략 수립 ▷ 자금계획 등 재무전략 수립 ▷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제공
사 례	▷ J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성 검토 ▷ D사 공장신축을 통한 신사업진출 가능성 검토 ▷ T사 호텔 인수에 대한 사업성 검토 ▷ E사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 B사 선박 신조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 ▷ N사 외국기업 2차전지 사업부 인수타당성 검토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3 글로벌 진출 컨설팅

내 용	▶ 해외진출 타당성 검토, 전략 수립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 역	▶ 국내 공공기관, 기업의 해외진출 및 Global 전략 수립 지원 ▶ 국제기구, 외국기업 등 해외 Client의 국내진출전략 수립 지원 ▶ Global Project의 전략적 개발 및 금융지원 컨설팅 수행
사 례	▶ 한국형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사우디 현지 Financing전략 수립 ▶ N사 2차전지 관련 해외사업인수 컨설팅 ▶ K사 중국 진출 관련 사업성 검토 ▶ N사 중국 진출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컨설팅 ▶ A사 미얀마 목재사업 컨설팅 ▶ 뉴욕 A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 S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 탐사사업 타당성 검토 외 다수

4. Turn-Around 컨설팅

내 용	▶ 성장정체 및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서비스 영 역	▶ 기업의 경영개선 및 가치제고 등 Turn-Around 전략 수립 ▶ Debt Restructuring, 자본구조 개선 등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수립 ▶ 사업분할·매수, 사업 재구조 등 핵심역량강화 전략 수립
사 례	▶ U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경영개선방향 수립 ▶ D사 재무구조 개선방안 도출 ▶ C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H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D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I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S계열 Turn-Around 전략 수립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참고]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 국내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7-4000	
본점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6-8503	02)787-5791
가산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28 STX V-Tower 2층	02)2081-3500	02)857-7598~9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8 영보빌딩 1,2층	02)560-0300	02)553-8359
개포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 남서울중앙교회 1층	02)2183-8100	02)2183-8199
금천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혜전빌딩 1,2층	02)3282-8900	02)852-7214
남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1 남강빌딩 2층	02)2149-2400	02)2149-2499
노원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교보생명빌딩 1,2층	02)950-9500	02)934-7709
논현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POBA강남타워 2층	02)519-0700	02)519-0799
대치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대원빌딩 5층	02)2193-4100	02)2193-4198~9
도곡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4 아카데미스위트A동 2층	02)3498-3800	02)579-0249
마포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1,2층	02)3140-0400	02)338-0479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03 목동로데오빌딩 6층	02)3219-8500	02)3219-8598~9
반포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래미안퍼스티지상가 5층	02)3488-8500	02)594-7990
서소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 한산빌딩 1층	02)398-9500	02)398-9599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대각빌딩 1,2층	02)3488-7500	02)581-1036~7
동대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89 무궁화회관 2층	02)2192-7100	02)564-4398~9
성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3 세종빌딩2,3층	02)3408-9600	02)3408-9697
신문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금호아시아나-1관 1층	02)398-9600	02)398-9699
신천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45 리센츠상가 2층	02)2240-8300	02)2240-8398~9
압구정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1,2층	02)3218-0900	02)548-7409
여의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2층	02)2000-0600	02)782-8321
이수지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89 2층	02)2182-8700	02)2182-8798~9
이촌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한석빌딩 1층	02)2125-8000	02)798-0080
종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1,2층	02)398-6700	02)735-0136
잠실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시그마타워 1층	02)2240-8200	02)415-9022
잠원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5 미래빌딩 2층	02)2240-1500	02)2240-1598~9
중계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19 법성프라자 1층	02)2092-3100	02)2092-3198~9
충정로지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2층	02)2127-8600	02)2127-8698~9
한티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2층	02)3469-2300	02)3469-2398~9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 경기지역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청담메디컬센터빌딩 1,2층	031)980-8800	031)997-5112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2층	031)350-1200	031)350-1298~9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산업은행빌딩 1,2층	032)620-1200	032)325-4761~2
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2층	032)363-5300	032)361-1198~9
분당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삼성생명빌딩 1,2층	031)789-1500	031)707-4152~3
송도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현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층	032)540-8300	032)833-7798~9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경기새마을회빌딩 1,2층	031)220-7300	031)226-7330
시화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산업은행빌딩 1,2층	031)496-4400	031)498-2924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산업은행빌딩 1층	031)412-0600	031)487-6942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산업은행빌딩 1,2층	031)380-0900	031)388-0551~2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벤포스타빌딩 2층	031)280-6100	031)280-6197~8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1 네오타워빌딩 6층	031)850-8400	031)850-8498~9
인천지점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43 코아루파크드림 2층	032)450-3400	032)437-6028~9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1 모아나빌딩 1,2층	031)920-4000	031)920-4088
정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93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2층	031)789-4900	031)789-4998~9
판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26번길 128 마크시티그린 2층	031)779-8100	031)779-8198~9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64-13 타임스퀘어빌딩 2층	031)659-0500	031)654-8198
산본지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43-6 한솔스포츠허브 3층	031)420-9500	031)420-9598~9
반월지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15 위너스타워 2층	031)481-0400	031)481-0498~9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7 태성프라자 1,2	031)350-3700	031)8059-059
◎ 충청, 강원지역			
당진지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서해빌딩 1층	041)359-2600	041)356-3699
대덕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05 대덕테크노프라자빌딩 2층	042)939-8600	042)939-8698~9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산업은행빌딩 1층	042)600-6200	042)489-7494~5
아산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반영로234번길 2 메디포스빌딩 2층	041)537-2300	041)537-2398~9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민남로 82 소암빌딩 1,2층	041)559-2600	041)562-8364
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산업은행빌딩 1층	043)229-2600	043)255-9001
충주지점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1,2층	043)850-7700	043)852-2194
춘천지점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104 스카이원빌딩 1,2층	033)240-1400	033)240-1498~9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2 골드플라자 1,2층	033)760-3800	033)765-1897~8
◎ 호남, 제주지역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산업은행빌딩 1,2층	062)958-1000	062)953-7984~5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금남로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대우증권빌딩 3층	062)519-8100	062)519-8198~9
목포지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산업은행빌딩 1층	061)280-5400	061)285-0353~4
여수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빌딩 1층	061)690-8500	061)682-0165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18 상훈실업빌딩 1층	063)440-3600	063)442-5245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산업은행빌딩 1층	063)230-6600	063)230-6666
제주지점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44 대우증권빌딩 1층	064)720-1700	064)759-9015
◎ 영남지역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한화생명빌딩 3층	055)290-3500	065)290-3598~9
경산지점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1층	053)819-1900	053)819-1998~9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산업은행빌딩 1층	054)450-4700	054)457-4644
금정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비엔빌딩 1,2층	051)510-4700	051)510-4798~9
김해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81 동화선프라자 2층	055)310-2220	055)310-2299
녹산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5 J&H빌딩 3,4층	051)974-4100	051)941-6199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2층	053)606-2500	053)255-146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054)750-8300	051)750-8398~9
남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2 나인파크 2층	052)290-8400	052)290-8498~9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산업은행빌딩 1,2층	051)240-1600	051)240-1677~9
성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산업은행빌딩 1층	053)605-4600	053)584-6871~2
양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층	055)380-8500	055)380-8598~9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산업은행빌딩 1,2층	052)270-4900	052)271-0484~5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3 롯데인벤스 1,2층	055)749-4300	055)743-9110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로 25 산업은행빌딩 1,2층	055)268-2700	055)285-0187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산업은행빌딩 1층	054)288-4500	054)272-1655~6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2층	051)749-8300	051)746-1797

□ 국외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토쿄지점 (KDB Tokyo Branch)	GranTokyo North Tower 36F 1-9-1,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6736, Japan	81-3)3214-4541	81-3)3214-6933
베이징지점 (KDB Beijing Branch)	27th Floor, We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86-10)6568-8858	86-10)6568-6978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상하이지점 (KDB Shanghai Branch)	Room 3810, 38th Floor,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No.100, Century Avenue,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20, PRC	86-21)6887-1234	86-21)6877-5556
광저우지점 (KDB Guangzhou Branch)	Suite 1702, 17th Floor, International Finance Place, No.8 Huaxia Road, Pearl River New Town, Guangzhou 510623, PRC	86-20)8550-6008	86-20-8550-6010
선양지점 (KDB Shenyang Branch)	31F, CR Building, No.286 Qingnian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ovince 110004, PRC	86-24)3125-9988	86-24)3125-5096
싱가폴지점 (KDB Singapore Branch)	8 Shenton Way #07-01, Temasek Tower, Singapore 068811	65)6224-8188	65)6225-6540
런던지점 (KDB London Branch)	16th Floor,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44-20)7426-3550	44-20)7426-3567
뉴욕지점 (KDB New York Branch)	320 Park Ave. 32nd Floor, New York, NY 10022	1-212)688-7686	1-212)758-3296
칭다오지점 개설준비위원회 (Qingdao Branch Establishment Committee)	Room 01-06, 43th Floor, The HNA Center, No.234 Yan'an 3rd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Shandong, China 266071	86-532)8573-1312	86-532)8573-2915
KDB홍콩 (KDB Asia Limited)	Suite 2005-09,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2524-7011	852)2810-4447
KDB아일랜드 (KDB Ireland Limited)	Ground Floor, Russell House, Stokes Place, St. Stephen's Green, Dublin 2, Ireland	353-1)4753-644	353-1)4753-658
KDB유럽 (KDB Bank Europe Limited)	H-1054 Budapest V., Bajcsy-Zsilinszky ut 42-46.	36-1)374-9903	36-1)328-5454
KDB브라질 (Banco KDB do Brasil S.A.)	Av.Brigadeiro Faria Lima, 3400 Ed. Faria Lima Financial Center 15 andar Conj.152 Itaim Bibi, Sao Paulo, SP, Brasil CEP:04538-132	55-11)2138-0000	55-11)2138-0150
KDB우즈베키스탄 (KDB Bank Uzbekistan)	32, Oybek Street, Tashkent 100015, Uzbekistan	998-71)120-8000	998-71)120-6970
프랑크푸르트사무소 (KDB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49-69)920713-00	49-69)920713-99
호치민사무소 (KDB Hochiminh Representative Office)	Unit 604, Kumho Asiana Plaza Saigon, 39 Le Duan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84-8)6291-7870	84-8)6291-7672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아부다비사무소 (KDB Abu Dhabi Representative Office)	Unit 1302, Etihad Towers 3, Abu Dhabi, U.A.E. PO Box 63057	971-2)666-3374/ 971-2)666-7173	-
양곤사무소 (KDB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1808 18th Floor, Sakura Tower, No. 339 Bo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Myanmar	95-1)255150~1	95-1)255152
모스크바사무소 (KDB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Office 804, Entrance 3, World Trade Center, Krasnopresnenskaya nab. 12, 123610, Moscow, Russia	7-495)669-4405	7-495)669-4405
방콕사무소 (KDB Bangkok Representative Office)	15th 5L Athenee Tower, 63 Wireless Road (Witthayu),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66-2-168-8499/ 66-92-730-0748 (c)	66-2-168-8500
마닐라사무소 (KDB Manila Representative Office)	the 18th Level, Tower 1, The Enterprise Center, 6766 Ayala Ave., Paseo de Roxas, Legaspi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63-2-556-2267	63-2-556-0912
시드니사무소 (KDB Sydney Representative Office)	Suite 3304, Level 33, MLC Centre, 19-29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61-467-164-836	-

□ 관계회사

구 분	주 소	대표전화
산은캐피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산은캐피탈	02)6330-0114
KDB대우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KDB대우 증권빌딩)	02)768-3355
산은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KDB대우 증권빌딩 16층)	02)3774-8000
KDB인프라자산운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층	02)6333-3500
KDB생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02)6303-5000



제8장

한국수출입은행

8-1. 2016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275
8-2.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276
8-3. 수출 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277
8-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79
8-5. 기술금융 프로그램	282
8-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284
8-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286
8-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288
8-9.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290
8-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92
8-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94
8-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96
8-13. 해외투자금융	298
8-14. 수입금융(수입자금)	301
8-15. 이행성보증	303
8-16. 무역금융	305
8-17. 해외온렌딩	307

8-1

2016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 *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
-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 기술금융 프로그램
- * 상생금융 프로그램
- * 환위험관리 지원프로그램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야		상품명
대출	수출관련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입관련	수입자금
	해외사업관련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보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할인	수출관련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8-2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정부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및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우대지원

지원 대상 정부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금리우대 및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 경제·산업정보 제공,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국제계약 법률자문 등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성장금융팀 : 02-3779-6459

8-3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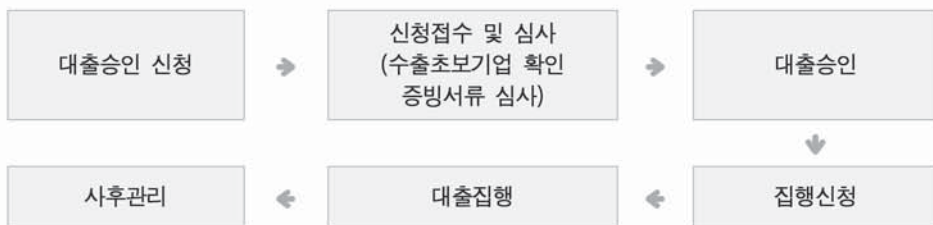
지원 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금리우대,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6157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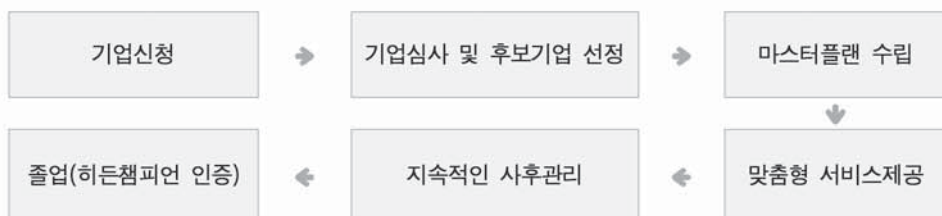
8-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중견 기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 절차

○ 기업신청

- ▶ 신청자격 :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SW개발·공급 기업 및 SI기업 등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14개 중소여신부점 및 출장소
- ▶ 선정기간 : 매년 당행 홈페이지 게시

○ 심사 및 후보기업 선정

-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80%) + 재무안정성(20%)
- ▶ 선정절차 : 1차심사(60점) → 2차심사(40점)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 최종 선정 기업이 제출한 중장기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기업의 니즈(Needs)와 역량에 맞추어 수출입은행이 제공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플랜을 수립

○ 맞춤형 서비스제공

▷ 금융서비스

- “제품개발 → 생산 → 해외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글로벌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범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제공
-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 맞춤형 패키지금융*·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등 특별지원제도 운용
 - * 맞춤형 패키지금융 : 중장기사업계획상 전략과제 실행에 필요한 여러 자금을 일괄승인
 - ** 히든챔피언 크레딧라인 : 기업별 여러 자금을 통합해 연간 회전한도 설정후 한도범위 내에서 개별여신 승인

▷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 히든챔피언 잡포털(기업-청년구직자간 잡매칭), 히든챔피언 카페, 히든챔피언 아카데미,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산학협력 등

○ 지속적인 사후관리

- ▷ 매년 후보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수정 또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선정 취소

○ 졸업(히든챔피언 인증)

- ▷ 히든챔피언 인증가능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다면평가(EPIC)**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히든 챔피언으로 인증(우대지원 5년간 유지)
 - * ①수출액 3억/1억/0.5억달러 이상, ②육성기간 3년이상, ③회사존속 10년이상, ④신용등급 P4+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 다면평가(EPIC) : 탁월한 성과(Excellence), 성장잠재력(Potential), 자립도(Independency), 국가경제기여도(Contribution)를 다면적으로 평가

평가 영역		평가 지표
1	Excellence 탁월한 성과	•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 기업의 매출액 성장율 • 해당산업의 수출 경쟁력
2	Potential 성장 잠재력	•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 • 글로벌 특허 보유 여부
3	Independence 독립적 자생력	• 국내 대기업 의존도
4	Contribution 국가경제 기여도	• 신규 고용창출 기여 • 매출 대비 수출 비중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히든챔피언팀 : 02-3779-5293

8-5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을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한 뒤 이를 반영한 신용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및 기술보증기금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수출성장자금대출 방식 납품협력 중소기업 지원'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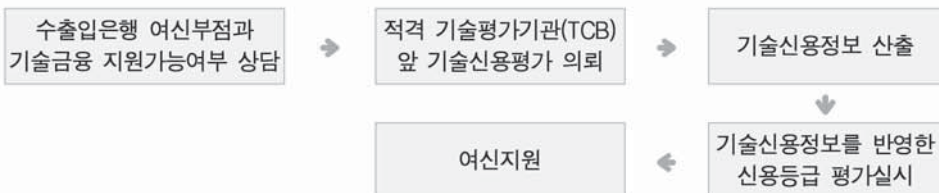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시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4, 5273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아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동반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① 직접 지원

○ 개요

- ▷ 상생협약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또는 패키지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 공장 및 설비 증설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현지 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현지 대기업 앞 납품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등으로 지원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해외투자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운영자금 : 3년 이내
 - 시설자금 : 30년 이내
- ▷ 수출팩토링 : 6개월 이내

② 간접 지원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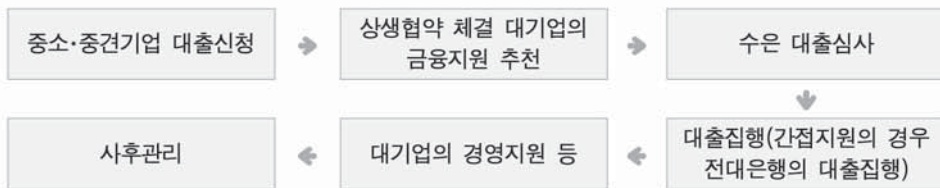
- ▷ 수출입은행이 현지은행 앞으로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은행이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은 현지은행 앞으로 Support Letter를 제공하는 등 협력기업에 대해 현지영업활동을 지원
- 현지영업활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현지화로 제공하여 환위험관리 지원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이 당행 여신지원을 추천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협력기업 앞으로 수출용 물품의 제작자금 또는 수출이행을 위한 이행성 보증을 지원
- 대기업의 지원은 수출입은행과 체결하는 상생협력약정 내용에 따름

○ 지원대상거래

-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의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이 수출물자나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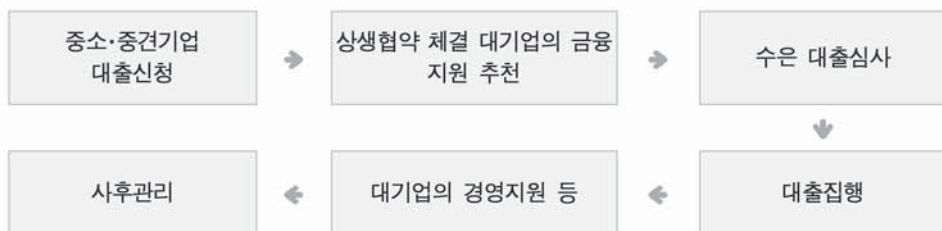
○ 대출기간

- ▶ 수출성장자금대출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 ▶ 수출이행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0
- 울산지점 : 052-274-6157
- 청주지점 : 043-237-0475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구지점 : 053-260-41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인천지점 : 032-235-6114
- 전주지점 : 063-271-6134~8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8-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앞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즉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대기업으로써 수출 및 외화가득효과가 큰 업종을 영위하며 국내 중소·중견협력기업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 원청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을 중소·중견협력기업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신용도 및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

○ 지원조건

-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운용키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 대출금액 :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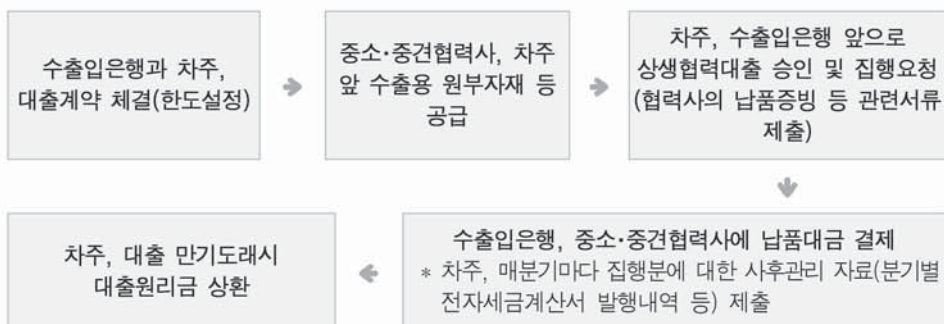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0
- 울산지점 : 052-274-6157
- 청주지점 : 043-237-0475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구지점 : 053-260-41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인천지점 : 032-235-6114
- 전주지점 : 063-271-6134~8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8-9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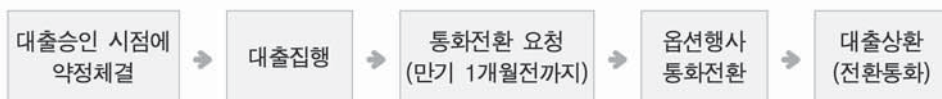
|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 제공

수출중소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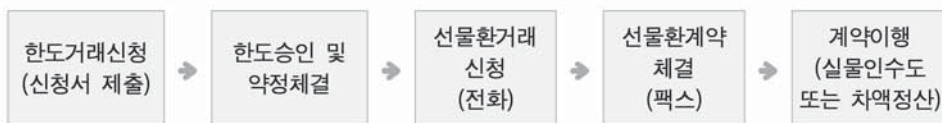
①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 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② 선물환거래

- 개요 : 수출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선물환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정하여 환율하락에 따라 외화의 가치하락을 방지하도록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 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환위험관리 설명회 : 지방소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개요,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 개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점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히든챔피언팀(02-6255-5332)

8-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다만, 기술평가 등급이 양호한 경우)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및 제작자금 용도 등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 중소기업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 단,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대출기간

- 시설투자,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기술개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4, 5273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250억원(유예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400억원(유예중소기업 600억원)까지 증액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4, 5273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text{수출계약금액} - \text{이미 수령한 금액}) \times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times 5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중복수혜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

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4, 5273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3

해외투자금융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주요 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지원 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 한도 범위 이내)
- *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4, 5273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4 수입금융(수입자금)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나프타, 원목, 광물, LNG·LP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 경제의 성장,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90%

대출기간

- 개별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거치 3년까지 가능)
 -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4, 5273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5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 * 공동보증 제도 :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신용도는 취약하나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제공
(문의 :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02-1800-5285)

보증금액(기간)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기업성장지원부 : 02-3779-6431, 6459
-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 02-1800-5285 (공동보증제도)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6157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8-16

무역금융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기업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pen Account방식)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당행 기준 일정 등급 이상 소재국가의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중계무역 포함)

대출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대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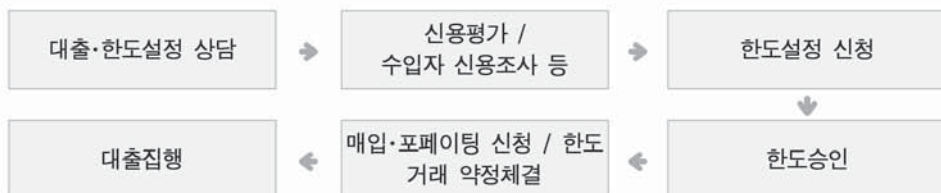
- 수출환어음매입 : 30일이상 2년미만(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또는 O/A 방식에 따른 수출채권 매입의 경우에는 30일 이하도 가능)
- 포페이팅 : 30일이상 2년미만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 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68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6157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7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국내기업 또는 국내모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15. 12월 현재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주)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하나은행, 농협은행(주), (주)부산은행

지원 내용

- 수출성장자금대출 :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 수출촉진자금대출 :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 수입자금대출 :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
- 해외사업자금대출 : 해외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해외투자자금대출 : 현지시장 진출,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 등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해외직접투자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해외현지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수출성장자금대출의 경우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70% 이내)

대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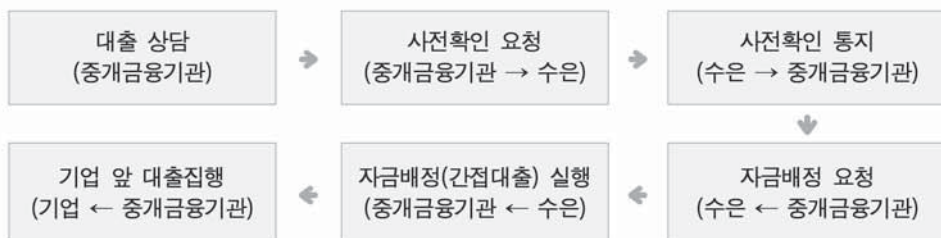
- 시설·해외투자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접수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 서류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 기업 적격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3개년간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355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6255-5114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성장 지원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smesupport@koreaexim.go.kr	(02)6255-5296	(02)3779-6725
중소중견 금융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304	(02)3779-6744
서비스 산업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wth@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iec@koreaexim.go.kr	(02)3779-6369	(02)3779-6746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0	(02)3779-6764
정책금융 지원센터	해외건설·플랜트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금융 컨설팅 E-mail: kocc@koccenter.or.kr	(02)1800-5285	(02)3779-6770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 (02)3779-6114 / FAX: (02)784-1030

〈국내지점〉

지 점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 지	천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시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e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21
	수 지	원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0	031)259-6609
중부권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 지	주 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 지	산 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1 NH투자증권빌딩 6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 지	구 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 지	원 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 지	산 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6157	052)274-5278
호남권	광 지	주 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7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 지	주 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8	063)271-6139
출장소	구 출 장 소	미 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 출 장 소	수 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빌딩 4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 출 장 소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제9장

한국무역보험공사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312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14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16
9-4 단기수출보험	317
9-5 중소기업Plus+보험	321
9-6 환변동보험	322
9-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325
9-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326
9-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328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 대상

국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10년 1월부터 시행),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 ▷ 조사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가 달라짐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 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 현지시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사이버영업점 가입

- ▷ www.ksure.or.kr 접속
-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 회원사가입→사업자등록증 송부→ [승인]→회원가입

로그인

-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용-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 공사 DB검색(최근 6개월 이내 조사된 자료 있을시 시간절약)
-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4주 소요)
-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청-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 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 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 절차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 거래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4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 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 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 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5

중소중견Plus+보험

|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 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로 1년간 최대 2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중견기업 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필수가입)	최대 U\$50만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고위험·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입자 제외 [최대 20개사]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보험료 납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6

환변동보험

|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기업, 수입기업, 해외투자기업중 신용상 문제가 없는 중소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해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수출형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구 분	내 용	특 정
일반선물환 (Forward) (수출형 기준)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신청 서류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및 해지수요 조사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www.ksure.or.kr, 재무제표 제출센터에서 파일 업로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최근 1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 * 대표이사 공사 내방하여 약정 체결(약정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중)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은행연합회 또는 은행 발급) 등

처리 절차



신청·접수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필요시 공사양식(공사홈페이지 <http://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이용, 팩스 신청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일 최종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 용어설명

환헷지 :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여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사전에 고정시키는 것

9-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동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 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생산한 제품

지원 내용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부품·소재 전문 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지원 분야 보증책임, 회수비용 및 배상책임 등 위험을 종합 담보

위험유형	담 보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제조물 회수비용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제조물 배상책임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지원품목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의 주요자원
-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관세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방지 · 처리물품 등 관세감면대상물품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수입보험지원물품조회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원금(지급보증) + 약정이자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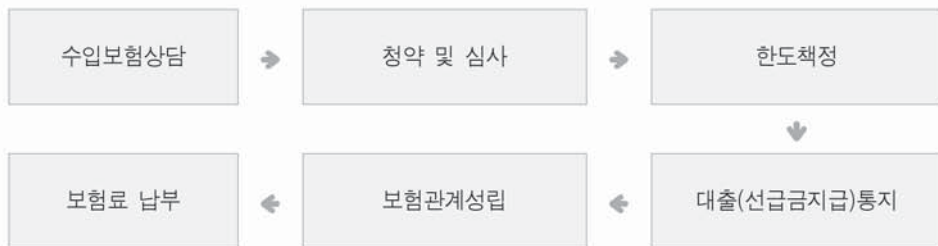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준비 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관련 → 기타보험 : 수입보험

처리 절차



문 의 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9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해외 미수채권 회수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 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수 대행

유의사항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25% (공사 수수료 4% 별도) 내외 수준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 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신청 → 수임가능성 확인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 10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1. 수출 애로 상담	330
10-2. 이동 Kotra	331
10-3. 해외시장조사	332
10-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334
10-5. 수출상담회	335
10-6. 무역사절단	336
10-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337
10-8. 한국우수상품전	338
1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339
10-10. 온라인 마케팅(buyKOREA)	340
10-1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341
10-12. 지사화사업	342
10-13. 월드캠프	345
10-14.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347
10-15.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349
10-16. IT수출상담지원센터	350
10-17.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352
10-18. 해외IT지원센터	353
10-19.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Service Mundus)	354
10-20. 경제 한류 해외진출 지원	355
10-21.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육성(Medi-Star Initiative)	356
10-22.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357
10-23. 방산물자 교역지원	368
10-24. 글로벌 조달 선도기업 육성(P300)	360
10-25.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Global Partnering)	361
10-26. 무역·투자정보포털(globalwindow)	362
10-2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364
10-28.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366
10-29.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367
10-30.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369
10-31. 열린무역관	371
10-32. 수출인큐베이터	372
10-33.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KAPP)	374
10-34.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376
10-35. 해외투자진출 상담	378
10-3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380
10-37.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털(OIS)	382
10-38.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383
10-39. 국내복귀기업 지원	385
10-40. 글로벌 M&A 지원	386
10-41. Kotra 글로벌 CSR 사업	387
10-42. 교육·연수	389

10-1 수출 애로 상담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검사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관세, 통관, 경영지원 등

이용 방법

1) 전화 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 2번 수출 컨설팅 선택 → 해당 전문위원 연결

2) 온라인 상담

-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tradedoctor.kotra.or.kr)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 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3)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9)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수출애로상담데스크)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문 의 처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수출 컨설팅)

10-2 이동 KOTRA

‘이동 KOTRA’는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무료로 방문 상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수출금융, R&D 등)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이동 KOTRA’ 신청 →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기업정보 및 상담 요청사항 등록 → 방문 상담

지역	소속	연락처
서울, 경기, 인천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02-3460-7319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KOTRA지원단	051-740-4153
대구, 경북	대경권KOTRA지원단	053-659-225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호남권KOTRA지원단	062-369-905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KOTRA지원단	042-862-8313
강원, 경기북부	강원권KOTRA지원단	033-261-5312

문 의 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19

10-3 해외시장조사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 사업파트너 정보 조사, 맞춤형 시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진출 타겟 시장에 대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9일 이내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

지원내용 및 참가비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수수료(VAT 포함)
사업파트너 연결 서비스 I	① 잠재 사업파트너 정보 조사(최대 5개사) ② 업무교신 지원 ③ 기초시장조사(최대 2개 항목)	500,000원
사업파트너 연결 서비스 II	① 잠재 사업파트너 정보 조사(최대 5개사) ② 업무교신 지원 ③ 맞춤형 시장조사(최대 5개 항목) ④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1회)	1,000,000원
잠재 바이어 조사	수출 희망 품목의 잠재 바이어 정보 조사(5개사)	150,000원
맞춤형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품질인증제도 등 조사 고객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시장 조사	110,000원/항목
바이어 연락처 확인	해외바이어의 실제 존재여부, Contact Point(대표번호) 등 확인	무료 (연간 6회에 한해 무료 제공, 추가시 건당 1만원)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수입 희망 품목의 잠재 공급선 발굴(최대 5개사)	220,000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사업’
 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능여부 검토(약 9일 소요) → 조사 가능시 고객에게
 견적서 송부 → 고객 이용료 입금 → 조사완료 및 결과보고서 고객송부 (3주~6주
 소요) → 보고서 확인 및 A/S신청

문 의 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37~7339

10-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lobal Competence Level Test(GCL Test)’는 기업의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제안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8가지 세부역량 진단
(중장기 전략·비전, 수출인프라, 전문인력·자금, 글로벌 의사소통, 판촉·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전략, 제품)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KOTRA 52개 서비스 및 유관기관 115개 서비스)
- 1:1 유선컨설팅 및 현장방문상담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 GCL Test 설문답변 → 성장단계 및 영역별 점수 확인 → 1차 유선컨설팅(KOTRA 수출전문위원) → 2차 방문컨설팅(필요 시)

문 의 처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25

10-5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KOTRA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품목과 일치하는 중소기업

참 가 비 무료

* 사업비는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지원 내용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및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품목 바이어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16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고객안내센터(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10-6 무역사절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참가비

-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임등) 자체부담 원칙
- 해외사업비 예산은 파견기관이 부담

지원 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 파견기관에서 참가업체 선정 및 사절단 파견 → 해외무역관에서 준비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추진 → 해외무역관 후속 지원-지자체 무역사절단 구성, 파견활동은 중진공이 대행 수행

* 2016년도 무역사절단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지원전략팀 : 02-3460-7330~7333

10-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참 가 비

전시회별,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상한 범위 내 지원
-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측 디렉토리 신청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약 → 사전 마케팅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문 의 처

해외전시팀 : 02-3460-7268, 7256

10-8

한국우수상품전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참 가 비

100만원 (전시회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전시장 임차 및 장치비
- 전시품 운송, 통관수수료(해상 단체 편도운송, 1CBM 한도)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분야별 대행사(장치, 운송, 항공) 실무 지원 → 사전 마케팅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 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문 의 처

전략전시팀 : 02-3460-7272

1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SEOUL FOOD’는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33년간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 전시회이자 국내식품업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 대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식품, 식품 관련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업

식품업체 및 식품관련 기기 분야

시기/장소

2016.5.10-13 / KINTEX

참가비

- 독립식 부스 : 2,420,000원
- 조립식 부스 : 2,860,000원 (* VAT 포함)
 - * 조기신청 시/ 부스규모별/ 소상공인(4인 미만 사업장) 참가비 할인
 - * 자세한 내용은 SEOUL FOOD 공식홈페이지(www.seoulfood.or.kr) 참고

선정 기준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신청금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진행 절차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D, PW 입력 후 신청 → 1차 마감(추후 일정 통보)/ 참가비 완납 → 2차 마감(추후 일정 통보)/ 참가비 완납 → 전시회 참가

문의처

전략전시팀 : 02-3460-7269, 7273

10-10 온라인 마케팅(buyKOREA)

buyKOREA.org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 가운데 최초로 유일하게 한국 상품 해외 홍보, 해외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 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

KOTRA 기업회원 가입 후,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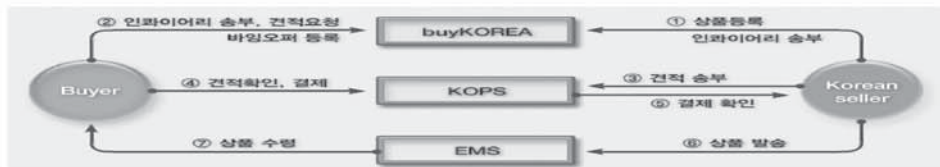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구분	주요 내용
수출상품 등록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까지 등록 가능
바이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 조회 및 인콰이어리 수발신
인콰이어리 발송, 수신	바이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메일 발송 가능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메일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KOPS 서비스 가입을 통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신용카드 결제 수취 가능
수출상품 발송	EMS 배송신청 기능을 통해 수출상품 발송 (할인을 최대 15%)
화상미팅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 가능
해외기업정보	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거래 프로세스



문 의 처

중소기업지원전략팀 : 02-3460-7328

10-1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국내 내수기업 및 전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특히, 퇴직무역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로 밀착 지원해리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선정 기준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 기업

* 수출 준비 및 의지가 있는 기업 우대

참 가 비

무료

지원 기간

1년(연3회 모집)

▷ 1년간 지원 후 내수기업 기준(10만달러) 이상 수출성약시 졸업, 10만달러 미달성시 업체의 사에 의거 연장지원

지원 내용

-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진행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체 모집 공지 → 각 지원기관별 온라인 신청 → 신청심사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 종합컨설팅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수출기업화 및 졸업

문 의 처

수출첫걸음지원팀 : 02-3460-7540

10-12 지사화사업

시장 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 가 비

- 2,500,000원 - 3,500,000원 (지사화·물류 패키지 신청 시 지사화 수수료의 110%)
- 졸업연장 시(4년, 5년차) 참가수수료의 50% 추가 납부
- * 참가비는 뒷면 참조

지원 내용

- 시장조사, 수출성약, 추가거래선 발굴 등 참가목적(1개 항목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1품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 분쟁 등 KOTRA와 해외무역관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지사화사업’ 신청 → 현지 무역관의 시장성 검토 → 참가비 납부 → 협약 체결 → 지사화사업 시행 → A/S 제도

문 의 처

유망기업지원팀 : 02-3460-7425

지사와사업_무역관별 참가비

단위 : 만원(V.A.T 포함)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중국 지역	중국	광저우	300	일본 지역	일본	나고야	350
		난징				도쿄	
		다롄				오사카	
		베이징				후쿠오카	
		상하이		북미주 지역	미국	뉴욕	350
		샤먼				시카고	
		선양				로스앤젤레스	
		선전(심천)				달라스	
		시안				워싱턴	300
		우한				마이애미	
		정저우				디트로이트	
		창사				실리콘밸리	
		청두(성도)			캐나다	토론토	
		충칭				밴쿠버	
		칭다오(청도)		중남미 지역	브라질	상파울루	350
		톈진(천진)			리우데자네이루		
		항저우			칠레	산티아고	300
		홍콩			멕시코	멕시코시티	
	타이완(대만)	타이베이	과테말라		과테말라	250	
	동남 아 대양 주 지역	호주	시드니		쿠바		아바나
멜버른			파나마		파나마		
베트남		하노이	콜롬비아		보고타		
		호치민	페루	리마			
필리핀		마닐라	에콰도르	키토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수라바야		파라과이	아순시온				
태국(타이)		방콕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캄보디아		프놈펜	CIS 지역	러시아	모스크바	300	
라오스	비엔티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블라디보스톡			250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미얀마	양곤				노보시비르스크			
	뉴질랜드	오클랜드			카자흐스탄	알마티			
서남 아 지역	인도	뉴델리	300	중동 지역	우크라이나	키예프			
		뭄바이			아제르바이잔	바쿠			
		방갈로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첸나이	벨라루스		민스크				
	방글라데시	다카	250		몽골	울란바토르			
	스리랑카	콜롬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유럽 지역	파키스탄	카라치	300	이란	테헤란	300			
	영국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라크	바그다드				
		뮌헨		리비아	트리폴리				
		함부르크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		파리	카타르		도하		
	벨기에	브뤼셀		이집트	카이로		25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르단	암만				
	이탈리아	밀라노		시리아	다마스쿠스				
	스페인	마드리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스위스	취리히		쿠웨이트	쿠웨이트				
	스웨덴	스톡홀름		알제리	알제				
	덴마크	코펜하겐		모로코	카사블랑카				
	오스트리아	빈		오만	무스카트				
	핀란드	헬싱키		아프리카 지역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50
	그리스	아테네			모잠비크			마푸투	
	폴란드	바르샤바			케냐		나이로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수단		카르툼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체코	프라하			탄자니아		다레살람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나이지리아		라고스		
	불가리아	소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가나		아크라		

10-13

월드챔프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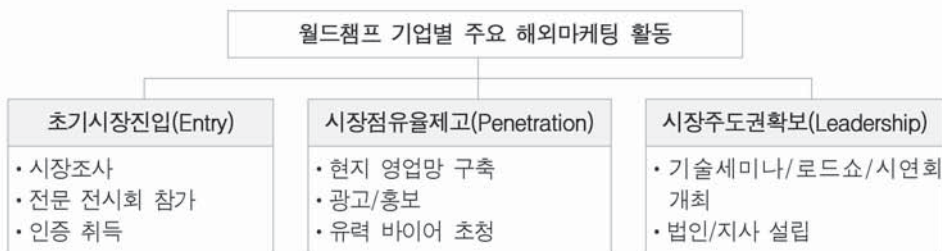
산업부/중소기업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또는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등)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기준 (산업부/중소기업청 선정)

① 공통조건	선택조건 (② 또는 ③)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100억원 이상)	② 월드클래스 300 조건 ▪ 직간접 수출비중 20% ▪ 3년 평균 R&D 투자 비중 2%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또는
	③ 글로벌 전문기업 조건 ▪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 수출 구간별로 차등 : 5천만불 미만 기업은 5% 이상, 5천만불 이상 기업은 제한없음

* 참고사항 : <http://www.worldclass300.or.kr/index.do>(월드클래스300)
<http://www.globalchamp.or.kr>(글로벌전문기업)

지원 내용



-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마케팅 계획 수립
-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장조사, 영업망 구축, IR행사, 로드쇼, 전시회 등)

지원 규모

참가기업(50)과 정부(50)의 매칭펀드로 1억원 내의 사업비 조성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최대 5년 지원

진행 절차(잠정)

한국형 히든챔피언 모집공고(산업부/중기청 1~3월) => 선발기업 선정(6월) => 선정기업 대상 월드챔프 참가업체 유치(6월) => 기업별 로드맵 수립(7월) => 사업개시(7월)

문의처

중견기업지원팀 : 02-3460-7227

10-14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국가 수출을 이끄는 1,000개의 핵심 제품 육성을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5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을 선정하여 생산기업의 종합 해외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비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분	선정 기준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참가비

무료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KOTRA가 직접 지원하는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 (해외마케팅 자금지원) 기업 개별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전시회 참가, 기업 단독행사 개최 등), 기업 당 1,400만원 내외 지원 및 무역관 수출 멘토링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브랜드 수출지원사업)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의 브랜드 역량강화 지원 - 참가 희망기업 모집하여 3년간 해외시장 타겟 브랜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기타) 바이어 초청 상담회(연 1회),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비제조업 및 협력사업 지원 등
간접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 (참여기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달청, 중기청, IBK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 지원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절차

연 1회 실시

- 산업부 신규선정 공고 → 참가신청 → (간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간사기관이 접수, (간사기관 없는 경우) KOTRA가 접수 → KOTRA/업종별 간사기관 심의 → KOTRA/업종별 추천위 추천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문의처

중견기업지원팀 : 02-3460-7233

10-15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이메일, 전화, 내방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 중 겪게되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현지 법규, 회계, 금융 등 시장진출 장벽, 리스크 관리, 대응책 등 상담

진행 절차 애로 상담 신청(이메일, 전화, 팩스) → 신청 내용 검토 후 해외 수주애로상담센터 자문위원이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문 의 처 해외프로젝트사업단 : 02-3460-7489

10-16

IT수출상담지원센터

ICT 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로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진출국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ICT(정보통신기술) 및 IT 융합 수출 기업

-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전자 부품, 기타 디바이스
- ▷ 소프트웨어(솔루션, 모바일앱)
- ▷ IT 서비스, 산업별(공공, 금융, 제조, 유통) SI 프로젝트 및 인터넷 서비스 등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1) 해외 ICT 시장 진출 애로 해결 및 컨설팅

- ▷ ① 의사결정 ② 시험판매 ③ 전략적 제휴(유통/자본/R&D) ④ 계약 ⑤기업 및 제품의 현지화 ⑥ 현지거점 설립

2) 외부 전문가 연계 자문

- ▷ 해외 진출 관련 관세, 법률, 지적권, 금융 등 전문 분야 자문

이용 방법

1) IT수출상담지원센터 전화상담

- 하드웨어(02-3460-7752), 소프트웨어(02-3460-7753), IT 서비스(02-3460-7754)

- 2)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tradedoctor.kotra.or.kr)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 3) IT수출상담지원센터 내방상담 (KOTRA 본사 5층, IT사업단 내 상담센터)
- 4) 수출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 방문 필요 시, 출장 상담 가능
- 5) 고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1번 사업 안내 선택 → IT수출상담지원센터 연결 요청 → 접수 및 상근위원 상담 → 필요시 외부 자문단 연결 → 사후 관리

문 의 처

IT사업단 : 02-3460-7752, 7753, 7754

10-17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K-글로벌’은 주요 IT시장에 중소기업 해외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T분야 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 부품, 정보보호, 디바이스, IT 서비스 분야 국내 IT기업

선정 기준

현지 시장성 평가

일시/장소

행사명	일시	장 소	국내기업
K-글로벌 런던	6월	런던	30
K-글로벌 실리콘밸리	11월	실리콘밸리	40
K-글로벌 차이나	12월	상하이	40

* 상기 일정 및 지역은 국내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사항

○ ICT 관련 융복합사업 추진

* 무역(수출상담회), 정보(컨퍼런스), 투자(투자유치 IR), , 기술(Tech 로드쇼), 스타트업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수출상담회’ 신청 →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1:1 상담신청 → 상담주선 → 최종스케줄 확인 및 상담 준비

문의 처

IT사업단 : 02-3460-7462

10-18 해외IT지원센터

국내 ICT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에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설치 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대상 기업

진출희망지역에 대한 정보통신(ICT)분야 수출역량 보유 중소 벤처기업

선정 절차

서류심사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지원 내용

- 현지 사무공간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ICT 바이어 발굴 및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ICT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정보 제공 등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IT지원센터사업’ 신청 → 1차 서류심사 (ICT분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IT분야 중소, 중견기업) → 2차 심사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 등을 기준, 현지 전문가 심사) →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사후관리

서류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전문가 심사
- 신청서 - 기업소개서 -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 ICT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 기술력 - 제품성 - 시장성

문의처

IT사업단 : 02-3460-7463

10-19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Service Mundus)

‘서비스문두스’는 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 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해외 진출지원 등 기업별 조사, 마케팅, 해외 진출 활동을 종합 지원해 드리는 지식서비스 분야 대표사업입니다.

* Service Mundus : 라틴어로 세계, 우주를 의미.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 지원을 뜻함.

대상 기업

스마트 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디자인·방송 및 음악·이러닝·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주요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행 시기

연중

참가비

무료

지원 내용

- 기본 서비스 (해외 시장 진출 로드맵,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지원)
- 선택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지적권 보호, 기업 역량 구축 사업, 글로벌 기업과 제휴 지원 등)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기업별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해외진출전략 도출 → 개별 맞춤형 해외진출지원 서비스 제공

문의처

서비스산업팀 : 02-3460-7610

10-20

경제 한류 해외진출 지원

한류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제한류의 파급 효과를 국내 유망 제조 및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경제한류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신규 해외 수출 및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한류 박람회, 한류 연계 특화 마케팅 사업, 한류 심층조사를 추진하여 경제 한류 분야 해외마케팅을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방송콘텐츠, K-Pop, 스마트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 뮤지컬, 게임, 문화와 산업(IT기술) 융복합, 패션, 미용, 한류스타 MD상품 등

수행 시기

연중

지원 내용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코리아 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 한류의 글로벌 진출 지원 (2015년 개최지: 중국 상하이)

* 자세한 사항은 <http://KBEE2015.com> 참고

- ▷ 한류스타(연예기획사)와 중소·중견기업(서비스, 제조업)간 브랜드 매칭 사업
- ▷ 한류·CSR 연계형 수출마케팅 사업
- ▷ ‘글로벌 한류 동향 및 진출 전략’ 정보조사 자료 발간

문의처

서비스산업팀 : 02-3460-7611

10-21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육성(Medi-Star Initiative)

‘메디스타 이니셔티브(Medi-Star Initiative)’는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수출 유망기업

수행 시기

연중

지원 내용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해외바이어 및 현지 협력기관 발굴, 해외전시참가 및 기타 마케팅사업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 → 참가기업 선정 → 설명회 →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점검 및 평가

문의처

의료바이오팀 : 02-3460-7621

10-22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유망 병원·보건의료 프로젝트 발주처 및 관련 글로벌 기업을 발굴·초청하여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발주처 네트워킹, 현지 기업 설명회 등 국내 기업(기관)의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대 상

해외 병원 프로젝트의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개별 기업

- 신규 병원의 건립·증축 관련 분야 등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관련 지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협업지원 가능)

수행 시기

연중(선정공고 별도 공지)

지원 내용

해외 발주처 및 유력기업 병원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및 1:1 상담기회 제공

진행 절차

- 지원사업 공고 → 국내 참가기업(컨소시엄) 모집 → 평가 및 선정 →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지원
- 해외 병원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설명회·상담회 연계 지원

문 의 처

의료바이오팀 : 02-3460-7620

10-23

방산물자 교역지원

KOTRA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국내 방위·보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및 해당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방위·보안물자의 수출을 지원해드립니다.

구 성

-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 조직

지원 내용

사업	주요내용
정부간(GtoG)거래	- 구매국 정부의 GtoG 계약 의사 확인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KOTRA(KODITS)의 GtoG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지원 -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패키지딜	- 구매국 정부가 희망하는 산업·투자·자원 등의 협력을 위한 협상안의 종합 설계 지원
절충교역(offset)	- 주요 수출대상국 절충교역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절충교역(민수 분야) 협상안 작성 및 이행지원
파이낸싱	-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수출건별로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수출마케팅	- 선도기업 육성사업, KODAS 등 국내외 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정보 제공	- 해외 30여개 방산거점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및 구매정보 (인콰이어리)를 업계에 제공

진행 절차**정부간(GtoG) 거래**

- 구매국 Gto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능력 평가 및 선정 → GtoG계약 협상 → Gto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KODITS) - 국내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 → GtoG계약 체결(KOTRA(KODITS) - 구매국정부) → 계약 이행(국내업체) 및 이행모니터링(KOTRA)

문 의 처

기획총괄팀 : 02-3460-7308, 수출계약팀 : 02-3460-7818

10-24

글로벌 조달 선도기업 육성(P300)

UN,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조달시장진출 300개사 육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수출이력증명서(3년치)를 제출할 수 있는 해외영업능력이 되는
우리기업

선정 기준

해외마케팅 능력(60%) + 재정건전성(40%)

참 가 비

무료

지원 내용

- 벤더등록,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입찰서 작성 지원, 조달관 파트너 발굴 등 현지 지원
- One-stop 사업 플랫폼 구축에 따른 벤더등록, 맞춤형 입찰정보와 컨설팅 제공, 금융지원, 성과창출

진행 절차

진출 준비(시장동향, 벤더등록) → 입찰공고 확인 및 수집 → 응찰
(입찰서작성) → 낙찰(조달관 접촉) → 수행

문 의 처

공공조달팀 : 02-3460-7672

10-25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Global Partnering)

‘글로벌파트너링’은 R&D 기반의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육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글로벌 기업의 제품 개발 의뢰에 대응 가능한 부품소재 (중간재) 장소 중견 기업

선정 기준

필요 시 전문가 협의체 및 글로벌기업을 통한 사전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 선정

참 가 비

무료

지원 내용

- 글로벌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 글로벌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정부 R&D 자금지원, 기술 교육 등)
-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개최
 - * 일시/ 장소 : 11월/ 서울
 - * 글로벌 기업 50개사, 국내 기업 250개사 참가

진행 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국내 기업 조사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플랫폼 운영

문 의 처

소재부품산업팀 : 02-3460-7629

10-26

무역·투자정보포털(globalwindow)

Global Window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별, 주제별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 무역투자정보 포털사이트(www.globalwindow.org)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m.globalwindow.org)
- Facebook(facebook.com/globalwindow.kotra)
- 트위터(twitter.com/globalwindow)
- 매주 글로벌 무역투자정보에 대해 이메일 뉴스레터 제공(신청 : 알림마당-뉴스레터 메뉴)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 주요 무역 통상정보

유 형	내 용
해외시장뉴스	세계 각국 상품산업 트렌드, 경제동향, 생생단신, 해외진출속보 등
국가정보	세계 95개국 비즈니스 기초 국가정보 및 국별 경제지표 제공
KOTRA보고서	이슈현안에 대한 심층 보고서, 지역·국별 진출전략 등 제공
DB정보	상품DB, 산업DB, 해외인증제도, 인증대행컨설팅사 정보 등 제공
동영상정보	온라인 설명회 서비스, 국가별 강좌, 동영상리포트 제공

○ 해외정보조사

담당팀	내 용
통상전략팀	글로벌 이슈, FTA, 통상정책, 수입규제, 기술규제 등 통상 이슈
아태양주팀	일본·동남아태양주·서남아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구미팀	유럽·북미·중남미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중아CIS팀	중동·아프리카·CIS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중국사업단	중국·홍콩·대만 시장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문의처

통상전략팀 : 02-3460-7507~7508

10-2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KOTRA는 설명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201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연초 세계시장 조망,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의 권역별 이슈 점검, 수출유망 분야 제시
- 지방 설명회 동시 개최로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립 지원

구분	서울 설명회	주요 산업/지역 비즈니스 포럼	지방 설명회
일자	'16. 1월 첫째주 3일간		
장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B1 하모니볼룸(잠정)	KOTRA 본사 및 IKP 회의실	추후 공지 예정
대상기업	2016년 해외시장진출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주요 프로그램	세계경제전망 및 권역별 진출전략소개	유망 산업 및 지역별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등	권역별 진출전략
참가비	100,000원 (잠정, *조기신청고객,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참가비 할인)	추후 공지 예정	추후 공지 예정
신청방법	'15.12월부터 KOTR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2016 해외시장 설명회

유망시장·전략분야에 대한 설명회 연중 수시 개최

지난 해외시장 설명회 시청

-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 동영상정보 - 설명회·세미나 메뉴
- 일부 설명회는 발표자료 다운로드 가능(pdf 파일)
 - * KOTRA 설명회 일정은 추후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초기화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통상전략팀 : 02-3460-7507~7508

10-28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대통령 정상외교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범부처 체계를 통해 지원해드립니다.

이용 방법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m.president.globalwindow.org)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구분	주 요 내 용
정상외교 성과	양국 정상간의 공동성명, MOU 등의 합의내용, 경제행사 및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등을 DB로 구축
정상회담 종합정보	정상 순방국/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한국기업정보 등 정상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지원사업 참가 안내	정상외교 후속조치로서 정부부처·수출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관련사업 참가정보, 사업결과보고, 국가간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정부 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아이디어 제안	기업이 정상외교를 활용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부처·수출유관기관의 맞춤형 추진 사업을 안내하고, 신규 사업개발에 적극 반영
정상외교 활용사례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이나 정상외교 후속사업 참가를 계기로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여 정상외교 활용방법 공유
경제사절단 활동 지원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동행할 경제사절단행사 관련 모집·신청·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행사 및 일정공유, 주요 활동 및 결과등록을 통한 정보 제공

문 의 처

경제외교성과확산팀 : 02-3460-7389

10-29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한중 FTA가 체결은 되었는데, 복잡한 내용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우시다고요?
KOTRA와 함께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협정문 내용부터 마케팅 상담까지
한중 FTA 활용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 용 료 무료

사업 내용

정보제공	활용 상담	마케팅지원
FTA 홍보활동 국내 및 중국 현지 설명회 개최 중국 베이징 및 국내 9개 도시 개최 ('15. 3~4월) 	FTA 상담 서비스 국내기업 및 바이어 · 투자가 상담 단순상담 • 품목별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 법률 등 서비스분야 개방내용 S 심층상담 • 법률, 물류, 회계, 투자 등 기능별 심층상담 • 부품소재, 생활소비재 등 산업별 심층상담 통관 등 현지 기업애로 해소	FTA 활용 시장전출 마케팅 분야별 맞춤형 마케팅 • 구매상담회 등 투자기업 현지 마케팅 • 상표 · 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등록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센터 운영 대형 전시회 · 무역사절단 운영 • 한류상품박람회 ('15. 8 중국 상하이) • 중국-아세안박람회 ('15. 9 중국 난닝) • 한국상품전 ('15. 11 중국 톈진)

63명의 현지 민간 자문단 활동
중국 진출 및 진출희망 기업의 '멘토' 역할

연 락 처

센터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베이징	(86-10) 6410-6162	pekktc@kotra.or.kr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shanghai@kotra.or.kr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qd_kotra@daum.net	www.kotra.or.kr/KBC/qingdao
청두	(86-28) 8672-3501	ctuktc@kotra.or.kr	www.kotra.or.kr/KBC/chengdu

문 의 처

통상전략팀 : 02-3460-7509

10-30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 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지원 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수 수 료

300,000~500,000원 (VAT포함)

* 해외무역관별 수수료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 바이어 상담주선 · 일정주선(호텔 및 차량예약,통역원 알선) ·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 관찰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주선 (호텔 및 차량예약,통역원 알선)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사업’ 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여부 검토 → 출장지원 가능시 고객에게 견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 → 출장시행

참고 사항

- 출장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 : 120개 무역관
- 공항 출영송 지원 가능 대상 : 28개 무역관
- * 하기 무역관 외 공항출영송 미지원

지역	공항출영송 지원 무역관
동남아대양주	수라바야
서남아시아	방갈로르
중남미	과테말라, 산토도밍고, 리우데자네이루, 아순시온
유럽	부쿠레슈티, 브뤼셀, 자그레브
CIS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알마티, 노보시비르스크, 민스크, 올란바토르
중동/아프리카	무스카트, 알제, 라고스, 아디스아바바, 아크라, 카르툼, 킨샤사
중국	선양, 시안, 우한, 창사, 청두, 항저우

* 공항 출영송 수수료는 해당 무역관 출장지원서비스 수수료에 포함

문의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34

10-31

열린무역관

‘열린무역관’은 국내기업이 해외출장 시 필요한 사무공간을 전 세계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

선정 기준

2개 이상 업체가 동일지역 및 일정에 신청하는 경우 선착순 배정

이 용 료

무료

지원 사항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무역관별 분기당 1회만 가능)

분류	세부지원 사항
사무공간	책상(컴퓨터 포함), 전화/ 팩스, 인터넷, 회의실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 통역원 지원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현지 공휴일은 서비스 미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열린무역관’ 사업
신청 → 신청서 작성 → 일정검토 후 고객 통지 → 출장시행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참고 사항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기간 : 출장 2주전 신청

문 의 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44

10-32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 지원서비스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수출유망품목 중소제조업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21	멕시코	멕시코시티	10
	상하이	26	인도	뉴델리	16
	광저우	14	미국	뉴욕	23
	청두	10		LA	23
	시안	7		워싱턴	12
베트남	호치민	12		시카고	18
	하노이	11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일본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10
싱가포르	싱가포르	10	UAE	두바이	6
브라질	상파울루	10	카자흐스탄	알마티	7

수 수 료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차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입주 기한

최장 4년

지원 사항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행정지원
-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문 의 처

- 유망기업지원팀 : 02-3460-7430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716, 9719

10-33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KAPP)

‘Korea Autoparts Park(KAPP)’는 글로벌 완성차 거점지역에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등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지 즉시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 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참 가 비 (지역별 상이)

- 디트로이트 : 1인실 연 4,600,000원, 2인실 연 9,900,000원
- 나고야 : 1인실 연 6,600,000원, 2인실 연 10,900,000원
- 프랑크푸르트 : 1인실 연 7,300,000원, 2인실 연 13,200,000원, (보증금 1,000,000원)
- 상하이 : 1인실 연 4,000,000원, 2인실 연 7,000,000원

지원 사항

○ 직접 지원 서비스

-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사무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 간접 지원 서비스 (물류, 정착지원, 기타)

-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 세일즈렙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렙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진행 절차

참가신청서 개별 접수 (관심기업 -> 본사 또는 무역관) → 무역관의 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 확정 통보 →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입금 →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입주

문의 처

소재부품산업팀 : 02-3460-7629

10-34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A/S(일부지역)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영위 중소·중견기업

참 가 비

125만원 ~ 175만원(지역별 상이)

지원 사항

- 최적 물류수단 확보, 물류비용 절감방안 등 물류컨설팅 제공
- 물류위탁 계약 체결 및 애로사항 해결
- 현지 물류전문업체 소개,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물류 관련 업무 아웃소싱
- 전문 A/S업체 아웃소싱을 통한 위탁서비스
-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진행 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 신청 → 현지 무역관 시장성 검토 및 수출준비상태 검토 → 참가비 납부 → 협약서 체결 → 지사화사업 시행 → 무역관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평가 → A/S 제도

○ 공동물류센터 운영무역관 22개국 44개소(2015.8월)

지 역	무역관명
북 미(8)	뉴욕,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토론토, 밴쿠버, 달라스
일 본(4)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 국(12)	광저우, 다롄, 상하이, 시안, 우한, 베이징, 청두, 칭다오, 충칭, 창사, 정저우, 선양
유 럽(6)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런던, 프라하
중남미(4)	파나마,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상파울루
아시아(6)	멜버른, 싱가포르, 호치민, 방콕, 프놈펜, 뭄바이
C I S(2)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문 의 처

유망기업지원팀 : 02-3460-7423, 7443

10-35

해외투자진출 상담

국가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 국가별 상담

지 역·국 가	상담 전화	
중국 및 중화권	고객안내센터(1600-7119) - 3번(해외투자진출)	내선 1번
아세안 10개국		내선 2번
북미, 중남미, 유럽, CIS		내선 3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기타		내선 4번

○ 분야별 상담

분 야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 전화
법률	중국법률 자문 (매주 화, 목 13:00~17:00)*	법무법인 대륙아주 · 지평 (중국변호사)	02-3460-7222

* 중국변호사 자문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용 방법

1) 유선(전화) 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3번 해외투자진출 선택 → 해당 전문위원 연결

2) 온라인 상담

-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tradedoctor.kotra.or.kr)접속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3)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128) 연락 →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본사 1층(해외투자진출데스크) 방문 상담

* 내방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문의처

고객안내센터(1600-7119) - 3번(해외투자진출)

10-36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에 15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투자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 해외진출 우리기업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 현지 내수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 지원
 -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지원센터 현황

국가·지역		연락처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
	상하이	+86-21-5108-8771
	칭다오	+86-532-8388-7931
	광저우	+86-20-2208-1604
	다롄	+86-411-8253-0051/3
	시안	+86-29-8883-1060
베트남	호치민	+84-8-3822-3944
	하노이	+84-4-3946-051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1-574-1522
필리핀	마닐라	+63-2-893-1183/3244

국가·지역		연락처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
캄보디아	프놈펜	+855-23-999-099
폴란드	바르샤바	+48-22-520-6235
미얀마	양곤	+95-1-255-454
브라질	상파울루	+55-11-3175-301

문의처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53

10-37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털(OIS)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OIS’는 24개 해외투자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투자정보 포털입니다.

이용 방법

-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OIS) : www.ois.go.kr
- KOTRA 회원가입 후 ‘통합시장정보’ 뉴스레터 구독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주요 메뉴	내용
해외투자일반	해외직접투자 절차, 해외투자 체크리스트, 해외투자 지원기관
국별투자실무가이드	국가별 투자절차, 법인설립 가이드
해외투자동향	KOTRA 무역관 작성 해외투자속보, 유관기관 전문자료
상담실	해외투자 FAQ, 현장상담사례, 온라인 상담, 국내절차 FAQ
자료실	발간자료, 해외진출 한국기업 검색, 해외투자전문가정보
중국진출 노하우	법인설립, 현지경영, 청산, 국내복귀까지 중국진출 단계별 노하우 공유
뉴스레터	‘통합시장정보’ 뉴스레터

문 의 처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62

10-38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6개국에 11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재산권 보호 지원

구분	세부지원사업
권리확보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행정지원)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 지재산 애로 상담 지원 등
보호 지원	-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이동식 IP-DESK, 지재산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 · 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등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운영 조직

(6개국 11개소)

미국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L.A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방콕	호치민	도쿄

IP-DESK의 비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비율
상표 · 디자인 출원, 등록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1社당 8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 \$ /건 이내 * 태국, 일본 : 500 \$ /건 이내 * 미국, 독일 : 600 \$/건(상표), 1,000 \$/건(디자인) 이내
피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 구제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1社당 3건) * 10,000 \$ (피침해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 이내
세관 지재권 등록	- 신청기업별 연간 8건 (1社당 8건 이내) * 중국 : 300 \$ /건 이내 * 태국 : 500 \$ /건 이내 * 일본 : 700 \$ /건 이내 * 베트남 : 1,000 \$ /건 이내 * 미국 : 500 \$ /건 이내 * 독일 : 1,000 \$/건 이내

문의처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52

10-39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신설 또는 증설)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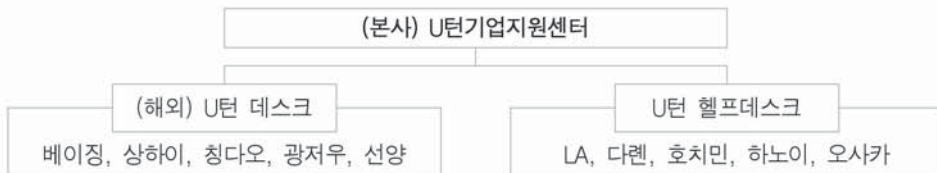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완전 철수 또는 축소(50%)하는 기업(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신·증설하는 국내 사업장 업종과 해외사업장 업종 동일
-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최대 지분보유자(실질적 지배자) 동일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상담	- 국내복귀 지원 정책 및 각종 제도관련 상담 지원
선정 심사	-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심사
구조조정 컨설팅	- 중국 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및 대행 지원(1개사당 5만 위안 이내 지원)
기타 종합 지원	- (애로 해소)담당 PM 지정,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지원 등 - (기관 협력)지원제도 유관기관과 협력, 제도개선 건의 등

운영 조직



문의 처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64, 7366

10-40

글로벌 M&A 지원

M&A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지원범위 : ① 지분인수 ② 사업부문 인수(Spin-off) ③ 유무형 자산인수
④ 해외 판로개척 목적의 조인트벤처 설립(단, JV는 실행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 ① (전략수립) 지원단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 ② (시장파악)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 ③ (딜소싱)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타깃매물 발굴
 - ④ (딜 실행) 타깃기업 Pre-valuation (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M&A 진행 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 ⑤ (사후지원)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M&A 지원절차

참가신청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M&A지원단 전문가와 개별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관리

문의처

글로벌 M&A 지원단 : 02-3497-1110

10-41

KOTRA 글로벌 CSR 사업

KOTRA가 우리기업의 해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 신흥국을 도우면서 우리기업·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개최주기
글로벌 CSR	자사 제품·서비스 기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필요국가에 기부하여 현지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참가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 * 태양광 설계 H사 등 5개사는 공동으로 동남아 낙후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부하고 현지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전수하여 현지에 기업 이미지를 제고
	해외 기술학교 운영	우리기업이 현지 정부나 발주처 등에게 기술경험을 전수하여 현지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참가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도 기여 * 건축설계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기술을 전수하여 현지의 전문가를 양성에 기여
	한류스타 CSR	우리기업의 CSR 사업에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융합형 CSR 활동 * 슈퍼주니어는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패션쇼에서 한인 의류기업 5개사와 공동으로 브라질 적십자사에 의류를 기부
	현지정부 공동 CSR 포상/포럼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현지정부와 공동으로 CSR 활동이 우수한 현지의 한국기업을 포상하고 전략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
상생가치창출 (CSV)	유희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우리나라의 기업·기관이 '제품생산', '공공서비스', '연구개발' 과정에서 보유한 국산 유희장비를 신흥국에 무상이전하고 관련 기술경험을 공유하여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장비의 해외진출에 기여 * IT 분야 C연구소는 유희장비를 미얀마 IT 연구소에 이전하고 기술을 전수하여 현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성과의 해외확산 기반을 마련
국내 CSR	다문화 무역인 육성사업	다문화 인재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를 선발하여 무역실무 교육 후 국내기업에 인턴 또는 취업 지원

대상 기업

글로벌 CSR사업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 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다문화 무역인 수요기업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추진시에만 사업비 지원

선정 기준

글로벌 공헌 정도,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가능성,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등

지원 내용

사업 기획, 실행, 사업비 일부, 현지 홍보 등

진행 절차

업체모집(상·하반기 각 1회) → 선정 → 사업계획 확정 → 사업추진

문의처

개발협력팀 : 02-3460-7527

10-42

교육·연수

‘KOTRA 아카데미’에서는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외국인투자유치교육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한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고객 여러분께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육 과정

과정명	주요내용	문의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 BRICs 등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 - 국내기업 투자대상국의 핵심 투자진출 실무교육 및 해외 연수과정	02-3497-1187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 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	02-3497-1187
외국인투자유치 교육과정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 투자유치업무 담당자들의 외국인 투자유치성과를 제고 하기 위한 과정	02-3497-1186
FTA 활용 업종별 교육과정	- 중소기업의 FTA활용 인력양성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 화학, 농수산물, 디스플레이, 화장품, 의료기기)	02-3497-1182
주재원 사관학교 과정	- 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현지 경제·문화 이해, 노무·세무·통관 절차 등 실무 교육에 중점)	02-3497-1184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	- 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 역량강화 과정	02-3497-1199

참 가 비

과정별 상이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KOTRA 아카데미 → 연수신청 선택

문 의 처

KOTRA 아카데미 : 02-3497-1069, 1186



제 11 장

한국무역협회

11-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391
11-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392
11-3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393
11-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94
11-5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396
11-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398
11-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400
11-8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402
11-9 K+(K plus) 인증 제도	404
11-10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406
11-11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408
11-12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412
11-13 무역기금 융자	414
11-14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416

11-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해소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를 통해 기존 접수된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업체 측에 이메일, 문자 등 통보
-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검색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애로건의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1-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 전문분야별 무역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특허, 해외인증, 국제계약, 세무 및 회계 등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원 분야

무역실무, 통관절차/HS품목분류, 국제계약/클레임, 국제특허, 해외인증, 세무/회계, 환율/외환, 중국의 수출입절차(인증, 통관,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상담
- 전화상담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무역실무	월~금	09:00~18:00	전문상담역
통관절차/HS품목분류	월~금		관세사
국제계약/클레임	화/목		변호사
국제특허	월	13:00~18:00	변리사
해외인증	월~금	09:00~18:00	인증전문가
세무 및 회계	수	09:00~18:00	공인회계사
환율/외환	목	09:00~18:00	외환전문가
중국 수출입 제도	수	09:00~18:00	중국무역 전문가
중국인증	금	09:00~18:00	중국인증 전문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1-3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 업체방문을 통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

품목 및 지역별 무역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개요

-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 분야 20년, 해외영업분야 10년 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전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자문 제공
- 규모 및 활동지역
 - ▷ 총 31명, 무역협회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 분야

-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거래선 발굴 및 유지관리 등 해외시장진출 및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멘토링
- 해외시장 진출관련 무역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통합 안내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무역실무 컨설팅 등
 -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현장 자문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1-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최대 50%, 장치비 최대 50% 지원

홍콩보석전, 라스베가스 보안기기전 등 10개 해외전시회에 대한 한국관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시장 수출증진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부스이미지 고급화를 통한 한국관 브랜드이미지 제고

지원 규모

10개 해외전시회, 270개 업체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비고
1	홍콩춘계보석전	3.5~3.9	25	중기중	
2	싱가포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시회	3.16~3.18	10	중기중	
3	라스베가스보안기기전	4.6~4.8	30	코트라	
4	이란 의료기기 전시회	5.16~5.19	10	코트라	
5	북경한류명품대전	7.7~7.9	50	중기중	
6	말레이시아 이미웅전	7.6~7.9	30	중기중	
7	남아공 건축데코전	8.6~8.10	10	중기중	
8	홍콩 Food Expo	8.11~8.15	20	wndrlwnd	
9	상해 식품박람회	11.8~11.10	15	중기중	
10	이란 자동차부품전	11.16~11.19	40	중기중	

* 총 10개 전시회 240여개사 지원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의 50% 이내로 전시회당 업체평균지원금액 3백만원 예정 (홍보 및 관리비 제외)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직접경비의 최대 50% 지급(전시회별 지원을 다름)

- ▷ 부스 임차료(최대 50%) 및 장치비(최대 50%) 지원
-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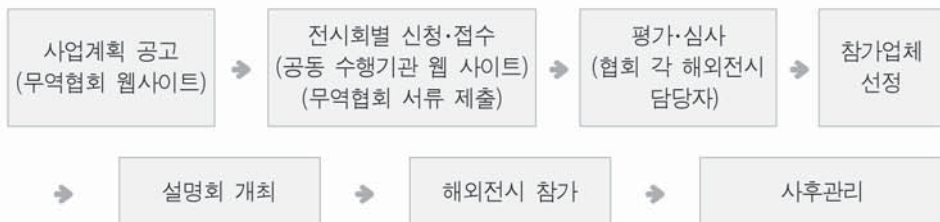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제출(우편)

- * 공동 수행기관 웹 사이트
- ▷ 중소기업청 공동 수행 전시회 : www.sme-expo.go.kr,
- ▷ 지식경제부 공동 수행 전시회 : www.gep.or.kr

제출 서류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특허관련증명서, 해외수출규격인증서, 포상 실적 증명서, 해외 및 국내전시회 참가 증명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해외마케팅지원본부 마케팅협력실

- 한국 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5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 글로벌 바이어 셀러 매칭

전세계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1:1 종합무역상담회 개최

지원 규모

13개 무역상담회, 650개 바이어 초청 지원

* 개최 상담회 및 초청 바이어수 변동 가능

	상담회명	시기	초청 바이어	비고
1	SPOEX(서울스프츠국제레저산업전)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2.25~2.28	20개사	
2	홈쇼핑 업체 초청 상담회	2월	10개사	
3	2016년 동경 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4.19~4.20	100개사	
4	주얼리페어 연계 바이어초청 상담회	4.21~4.24	10개사	
5	전문중기단체 공동 수출상담회	4월	20개사	
6	World IT Show 2016 수출상담회	5월	10개사	
7	인도/아세안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	5월	25개사	
8	2016 베트남 호치민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6.7~6.10	20개사	
9	중국 농식품 바이어 초청 상담회	9월	50개사	
10	아시아뷰티 빅바이어 초청상담회	10월	50개사	
11	러시아 및 중앙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1월	20개사	
12	Korea Grand Sourcing Fair 2016 수출상담회	12월	100개사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권역 진출희망 국내 기업

지원 내용

- 글로벌 빅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기업들과의 상담 주선
 -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부대행사 동시 진행
 - * KITA 글로벌 빅바이어 클럽 활용, 상시 거래지원 등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제출 서류

상담회 신청서, 자사제품 영문 카탈로그/제품정보 등

- *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해당 권역별 담당부서 : 대양주/아프리카 : 국제협력실
아세안/중동 : 아중동실
미주/남미 : 미주실
중화권 : 중국실
유럽/러시아 : 유라시아실

11-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전략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지원 규모

	상담희명	시기	파견 규모	비고
1	이란 경제협력 사절단	1월	15개사	잠정
2	(FTA활용) 호주/뉴질랜드 사절단	2월	20개사	
3	중앙아 무역투자사절단	3월	40개사	
4	아프리카 유통시장 무역투자사절단	4월	20개사	
5	미얀마 무역투자사절단	5월	20개사	잠정
6	미국 선진 유통망 진출 사절단	9월	10개사	
7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한국사절단	9월	50개사	
8	중남미 소비재 무역사절단	11월	20개사	

지원 내용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제비(숙박비 등)를 제외한 통역비, 파견국 내 차량임차비, 각종 행사비 등 공통경비 전액 지원

지원 대상 대상국가 진출 관심기업

주요 행사

- 1:1 비즈니스 상담회

- 현지 투자환경 세미나
- 산업시찰 및 주요기업/기관 방문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병행 실시

제출 서류 신청서, 자사제품 카탈로그/제품정보(수출업체)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1-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바이어-셀러 매칭 및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com을 기반으로, 거래제이서 작성/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어DB 타겟 마케팅을 비롯하여, 관심바이어 발굴, 빅바이어와의 상시 거래알선, 미니사이트 제작 등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거래알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tradeKorea.com 국내 기업 회원이면 누구나

* tradeKorea 기업회원 : 기업의 영문정보(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취급품목 등)를 입력한 회원

지원 내용

- 무역협회 바이어DB 활용 Self-타겟마케팅
- 무역협회 해외지부/마케팅오피스 활용 관심바이어 발굴 서비스
- 글로벌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프로그램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제공 서비스 등
- 세부사업 내역

서비스명	세부 내용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국내기업이 직접 무역협회 바이어DB에서 바이어 검색 • 관심바이어 대상 C/L(거래제이서) 작성 및 발송(C/L 자동제작 지원) ※ 매년 1개사 당 200 Credit(1Credit당 1건의 바이어) 지급 및 tradeKorea 활동에 따라 지속 부여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무역협회 해외지부(미국, 일본 등) 및 마케팅오피스(중국) 소재 지역 대상, 신청기업 대신 해외에서 직접 제품홍보를 통해 발굴된 관심 바이어 정보 제공 ※ 1회 신청 시, 1개 지역 서비스를 원칙(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
글로벌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상시 거래알선 지원

서비스명	세부 내용
미니사이트 제작	• 회사/제품을 홍보하고 인콰이어리 내도가 가능한 영문 홈페이지인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열람	• tradeKorea로 보낸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퍼 게재 (매일 업데이트) 및 관심 바이어와의 거래알선 지원

신청·접수 상시 온라인 접수

- tradeKorea 홈페이지(kr.trade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e-Biz전략실 : 02-6000-5219
- tradeKorea 서비스센터 : 02-6000-4416
- tradeKorea 홈페이지 : kr.tradekorea.com

11-8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 한국 강소제품 해외판매 전문 B2C Mall, Kmall2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를 기반으로 B2C해외직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이며, 영/중/일 Kmall24, 아마존, 티몰, 이베이 등을 통한 해외 판매지원과 B2B 매칭서비스 지원을 통해 B2C거래를 통한 B2B대량거래 성사를 지원합니다. Kmall24를 통해 최근 전세계 트렌드인 Cross-Border e-commerce시장을 선점해보세요.

지원 대상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이어야 하며, 해외판매와 배송이 가능한 B2C상품 판매 적합업체일 것

지원이 안되는 기업

✓ B2C해외판매 부적합 상품(예. 중장비, 의약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

지원 내용

○ 통합 운영지원

- ▷ 국내/해외 물류창고 활용 지원, CS응대 지원
- ▷ 해외오픈마켓 입점지원(아마존, 티몰, 아마존 재팬, 이베이)
- * 해외오픈마켓은 확대/변동 가능

○ B2B거래 지원

- ▷ Wholesale Inquiry 수신시 B2B 매칭서비스 밀착지원(B2B 온라인거래 매칭요원의 계약체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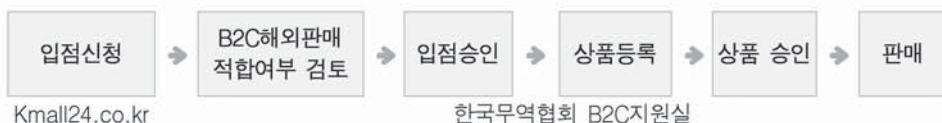
신청·접수

-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 기관창구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채권 추심서비스(P@yGOS) 신청 후 확인증 수령
- Kmall24 입점신청페이지(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제출 서류

- 기업은행 약정 확인서, 판매약정서 등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세부내용은 [Kmall24.co.kr] - [입점안내] - [서류준비]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콜센터 : 1566-5114
- Kmall24 입점 신청 페이지(www.kmall24.co.kr) 「입점안내」 참조

궁금해요! 중기맨



Q 아마존, 티몰 등 해외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아마존, 티몰에 입점 대상상품은 Kmall24에 기 입점한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오픈마켓 입점을 위해서는 Kmall24에 먼저 상품등록이 완료된 후 담당 MD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Q B2C 해외판매는 처음입니다.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무역협회는 B2C해외판매 인식전환 및 수준별 전국순회 교육을 통해 초보 판매자분들도 무리없이 입점·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Kmall24.co.kr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11-9

K+(K plus) 인증 제도

| 한국 대표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 인증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프리미엄 소비재 제품(Korean Made)을 발굴하여, 무역협회가 K+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 뿐만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에 기여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사(예정)

지원 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 소비재 제품 제조업 및 유통업
 - ▷ 독자 브랜드와 디자인을 보유한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 제조업체 혹은 유통업체
 - * 유통사의 경우 공급사와의 독점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한함
- 우대사항
 - ▷ 신청 상품의 가격경쟁력, 시장성, 기능성 등 제품 경쟁력을 갖춘 제품
 - ▷ 한국산 원산지(부품, 소재 등) 비중이 높은 제품
 -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이거나 tradeKorea.com 또는 Kmall24.com 상품 등록업체
 - ▷ 해외마케팅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업체
 - ▷ 해외 판매용 제품으로 생산되어, 제품 설명서/영문 브로셔 등을 보유한 업체
 - ▷ 자체 브랜드, 특허, 인증 등을 보유한 업체

지원 내용

- K+ 인증마크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활용 지원
 - ▷ (온라인) B2B이마켓플레이스, 자체 쇼핑몰 등에 게재된 K+ 인증제품 페이지 등
 - ▷ (오프라인) K+ 인증제품에 부착 또는 포장하는 재료, 홍보 브로셔 등

- 「한국산 정품인증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 유사품 제조/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무역협회가 한국산 정품을 인증하고 정품인증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사업 ('16년 신규)
 - ▷ 선정기업당 한국산 정품인증 스티커 1만장 무료 지원 (추가 필요수당은 자체 부담)
- tradeKorea.com 활용 온라인 B2B 마케팅
 - ▷ K+ 인증제품 전용 온라인 전시관 운영을 통한 바이어 인콰이어리 응대 지원
- Kmall24.com 활용 온라인 B2C 마케팅
 - ▷ K+ 인증제품 전용 카테고리 운영 및 K+ 인증제품 프로모션 런칭, 홍보
 - ▷ 해외 오픈마켓(아마존, 티몰글로벌, 이베이) 입점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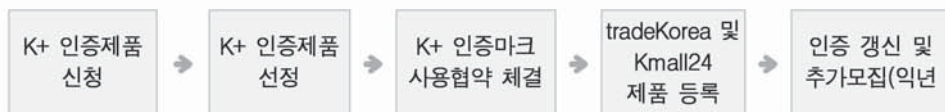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일시 : 2016년 상반기
- 방법 : KITA.net 공지사항 참조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사진 및 카탈로그, 수출실적 증빙자료, 한국산 원산지 비증 소요요소 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B2C지원팀 : 02-6000-5155
- KITA.net 혹은 tradeKorea.com의 영문 안내페이지 참조

11-10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 해외지점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외화획득 및 수출실적 확인 가능 업체
 -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 해외사무소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지원 내용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 추천서 다운로드 → 추천서 작성 후 회원지원실 및 각 국내지부 내방

제출 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란에서 다운로드
-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수출계획 및 전망 등 수지개선 효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
 - 판매사업계획 등

처리 절차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 홈페이지 참조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Q 신청에서 인증추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인증추천 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11-11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 신속한 출입국 수속 지원

APEC 회원국 기업인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59~90일간 체류를 보장하는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

-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지원 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ABTC 19개 가입국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접수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한 달전, 인감날인,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 해당 거래 은행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 개인서류(각 1부)

-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하얀 배경의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1매 부착(저화질, 웹소 또는 프린트 출력 접수불가), 굵은 펜을 이용한 자필서명(반드시 여권서명과 동일)
- ▶ 여권사본 : 잔여 유효기간 최하 3년 이상(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한연장 확인란 포함)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필서명필)
- ▶ 서약서(규정양식) :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필
- ▶ 주민등록 후단번호가 삭제된 여권 사본
- ▶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전국 경찰서 방문,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표기
 -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합니다.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 승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카드

11-12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무역업체에 사증(VISA)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 외국인 사증발급 추천 신청업체(이하 “신청업체” 라 함)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이어야 함
- ▷ 신청업체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및 각 국내지역본부

- ▷ 해당업체 방문 접수(우편,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로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국내영업 현황, 해외영업계획 등 서술)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 외국인 이력서 1부
-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Q 신청에서 발급추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추천서를 접수한 후 보통 1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발급추천 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11-13

무역기금 융자

|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시 감점 처리)
 -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 불가

지원 내용

시중은행(9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기금사무국) 및 12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유의 사항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융자 조건

- 금리 : 연 3.5%(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1, 4, 7, 10월의 25일)

○ 용자한도 : 최고 2억원(전년도 수출실적 $\times$ 1/3)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 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 <신청기간> 2016년 3월부터 매월 초 신청(총 7~8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서류

○ 기본서류

- ▷ 무역기금 용자신청서
▷ 무역기금 수출마케팅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자율양식)(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이 발급한 2014년도 및 2013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출
* 단, 수출실적이 용자신청서의 14번 직수출(A)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수출실적법인 업체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선택서류

- ▷ 용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 제출처 : 해당 국내지역본부(서울은 무역기금사무국)
▷ 제출방법 : 우송 또는 직접제출(우송의 경우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에 문의
○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11-14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 내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접수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확인 대상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 동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등

처리 절차

외화 입출금 증빙 발급
(거래 외국환은행)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홈페이지에서
실적증명서 인쇄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참조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궁금해요! 중기맨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 12 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2-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419
12-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421
12-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423
12-4. 거래 공정화	428

12-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1차 협력사 또는 1차-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가절감형 과제(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제품 제작 등)를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6개사(전체 예산 18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5년 지원현황 : 43개사 지원, 업체당 약 4,6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력사)간 또는 중견·중소기업(1차협력사)과 중소기업(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제품기획에서 시작품(pilot) 제작까지 원가절감 효과가 큰 분야(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작품 제작 등)의 개발비
- 지원한도 : 과제 수행 최대 5천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 지출항목 : 재료비, 테스트장비, 시제품제작비용 등
 - ▷ 기업부담금의 50% 이상은 대기업·1차 협력사가 부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부담금 컨소시엄별 차등적용 : 대기업 60% 이상, 1차 협력사 50% 이상
 - ▷ 대기업(참여기업)-1차 협력사(주관기업) : 대기업 60%, 1차 협력사(중소기업) 40%
 - ▷ 1차(참여기업)-2·3차 협력사(주관기업) : 1차(중견·중소기업) 50%, 2·3차 협력사(중소기업) 50%

신청·접수

'16년 2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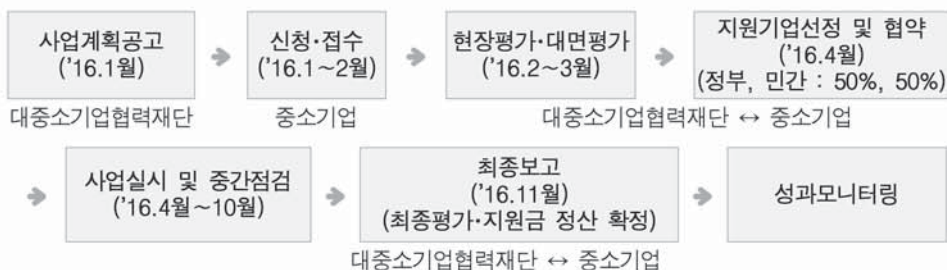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신청양식 이메일·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공고,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추진의지, 재무구조 건전성, 기대효과 등 현장 평가(20%) 및 대면평가(80%)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주관기업 경영현황표,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사업공고 시 첨부**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399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91/875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www.win-win.or.kr

12-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대중소기업간 구매협력 네트워크 구축

120여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800개사(예산 2억원)

* '15년 지원현황 : 723개 중소기업, 1,630건 구매상담회 지원(총 4회 구매상담회 개최)

지원 대상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납품(입점), 투자, 기술개발 등의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상담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담여부 통보

대기업 및 공공기관

✓ 전기전자·정보통신, 유통·서비스, 건설, 화학, 중공업,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120여개사가 연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1:1 현장상담
 - ▷ 사전에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상담매칭이 된 경우 통보된 시간에 방문하여 30분 내외 상담
 - ▷ 상담회 당일 신청한 경우, 현장에서 상담 매칭
- 우수제품(상품) 전시회 운영
 - ▷ 2~30여개 중소기업 우수제품(상품)을 선정하여 무료로 전시대 마련
- 구매방침설명회, 세미나 등 부대행사 마련
 - ▷ 참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매전략 및 방침, 경영노하우 전수 세미나 등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유익한 행사 개최

○ 개최일정

▷ 전국적으로 연 4회 개최(4, 6, 9, 11월 예정)

* 경상권, 수도권, 전북권, 충청권 등으로 나누어 개최(세부일정은 매치넷에 공고)

신청·접수구매상담회 홈페이지(www.matchnet.or.kr)에 회원가입 후
상담 신청**제출 서류**

- 구매상담회 홈페이지에 신청기업의 기본현황, 보유설비, 제품정보 등을 입력
- 현장 상담시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브로셔, 샘플 등을 지참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399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마케팅협력부 : 1670-0808, 02-368-8472
- 매치넷 홈페이지 www.matchnet.or.kr

궁금해요! 중기매

Q 구매상담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모두 만날 수 있나요?

A 실질적인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상담여부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12-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과의 동등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모임 결성을 촉진하고, 교류활동·협력과제·동반성장 아카데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74개 협의회(전체 예산 6.08억원)

- ▷ 동반성장 아카데미 : 10회 개최, 참가비 무료
- ▷ 교류활동 지원 : 60개 협의회, 3억원
- ▷ 협력과제 : 4개, 1.75억원
 - * 협력과제는 2·3차 수탁기업협의회에 한해 지원
 - * 지원협의회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5년 지원현황 : 88개 협의회(아카데미 10개, 교류활동 73개, 협력과제 5개)

지원 대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에 근거한 수탁기업 협의회

- ▷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는 최소 5개 이상으로 구성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 필요
- ▷ 협력과제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2차 이하인 협력사로 회원사를 구성한 수탁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하며, 주관기업은 필히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수탁기업협의회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및 협력과제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한도
교류활동	· 회원사 대표,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수탁기업협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영노하우 전수 교육, 또는 회원사간 실시되는 기술·시장·경영정보 교류활동, 벤치마킹 등 운영비 지원 (임차료, 강의료, 회의비 등)	협의회당 5백만원 (총소요비용의 70%)
협력과제수행	· 회원사 간 교류활동을 통해 발굴한 공정개선, BM개발, 국산화, 시제품 개발 과제(재료비, 연구활동비, 직접비 등)	과제당 35백만원 (총소요비용의 70%)

○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분야	지원 내용	수강료
동반성장 아카데미	· (대상)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실무진 · (내용) 동반성장 이론, 수·하도급법 등 법률 실무, 동반성장 지원 정책 활용방법 등 · (시간) 1일과정 6시간, 2일과정 12시간	무료
	· (대상)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 · (내용) 협력적경영, 공정거래 법률교육, 동반성장 지원 정책 활용방법, 분과토론 등 · (시간) 1일 과정 6시간, 2일 과정 12시간	무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변 경
수탁기업협의회 유형변경	① 수탁기업협의회 유형 - 대기업 수탁기업협의회 - 2·3차 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협의회 유형 - 위탁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 (대기업 수탁기업협의회, 2·3차 수탁기업협의회) - 업종별 수탁기업협의회 - 지역별 수탁기업협의회
사업용어변경	② 동반성장 매니저 아카데미	② 동반성장 아카데미

신청·접수

신청 접수 기간은 지원내용별로 상이

- 모집공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를 통해 신청
 - ▷ 동반성장 아카데미 : 연중 수시 수요 발굴
 - ▷ 교류활동 : '16년 2월 3주~3월 1주
 - ▷ 협력과제 : '16년 4월 1주~4월 4주
- 접수처 : partners@win-win.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상호출자제한그룹 계열사 포함여부
- (교류활동) 회원사 참여 비율, 2차 협력사 포함 구성여부, 교류활동 주요 내용 등
- (협력과제) 수행 목표, 추진적합성, 시장성, 과제실용성, 주관·참여기업 역할 등
 - * 현장평가 시 기술연구소, 재무제표, 설비 보유현황 등 증빙서류 및 실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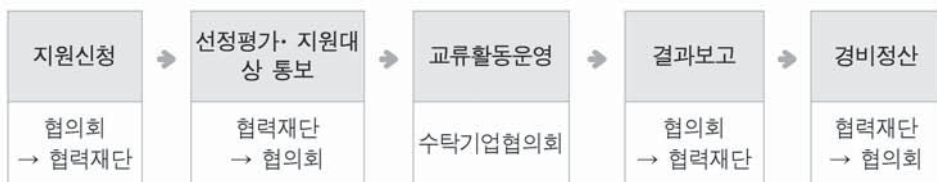
제출 서류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신고서,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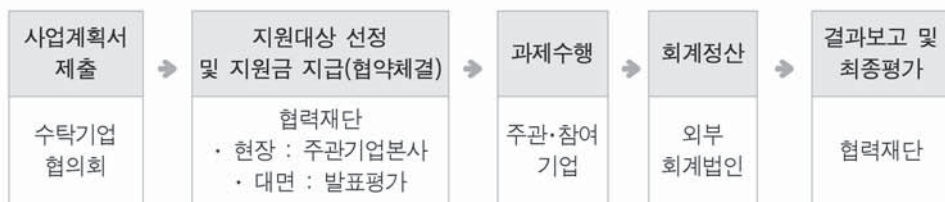
- (교류활동) 회원사 명단, 사업자등록번호, 교류활동 운영 계획서
- (협력과제) 사업계획서, 중복지원검토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협력증진 사업 내,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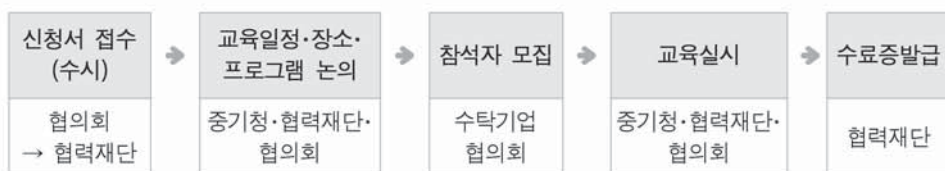
- 교류활동



○ 협력과제



○ 동반성장 아카데미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399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79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2016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수탁기업협의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협의회 회원사는 5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수탁기업협의회 등록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스캔본을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Q** 수탁기업협회를 결성하고, 활동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A** 협의회 회칙, 회원사 선정기준, 교류활동 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탁기업협회가 동반성장의 교류채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Q** 협력과제 수행에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무슨 차이 인가요?
- A** 수탁기업협의회 협력과제는 주관기업 1개, 참여기업 1개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관리, 기술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주관기업”이라고 합니다.

→ 용어설명

수탁기업협의회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기업별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는 위탁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2-4

거래 공정화

|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및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수·위탁거래 분쟁조정(신청기업 대상), 법률상담 300개사, 공정거래 교육 20개사

* '15년 지원현황 :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분쟁조정 22건 접수, 법률상담 318건 지원, 법률자문 50개사 지원, (공정화 교육) 28회

지원 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화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분쟁조정)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조정 지원
- (법률상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법률적 구제방안 안내
 - *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여부 검토,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등
 - * 전문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 지원사항: 강사로, 임차료,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역별 지방중기청, 산업단지 등을 찾아가 현장 법률상담회 개최

신청·접수

연중상시 접수

- 불공정신고센터(국번없이 1670-0808)로 전화 상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관련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
 - ▷ 이메일 : jsh@win-win.or.kr, 팩스 : 02-368-8479
 - ▷ 우 편 : (152-75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마케팅협력부

제출 서류

- (분쟁조정, 법률상담) 법률자문 신청서 또는 수·위탁 사전 분쟁조정 신청서·사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공정거래교육) 교육 신청서 1부.

처리 절차

- (분쟁조정, 법률상담) 전화 등 상담 후 신청을 통해 지원



- (공정거래 교육) 재단과 일정, 내용협의 후 교육(선착순 지원)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895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마케팅협력부 : 1670-0808(jsh@win-win.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 13장

대한상공회의소

13-1. 산업혁신운동	431
13-2. 코참경영상담센터	434
13-3. 제조물책임보험(PL) 중소기업 지원	436

13-1

산업혁신운동

| 중소기업 현장의 불량률 감소,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등 종합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규모 1,500개社 내외(약 33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혁신운동 대기업 협력사(연계기업) 또는 미연계 기업(특정 대기업의 협력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① 연계기업 : 출연대기업으로부터 사전 참가신청과 진행을 추천받은 중소기업(대기업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원칙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 대기업 업종 특성상 2차 협력사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1차 협력사 및 고객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필수)
- ② 미연계 기업 : 특정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세부사업 내역(1개 분야만 선택 가능)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혁신활동 분야	•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공정, 경영, 생산기술 개발분야 • 참여기업 혁신활동 컨설팅과 생산설비구축 지원 • 연계기업의 경우 출연기업과 협의해 지원금액 조정 가능	2천만원 이내 (미연계)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스마트공장 분야	• 참여기업의 ICT기술활용정도 및 역량평가를 위한 현장진단 컨설팅과 생산성향상설비 구축 지원 •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연계 지원금액 : 2천만원 초과지원분에 대해 5(지원금액):5(기업부담) 매칭 • 미연계 지원금액 : 구축비용의 5(지원금액):5(기업부담) 매칭 의무 이며,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4천만원이내

신청·접수 '16. 7월(홈페이지에 공지)

-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홈페이지(www.iim3.org)에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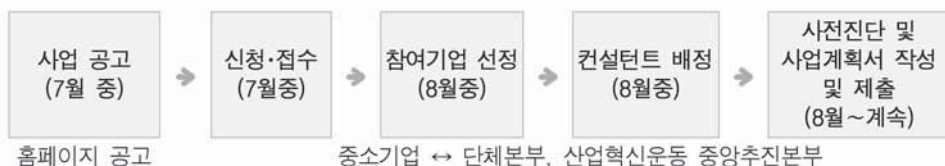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경영·제조 혁신, 기술 등 해당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CEO의 사업추진의지, 개선분야의 구체성, 생산성 효과성 등 심사 및 평가

신청 서류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명원 등

* 신청양식은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홈페이지 www.iim3.org 에 접속해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혁신활동 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중앙추진본부 산업혁신운영팀
02-6050-3279~80, csk150617@korcham.net

- 스마트공장 분야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보급확산팀
02-6050-2777, kdw@smart-factory.kr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술경영자문(컨설팅)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및 개보수는 필수지원 사항인가?

A 컨설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컨설팅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및 개수 보수를 할 수 있음(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및 개수보수는 필수 지원 사항이 아님)

→ 용어설명

산업혁신운동 : 대중소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생산성혁신을 범 경제계 차원의 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혁신운동은 공장새마을운동의 자조정신을 계승하고,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산업혁신 활동을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2

코참경영상담센터

|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즉시상담 제공

법률/법무, 무역/관세, 인사/노무, 특허, 세무/회계, 창업/경영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연간 약 13,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 '15년 코참경영상담 현황 13,044 건 (12월 현재)

지원 대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세부사업 내역

경영상담 서비스	내 용	상담분야
전화 상담 (1600-1572)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연결 및 상담이 가능함	● 법률/법무 ● 무역/관세 ● 인사/노무 ● 특허 ● 세무/회계 ● 창업/경영
온라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에 상담 신청이 가능함	
방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 내 구상공회에서 상담의뢰자가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상담이 가능함	

신청·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1600-1572를 통해 즉시 상담 가능함
(업무시간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코참경영상담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www.korcham.net>
- ☎ 02-6050-3458, Fax 02-6050-3459

처리 절차

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상담 실행
▶ 1600-1572전화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 방문 상담신청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완료 ▶ 전문위원 실시간 확인 후 답변 등록 ▶ 본소/구상공회 내 상담센터에서 상담

문의처

회원사업본부 경영정보서비스팀 : 02-6050-3458

궁금해요! 중기맨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함.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기업부담액은 전혀 없음.
각 분야 전문위원들은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 해주는 데 가치를 두고 있음.

13-3

제조물책임보험(PL) 중소기업 지원

| 보험료 할인혜택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에서 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 보다 보험료가 20%이상 저렴한 중소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PL보험

- 단체보험 할인적용으로 20~30% 보험료 인하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단체보험의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손해보험사의 협상
- 서울시 중소기업 20% 추가할인

가입 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 가입 가능한 서비스 용역
 - ▷ 승강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 전기유지 보수작업 등

가입 지역 국내 및 해외(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가입 절차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75(代) / Fax, 02-6050-3840)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6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4363

팩 스 : (042)472-7929

중소기업청 

www.smba.go.kr

